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337-01

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수행기관 : (주)에프아이에스랩

2020. 12.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수행기관 : (주)에프아이에스랩

연구책임자 김형배 대표
연구원 박수영 교수
양영식 교수
박금희 박사
김기홍 이사
김애순 박사
연구보조원 조지형 과장
김성배 부장

본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수행기관에서 제시한 개선의견과 대안 등입니다.

목 차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1
1.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통계 분석	3
2. 신산업별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종합 요약	5
I. 서론	39
1. 연구 개요	41
1-1. 연구 추진배경	41
1-2. 연구 목적	44
1-3. 연구 방향	45
1-4. 연구 기대효과	46
2. 연구 체계	47
2-1. Approach Framework	47
2-2. 연구 내용(범위)	49
II. 농식품 신산업별 규제 실태 분석 및 발굴	51
1.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53
1-1. 산업 환경 분석	53
1-2. 법제 환경 분석	60
1-3.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62
2. 건강기능식품	82
2-1. 산업 환경 분석	82

2-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84
3. 고령친화식품	95
3-1. 산업 환경 분석	95
3-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100
4.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105
4-1. 산업 환경 분석	105
4-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112
5. 대체식품	117
5-1. 산업 환경 분석	117
5-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식물성 대체육)	123
5-3.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배양육)	128
6. 반려동물사료(펫푸드)	134
6-1. 산업 환경 분석	134
6-2. 법제 환경 분석	146
6-3. 해외 유사 사례 조사	157
6-4.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168
6-5.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방향	217
7.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219
7-1. 산업 환경 분석	219
7-2. 법제 환경 분석	221
7-3.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222
8. 생물비료	229
8-1. 산업 환경 분석	229
8-2. 법제 환경 분석	230
8-3.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231

9.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238
9-1. 산업 환경 분석	238
9-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244
III. 결론	251
1. 규제 개혁과 사회적 갈등관리	253
1-1. 신기술·신산업 도입 관련 사회적 갈등관리 모델 고찰 ...	253
1-2. 신산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259
2. 제언	263
IV. 부록	267
1. 참고문헌	269
2.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272

표 목 차

[표 1-1] 농식품 신산업별 규제개선과제 현황	3
[표 1-2] 소관부처별 규제개선과제 현황	4
[표 1-3] 법령단위별 규제개선과제 현황	4
[표 1-4]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6
[표 1-5] 건강기능식품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11
[표 1-6] 고령친화식품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13
[표 1-7]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15
[표 1-8] 대체식품(식물성 대체육)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16
[표 1-9] 대체식품(배양육)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18
[표 1-10]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20
[표 1-11]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32
[표 1-12] 생물비료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33
[표 1-13]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35
[표 2-1]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농업의 주요 이슈	54
[표 2-2] (정부)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주요 내용	55
[표 2-3] 농식품모태펀드 산업별 투자 실적 비교 (단위 : 건)	58
[표 2-4] 농식품모태펀드 산업별 투자 실적 비교 (단위 : %)	58
[표 2-5] 벤처투자촉진법 주요내용 요약	60
[표 2-6] 벤처투자촉진법과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비교 : 목적 및 법령체계	61
[표 2-7] 일반식품, 건강식품 및 의약품과의 비교	83
[표 2-8]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의 종류	90
[표 2-9] 고령친화식품 물성기준 각 단계별(1~3단계) 특성 정의 및 종류	96
[표 2-10] 고령친화식품 주요 제품 사례	97
[표 2-11] 일본 스마일케어식(Smile Care Foods) 분류 체계	99

[표 2-12] 특수의료용도식품 주요 개정 내용	106
[표 2-13]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108
[표 2-14]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분류 체계	108
[표 2-15]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분류 체계	109
[표 2-16] 식단형 영양조제식품 분류 체계	109
[표 2-17]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주요 제품 사례	110
[표 2-18]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국내 판매액 추이	111
[표 2-19] 주요 식물성 단백질 및 원료	118
[표 2-20]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 추정	119
[표 2-21] 글로벌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 추정	120
[표 2-22] 식물성 대체육 관련 전통적인 동물성 식품 용어 사용 규제 사례	120
[표 2-23] 식물성 대체육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개선(안) 예시	127
[표 2-24] 배양육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개선(안) 예시	133
[표 2-25] 개별법상 반려동물 범위	135
[표 2-26] 국내 반려동물 양육 현황 추정	136
[표 2-27]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주식 범위	137
[표 2-28]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간식 범위	137
[표 2-29] 국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매시장 동향 및 전망	139
[표 2-30]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141
[표 2-31]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구매 장소	142
[표 2-32] 반려동물 관련 용품 구매 장소	142
[표 2-33]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추진 과제	145
[표 2-34] 사료관리법의 주요 구성과 내용	147
[표 2-35]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고시)	151
[표 2-36] 산업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펫푸드) 법령·제도 비교	151
[표 2-37] 동물보호법의 주요 구성과 내용	155
[표 2-38]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156
[표 2-39] 글로벌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157
[표 2-40] 글로벌 종류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157

[표 2-41] 글로벌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매시장 동향 및 전망	158
[표 2-42] 글로벌 반려동물용 건식 및 습식 사료 세부 시장 동향 및 전망	159
[표 2-43] EU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160
[표 2-44] 일본 애완동물사료공정거래협의회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161
[표 2-45] 일본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시장 현황	162
[표 2-46] 일본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법률 체계	165
[표 2-47] 일본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주요 내용	165
[표 2-48] 일본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성령」 주요 내용	166
[표 2-49] 반려동물사료(펫푸드)와 산업동물사료 차이점	168
[표 2-50] 사료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1항)	169
[표 2-51] 단미사료의 범위 [별표 1] (제4조 관련)	169
[표 2-52] 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 (제5조 관련)	170
[표 2-53] 배합사료의 범위 [별표 3] (제6조제2항 관련)	170
[표 2-54]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중 특수목적사료 개선(안) 예시	172
[표 2-55] 사료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173
[표 2-56] 정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 전담 조직 확충 개선(안) 예시	177
[표 2-57] 국내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 제공 내역 종합 요약	181
[표 2-58]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개선(안) 예시	184
[표 2-59] 특수목적사료 관련 국가별 주요 쟁점 사항 비교	185
[표 2-60] 사료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별표 4] (제14조 관련)	186
[표 2-61]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별표 4] (제14조 관련) - 배합사료	186
[표 2-62] 사료 관련 장부 비치대상 및 기재사항	202
[표 2-63] (식품공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용곤충 9종	214
[표 2-64] 단미사료의 범위 [별표 1] (제4조 관련)	215
[표 2-6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별표 1] (제1호 나목1)	215
[표 2-66] 단미사료의 범위 [별표 1] (제4조 관련) 중 동물성 내 곤충류 개선(안) 예시	216
[표 2-67]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별표 1] (제1호 나목1) 내 동물성 개선(안) 예시	216
[표 2-68]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약 분류 체계	220
[표 2-69] 농약관리법 목적 및 법령체계	221

[표 2-70] 비료관리법 목적 및 법령체계	230
[표 2-71]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안전성평가 지원 주요 내용	231
[표 2-7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236
[표 2-7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개선(안) 예시	237
[표 2-74]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산업화 성공 사례 : (주)바이오엠피	239
[표 3-1] 규제샌드박스 제도 주요 내용	255
[표 3-2] 갈등관리 개념 선행연구	256
[표 3-3]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 선행연구	257
[표 3-4] 정부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적용과제 추진 현황	260
[표 3-5] 정부 한걸음 모델 논의 프로세스(예시)	261
[표 3-6] 스마트팜 분야별 적용 사례	264
[표 3-7]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272

그림 목차

[그림 1-1]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41
[그림 1-2]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42
[그림 1-3]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43
[그림 1-4] 연구 목적	44
[그림 1-5] 농식품 신산업 규제개선 연구 계획	45
[그림 1-6] 연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6
[그림 1-7] 연구 수행 방법론	47
[그림 1-8] 농식품 신산업 환경 및 법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방법론	48
[그림 1-9] 농식품 신산업 적용 범위	49
[그림 2-1] 4차 산업혁명 개념	53
[그림 2-2] 농식품모태펀드 계정별 투자조합 결성현황	57
[그림 2-3] 농업의 10차 산업화 개념	59
[그림 2-4] '농업의 10차 산업화'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방법론	62
[그림 2-5]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농업 정의 및 범위	64
[그림 2-6] 농업의 범위 개선(안) 예시	65
[그림 2-7] 토지 개량시설 및 관련 생산시설의 범위 개선(안) 예시	68
[그림 2-8] 농업 생산자단체 범위 개선(안) 예시	73
[그림 2-9]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범위 개선(안) 예시	76
[그림 2-10] 농식품투자조합 투자 대상 다양화 개선(안) 예시	81
[그림 2-11]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사례 비교 : 일본 vs. 한국	104
[그림 2-12] 식품공전 기준 특수용도식품 식품유형 분류 체계	107
[그림 2-13]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유통 구조	111
[그림 2-14] 식물성 대체육 성장 요인	119
[그림 2-15] 배양육 제조 프로세스	121
[그림 2-16] 식물성 대체육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개선(안) 예시	126

[그림 2-17] ‘축산업’ 정의 개선(안) 예시	130
[그림 2-18] ‘축산물’ 정의 개선(안) 예시	131
[그림 2-19] 배양육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개선(안) 예시	133
[그림 2-20] 반려동물 법적 범위	134
[그림 2-21]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연관산업 가치사슬	140
[그림 2-22] 글로벌 고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품 출시 사례	159
[그림 2-23]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개선(안) 예시	171
[그림 2-24]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영업관리 개선(안) 예시	175
[그림 2-25] 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안) 예시	180
[그림 2-26] 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관 협의체 분과 구성(안) 예시	180
[그림 2-27]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제공 개선(안) 예시	183
[그림 2-28] 사료 영양 및 급여 기준 사전 지정 통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개선(안) 예시	189
[그림 2-29] 미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정책 거버넌스 사례	190
[그림 2-30]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개선(안) 예시	192
[그림 2-31] 축종별 한국가축사양표준 활용 및 개정 방향	195
[그림 2-32]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원료 정보 DB 구축 체계 개선(안) 예시	196
[그림 2-33]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위생관리(HACCP) 강화 개선(안) 예시	199
[그림 2-34]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개선(안) 예시: 관련 규정 제정 및 위생·안전 교육	203
[그림 2-35]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개선(안) 예시: 사료 이상 시 폐기·회수	204
[그림 2-36]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전담 민간지원조직 설립 개선(안) 예시	209
[그림 2-37] 반려동물사료 및 관련 산업 등 지원 목적 중장기 정책 수립·개발 관련 주요 내용	212
[그림 2-38]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약 분류 체계	220
[그림 2-39] 비료 분류 체계	229
[그림 2-40]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235
[그림 2-4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개선(안) 예시	237
[그림 2-42] 식물분자농업 통한 바이오 제품 생산 과정	241
[그림 2-43] 식물분자농업 통한 생물의약품 생산 특징	242
[그림 2-44] “도시농업” 정의 및 범위 개선(안) 예시	246

[그림 2-45] “도시농업의 유형 등” 개선(안) 예시	247
[그림 3-1]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진행방식 및 과정	254
[그림 3-2] 규제샌드박스 제도 주요 내용	255
[그림 3-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Ansell & Gash 2007)	258
[그림 3-4] 정부 한걸음 모델 상생메뉴판	259
[그림 3-5] 대기업의 스마트팜(식물농장) 참여 반대 사례	263
[그림 3-6] 농식품 신산업 사회적 수용 및 저항 정도	264
[그림 3-7]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규제 개혁 로드맵	265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1.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통계 분석
2. 신산업별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종합 요약

1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통계 분석

□ 농식품 신산업별 규제개선과제 현황

○ 본 연구를 통한 농식품 신산업별 규제개선과제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1] 농식품 신산업별 규제개선과제 현황

구분		규제과제(건)	비고
1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7	
2	건강기능식품	2	
3	고령친화식품	2	
4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1	
5	대체식품	식물성 대체육	1
		배양육	2
6	반려동물사료(펫푸드)	13	신법 제정
7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1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8	생물비료	2	
9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2	
합계		33	

□ 소관부처별 규제과제 현황

○ 본 연구를 통한 소관부처별 규제개선과제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2] 소관부처별 규제개선과제 현황

구분		규제과제(건)	비고
1	농림축산식품부	24	
2	식품의약품안전처	6	
3	기타	기획재정부	1
		중소벤처기업부	1
		통계청	1
합계		33	

□ 법령단위별 규제과제 현황

○ 본 연구를 통한 법령단위별 규제개선과제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3] 법령단위별 규제개선과제 현황

구분		규제과제(건)	비고
1	신법 제정	10	
2	기존 법령 개선	법률	법률, 법률 + 하위 법령 등
3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 하위 규정 등
4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 하위 규정 등
5		고시·훈령	
6	정책 제언	6	
합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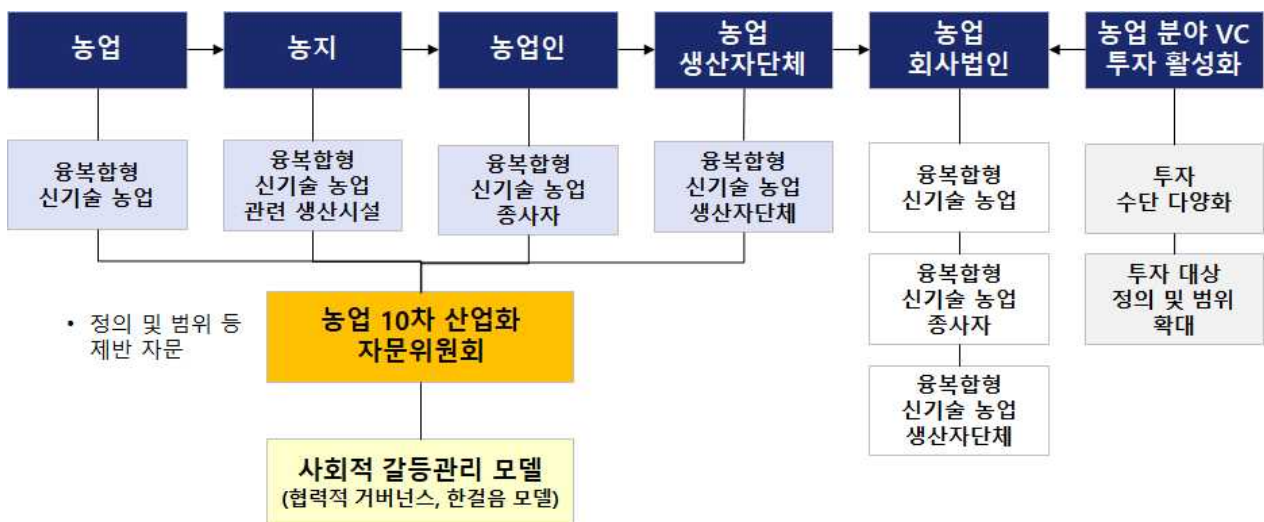
2

신산업별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종합 요약

□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 (규제개선 방향)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미래 융복합형 농업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이 농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
 -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이 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농업인, 농업단체의 입장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
- 미래 농업은 ‘농업의 6차 산업화에서 4차 산업혁명 向 융복합형 신기술 기반 10차 산업화’로 전환 성공에 의존
 - (농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존 6차(1차, 2차 및 3차)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들을 융복합하여 농업의 10차(1차, 2차, 3차 및 4차) 산업화 추진 필요
-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부분의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방법론은 아래와 같음

‘농업의 10차 산업화’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방법론



[표 1-4]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1	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정의 및 범위 확대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범위’ 를 주로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에 한정하거나 더 중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농업의 정의와 범위’ 를 확대할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추가 ‘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를 구성 및 운영하여 농업의 정의 및 범위 등 농업의 10차 산업화 관련 제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re> graph TD A[농업의 범위] --> B[농작물재배업] A --> C[축산업] A --> D[임업] A --> E[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E --- F[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F --- G[농업의 정의 및 범위 등 제반 자문] </pre>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2	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의 정의 및 범위 확대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의 범위’ 를 주로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에 한정하거나 더 중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농지의 정의와 범위’ 를 확대할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정의)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생산시설’ 추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re> graph TD A[토지 개량시설 및 관련 생산시설 범위] --> B[토지의 개량시설] A --> C[농축산물 생산시설] A --> D[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생산시설] D --- E[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E --- F[토지 개량시설 및 관련 생산시설의 범위 등 제반 자문] </pre>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3	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정의 및 범위 확대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범위’ 를 주로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에 한정하거나 더 중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농업인의 정의와 범위’ 를 확대할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정의)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외 자본의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입을 현재 보다 더 유연하게 해야할 필요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종사자’ 추가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4	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생산자단체의 정의 및 범위 확대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단체’를 농업경영에 이미 진입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생산자단체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제2019-8호)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외 자본의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입을 현재 보다 더 유연하게 해야할 필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생산자단체’ 추가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종사자 외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도 포함하여 농업 10차 산업화 활성화 목적 창업 생태계 구축 추진 <div style="text-align: center;"> <p>농업 생산자단체 범위</p> <pre> graph TD A[농업 생산자단체 범위] --> B[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A --> C[농업인 5명 이상 결성 조직] A --> D[업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D --> E[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예비 창업자, 창업자 또는 종사자 5명 이상 결성 조직] E --> F[농업 생산자단체 범위 등 제반 자문] F --> G[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pre>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생산자단체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5	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법률 시행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기준 완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이미 농업경영에 진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입장벽을 개선할 필요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 농지법 제2조(정의)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외 자본의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입을 현재 보다 더 유연하게 해야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개정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종사자’ 및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생산자단체’ 추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종사자’ 및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생산자단체’ 추가 <div data-bbox="391 1041 1380 1400" style="text-align: center;"> <p>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p> <pre> graph TD A[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 B[농업인] A --> C[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종사자] A --> D[농업생산자단체] A --> E[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생산자단체] C --- F[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E --- F F --- G[•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범위 등 제반 자문]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형 ‘농업신기술’ 개발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신기술법인’ 경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방식 등’의 다양화 확대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6	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법률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 : 투자 수단 다양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촉진법) 주식회사의 주식(구주, 신주), 무담보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 가능하여 투자수단이 다양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주식회사 경우 발행주식(신주)만 투자 가능하여 투자수단이 단순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조(정의)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외 자본의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식(구주),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조(정의) 개정 검토 필요 → 주식회사의 주식(구주, 신주),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포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수단을 다양화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 : 투자 대상 정의 및 범위 확대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촉진법) '벤처투자'를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 등으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농업·임업·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을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과 제조·가공, 그와 관련된 산업으로 한정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조(정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7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현재 보다 확대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산업' 추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re> graph TD A[농식품투자조합 투자 대상] --> B[농업 관련 산업] A --> C[수산업 관련 사업] A --> D[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산업] B --> E[임업 관련 산업] B --> F[식품산업 관련 산업] </pre>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 대상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 건강기능식품

- (규제개선 방향)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등 적극적 산업정책 필요
- 현장에서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기능성 표시제 도입, 원료 범위 확대, 소비자 맞춤형 판매 허용 등 요청

[표 1-5] 건강기능식품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건강기능식품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법률
1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성분 인정 및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품’이라는 내용의 표현’ 표기를 허용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임상시험성적, 연구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경우, 이에 따라 제조·가공된 의료식품은 기존 식품과 구별되는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① ‘영양소기능’, ②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③ ‘생리활성 기능’이 있음 -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질병의 예방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품’이라는 내용의 표현’ 표기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 범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시사항)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경우,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개정 검토 필요 →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인정 •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경우,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품’이라는 내용의 표현’ 표기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개정 검토 필요 →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품’이라는 내용의 표현’ 표기를 허용 - 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 규제 개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p>* 규제 개선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수렴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p>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경우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성분 인정 및 표기 통한 소비자 이해도 증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전망 					
신산업 분야	건강기능식품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법령 단위	법률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벤처기업 요건에 농식품투자조합을 포함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벤처기업 요건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는 포함되어 있으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한 건강기능식품벤처기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2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종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벤처기업 요건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포함하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개정 검토 필요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투자조합 포함 통한 건강기능식품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전망 					

□ 고령친화식품

- (규제개선 방향) 관련 제도 정비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으로 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공공분야를 통한 시장활성화 모색

[표 1-6] 고령친화식품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고령친화식품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정책 제안
1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구체화 필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구체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의 품목 범위를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영유아 및 임산·수유부용 식품 제외)까지 포함하여 분류(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 식품 : 두부류 및 묵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인삼/홍삼제품(인삼/홍삼음료, 차, 당절임) 등 고령친화식품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등과 별도 구분되지 않고, 상호 혼재된 개념으로 제품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추세* * (예) ○식품 마일드케어 검은참깨 소비자의 제품 구분 및 이해를 위해 고령친화식품을 별도 식품유형으로 분류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20.0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경우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분 및 이해를 위한 별도 식품유형으로 분류하고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품 구분 및 이해 증가를 통한 소비 활성화 				
	신산업 분야	고령친화식품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정책 제안
2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다양화 필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고령친화식품은 물성기준 각 단계별(1~3단계) 특성을 정의하고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물성기준, 1종류) 1단계 치아 섭취, 2단계 잇몸 섭취, 3단계 혀로 섭취 소비자 선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다양화 필요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20.0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친화식품 분류체계를 현행 물성기준 3단계에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물성기준, 2종류) 씹는 힘*, 삼키는 힘** * (씹는 힘, 4단계) 1단계 문제 없음, 2단계 다소 약함, 3단계 매우 약함, 4단계 약함 ** (삼키는 힘, 4단계) 1단계 문제 없음, 2단계 다소 약함, 3단계 매우 약함, 4단계 약함 <div data-bbox="582 689 1209 1305" style="text-align: center;">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품 구분 및 이해 증가를 통한 소비 활성화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 (규제개선 방향)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기술 및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극대화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를 질환별·섭취대상군별로 세분화하여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표준화된 제조기준 마련('20~'21, 식약처)

[표 1-7]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시행규칙
1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허용 필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은 건강기능식품을 표시할 수 없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시험성적, 연구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제조·가공된 특수의료용도식품은 기존 식품과 구별되는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련 개선 건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식품 제조·가공기준의 경우 임상시험성적, 연구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경우에 설정되므로 이에 따라 제조·가공된 의료식품은 기존 식품과 구별되는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가 제안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련된 제조·가공기준을 따르거나 별도의 식약처 검증 등을 거친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에 한하여 관련 질환 치료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개정 검토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표시 허용 통한 소비자의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이해도 증가 및 오남용 방지 				

□ 대체식품(식물성 대체육)

- (규제개선 방향) 기술 고도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신시장 선점
 - 식물성 대체육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 기준 마련 및 규제 개선

[표 1-8] 대체식품(식물성 대체육)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대체식품(식물성 대체육)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고시·훈령	
1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대체육 관련 표기 개선 및 통계자료 정비 필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으로 식물성 고기·소스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내 시장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 기존 동물성 제품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아직 없지만,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식물성 대체육을 ‘식품유형’ 으로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고, ‘제품명 및 안내문’ 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관련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식품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통계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시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대체육을 기존 축산물(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과 별도 ‘식품유형’ 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되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명 및 안내문’ 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사례) 식물성 소고기, 식물성 돼지고기, 식물성 닭고기, 식물성 계란, 식물성 마요네즈, 식물성 버터 등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 •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개정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대체식품류 및 24-1. 식물성 대체육류’ 분류 추가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002060; color: whit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24.대체식품류</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9999cc;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24-1.식물성 대체육류</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2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2px;">식물성 식육가공품</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2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2px;">식물성 알가공품</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2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2px;">식물성 유가공품</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2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2px;">식물성 수산가공품</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2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2px;">기타 식물성 대체육</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24-2.배양육류</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24-3.기타대체식품류</div> </div>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성 대체육을 ‘식품유형’ 으로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고, ‘제품명 및 안내문’ 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을 사전 예방

□ 대체식품(배양육)

- (규제개선 방향) 기술 고도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신시장 선점
 - 배양육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 기준 마련 및 규제 개선

[표 1-9] 대체식품(배양육)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대체식품(배양육)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법률 시행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과 ‘축산물’의 정의 및 범위 확장 필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의 정의에 ‘배양육 제조업’, ‘축산물’의 정의에 ‘배양육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배양육 경우 ‘축산업’ 및 ‘축산물’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 축산법 제2조(정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1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의 정의에 ‘배양육 제조업’을 추가 검토 필요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축산업] --> B["(가축) 사육업"] A --> C["증식업 (정액등처리업)"] A --> D[증축업] A --> E[부화업] A --> F[배양육 제조업] F --> G["배양육 제조업의 정의 및 범위 등 제반 자료"] F --> H[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정의에 ‘배양육 가공품’을 추가 검토 필요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축산물] --> B[식육] A --> C[포장육] A --> D["원유 (原乳)"] A --> E["식용란 (食用卵)"] A --> F[배양육 가공품] F --> G["배양육 가공품의 정의 및 범위 등 제반 자료"] F --> H[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B --> I[식육가공품] C --> I D --> J[유가공품] E --> K[알가공품]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배양육 제조업’을 축산업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 필요</u>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의 정의에 ‘배양육 제조업’, ‘축산물’의 정의에 ‘배양육 가공품’을 추가하여 배양육 산업 육성 도모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대체식품(배양육)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고시·훈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양육 관련 표기 개선 및 통계자료 정비 필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으로 배양육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양육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관련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식품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배양육에 대한 통계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2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양육을 기존 축산물(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과 별도 ‘식품유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되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명 및 안내문’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 사례) 소고기 배양육, 돼지고기 배양육, 닭고기 배양육, 계란 배양육, 배양육 포함 마요네즈, 배양육 포함 버터 등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개정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대체식품류 및 24-2. 배양육류’ 분류 추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24.대체식품류</p> <pre> graph TD A[24.대체식품류] --> B[24-1.식물성 대체육류] A --> C[24-2.배양육류] A --> D[24-3.기타대체식품류] B --> B1[식물성 식육가공품] B --> B2[식물성 알가공품] B --> B3[식물성 유가공품] B --> B4[식물성 수산가공품] B --> B5[기타 식물성 대체육] C --> C1[배양육 식육가공품] C --> C2[배양육 알가공품] C --> C3[배양육 유가공품] C --> C4[배양육 수산가공품] C --> C5[기타 배양육] D --> D1[기타 대체식품] </pre>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양육을 ‘식품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고, ‘제품명 및 안내문’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을 사전 예방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 (규제개선 방향)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입법 제정 필요성
 - 반려동물 양육 규모 확대 따른 반려동물사료 수요 증가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특성을 반영한 관리 규제 부족
 - 반려동물용 고급 사료 시장 형성 따른 안전도, 성분 기준 및 규격 등 제도에 개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증가 등

[표 1-10]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별도 관리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동물용사료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료의 영양 가치 및 생산성을 위해 제조, 반면 반려동물사료는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원료 종류 및 품질, 기능성 등을 강조하는 경향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소비자는 일반 식품과 같이 반려동물사료를 신중히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1항 사료의 범위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제4조 관련)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 (제5조 관련)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배합사료의 범위 (제6조제2항 관련) 				
1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펫푸드)의 범위를 주식사료, 간식사료, 특수목적사료(영양보충사료, 기능성사료 및 요양용사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반려동물사료 분류 방법은 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re> graph TD A[반려동물사료 (펫푸드)] --> B[주식사료] A --> C[간식사료] A --> D[특수목적사료] B --> B1[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애완용동물)*] C --> C1[혼합성 단미사료 (애완용 동물의 간식용)*] D --> D1[영양보충사료] D --> D2[기능성사료] D --> D3[요양용사료] D1 --> D1_1[혼합성 단미사료 (애완용 동물의 영양보충용)*] D2 --> D2_1[고시형] D2 --> D2_2[개별인정형] D3 --> D3_1[고시형] D3 --> D3_2[개별인정형] </pre> </div>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10px;">* 사료관리법 기준</p>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도 증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사료, 간식사료, 특수목적사료(영양보충사료, 기능성사료 및 요양용사료) 등 신제품 출시 증가 통한 반려동물사료 산업 활성화 - 다양한 반려동물사료 선택권 확보 통한 소비자 만족도 증가 등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영업 범위 별도 관리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자는 등록 의무, 수입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으나 판매업자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 감독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판매업자에게 등록 의무 부과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사료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사료관리법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2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영업 관리 강화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 상 반려동물사료) 판매업자(소매 제외)에게 등록 의무 부과 - (반려동물사료관리법 상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소매 제외)에게 등록/신고 의무 부과 - 반려동물사료 판매 소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반려동물사료 (펫푸드)] --> B[사료관리법] A --> C[반려동물(펫푸드) 사료관리법] B --> D[판매업자 (반려동물사료 한정) (소매 제외)] C --> E[판매업자 (소매 제외)] C --> F[제조업자] C --> G[수입업자] D --- H(등록 의무) E --- H F --- I(신고 의무) G --- I </pre>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영업 관리 강화 통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강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그 제조·수입·판매하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정확한 표시의무 부과 (예) 명칭, 수량 등 					
3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규칙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 역량 강화 필요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 역량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관할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 확충 추진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7호)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장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현황) 총 10명 (반려동물 영업 1명, 반려동물 산업 1명 포함)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반려동물정책과를 별도 분리하여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전담 관할하는 방안 검토 필요 또한 연구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원의 확충에 대한 검토 필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2060; color: white; margin: 0;">As Is</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red;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2060; color: white; margin: 0;">To Be</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fffcc;">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반려동물정책과 업무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사료, 보호 및 관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사료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div> </div>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 역량 강화 통한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도모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전문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4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선진국은 반려동물 관련 민간협의체가 정한 자율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전문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보유 민간업계의 ‘자율’ 과 ‘책임’ 을 동시에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국내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사료공정의 설정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9조 (사료의 성분등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0조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민간업계 의견 반영이 사료 성분등록, 표시 및 광고에 한정되어 있어, 사료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계의 의견 반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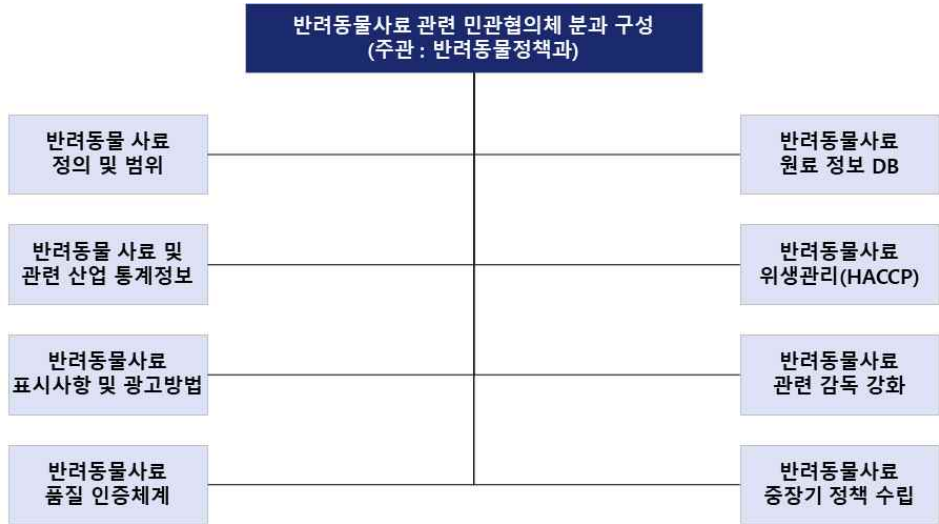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

- 국내 반려동물사료 산업 육성과 합리적·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조·유통·소비·안전 관련 기준 및 제도 마련 검토 필요



개선
방안

- 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관 협의체 분과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
- 분과별 목적 및 참여기관 등 관련성을 검토하여 소그룹으로 재편할 것을 권고



기대
효과

- 전문성 있는 민간 부문 참여 확대 통한 반려동물사료 산업의 자율규제 및 산업 활성화 도모

5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법령 단위	신법 제정 정책 제언
	규제 과제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제공 기반 마련				
	규제 현황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업계, 소비자,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통계정보 제공 기반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의 정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방법 개선 필요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통계 현황 : 종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은행 등에서 제조, 유통, 소비 부문에 걸쳐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를 작성 및 공표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 작성이 독립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통계 현황 : 한국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분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 제조업은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제조업의 하위 항목으로 통합되어 있어, 반려동물사료 제조업 관련 상세 현황과 동향 파악에 한계
-------	--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통계 조사방법 개선 및 민간 부문 통계 정보 확보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분과 중심 통계정보 제공 기반 마련 추진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에서 '반려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하여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 검토 필요 <table border="1" style="width:100%; margin-top: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206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As Is</th> <th style="background-color: #00206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To Be</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 반려동물 관련 사료 제외 <li style="background-color: #ffff00;">반려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용 주식사료 제조업 (10901) - 반려동물용 간식사료 제조업 (10902) - 반려동물용 특수목적사료 제조업 (10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보충사료 제조업 * 기능성사료 제조업 * 영양용사료 제조업 ※ 반려견 및 반려묘 대상 - 기타 반려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904) ※ 반려견 및 반려묘 제외 기타 반려동물 </td> </tr> </tbody> </table>	As Is	To 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 반려동물 관련 사료 제외 <li style="background-color: #ffff00;">반려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용 주식사료 제조업 (10901) - 반려동물용 간식사료 제조업 (10902) - 반려동물용 특수목적사료 제조업 (10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보충사료 제조업 * 기능성사료 제조업 * 영양용사료 제조업 ※ 반려견 및 반려묘 대상 - 기타 반려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904) ※ 반려견 및 반려묘 제외 기타 반려동물
As Is	To 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 반려동물 관련 사료 제외 <li style="background-color: #ffff00;">반려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용 주식사료 제조업 (10901) - 반려동물용 간식사료 제조업 (10902) - 반려동물용 특수목적사료 제조업 (10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보충사료 제조업 * 기능성사료 제조업 * 영양용사료 제조업 ※ 반려견 및 반려묘 대상 - 기타 반려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904) ※ 반려견 및 반려묘 제외 기타 반려동물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제공 통한 공공·민간 부문 의사결정 지원 - 반려동물사료 관련 업계, 소비자,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통계정보 제공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확대 따른 표시사항 및 광고방법 변경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사료, 간식사료, 특수목적사료(영양보충사료, 기능성사료 및 요양용사료) 등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확대에 따른 표시 사항 및 방법 변경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은 특수목적사료 관련 영양기준 등을 사전 지정하여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 - 우리나라는 사료 관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14조 관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제10조제1호 관련) 				
6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적사료 관련 기준 및 규격 등을 사전 지정하고, 이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사료, 간식사료, 특수목적사료(영양보충사료, 기능성사료 및 요양용사료) 등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확대에 따른 표시 사항 및 방법 변경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만족도 증가 등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7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를 구축, 국산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추진 - 전문가, 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품질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산 제품의 원료성분, 표시사항 등을 평가하고, 우수제품 홍보체계 구축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사료공정의 설정 등)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검토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민관 합동 품질 인증체계 구축 통한 국산 반려동물사료(펫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만족도 제고 및 소비 활성화 					
8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원료 정보 DB 구축 체계 마련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제품의 개발·출시가 가능토록 원료 범위를 식품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품 검정·검사 강화 등 원료의 품질 및 안전성 기준 정비 추진 - 현행 「사료관리법」의 기준 및 규격은 산업동물용사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고품질화 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 제시할 필요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4조 (사료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개정판 기준 축종별 사양표준은 한우, 젓소, 돼지, 가금(닭, 오리) 등만 취급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사료 원료 정보 DB 구축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협의에 따라 반려동물사료 원료 정의 및 기준 등 설정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작성 및 원료 정보 DB 구축/운영 민간 위임 등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프로세스 <div data-bbox="363 674 1406 1122"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관협의체 (주관: 반려동물정책과)</p> <p>↓</p> <p>반려동물사료 원료 정보 DB 분과</p> <p>↙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방향 제시</p> <p>국립축산과학원, 사료관련 단체 등</p> <p>↕</p> <p>• 연구과제 위탁</p> <p>반려동물사료 연구단체 (분석기관, 대학 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작성</p> <p>사양표준 등 공시 (사료관련 단체 등)</p> <p>↓</p> <p>반려동물사료 원료 정보 DB 구축/운영</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심의 및 정보 제공</p> <p>반려동물사료 제조·수입·판매 업자</p> </div> </div> <p>↘ ↙</p> <p>•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홍보/교육</p>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양표준 등 작성 및 원료 정보 DB 구축/운영 통한 다양한 반려동물사료 개발 및 수입 대체 효과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위생관리(HACCP) 강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위생관리(HACCP) 기준 및 사료 안정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반려동물사료 전용 위생관리(HACCP) 기준이 부재하여 신설이 필요한 상황 				
9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 (담당기관 지정 등)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2 (교육훈련 등)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평가방법 등)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 전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는 부재하여 신설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소규모 공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건사료 공장용(주식사료)과 소규모 공장용(간식사료)으로 구분할 필요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위생관리(HACCP) 강화 검토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사료공장 HACCP 기준 제정 통한 사료 안정성 강화 및 소비자 만족도 증가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강화 				
10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경우 사료 장부 기재사항 관련 구체적 항목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사료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음 반려동물사료 추적 관리체계 제도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등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사료 장부 비치 관련, 제조·판매·유통 각 단계에서 장부 기재사항의 구체화 및 전자문서화 추진 - 반려동물사료의 제조·수입·유통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① 관련 규정 제정, ② 사업자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제도화, ③ 사료 이상 시 폐기·회수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관리법 제21조 (사료검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수거량·검정의뢰 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감독 관련 개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의 장부비치 의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사료의 형태, 제조번호, 수량 등 구체적 의무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개선 검토 필요
: 관련 규정 제정 및 위생·안전 교육 프로세스 개선(안) 예시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개선 검토 필요
: 사료 문제 발생 시 폐기·회수 프로세스 개선(안) 예시


개선
방안

기대 효과 • 사업주체별 구체적 사료 장부 기재사항 마련 및 전자문서화 통한 반려동물사료의 안전 문제 발생에 사전 대비 강화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정책 제언
11	규제 과제	•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관리 전담 민간지원조직 설립			
11	규제 현황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 민간지원조직 설립 추진 필요 - 신산업 육성 및 지원 목적의 '진흥원' 형태 기관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시키는 사례 다수 존재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 산업 진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 민간지원조직(‘진흥원’ 형태) 설립 검토 필요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관협의체 분과 구성 (주관: 반려동물정책과)</p> <pre> graph TD A[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관협의체 분과 구성 (주관: 반려동물정책과)] B[정책 집행] C[정책 집행 지원] D[지원 및 협력] E[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전담 민간지원조직] F[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G[반려동물사료 제조·수입·판매 업자] H[반려동물사료 소비자] A --- B A --- C A --- D A --- E E --- F F --- G F --- H subgraph D_Group [지원 및 협력] D1[사료 관련 단체 등] D2[통계 정보 제공 기관] D3[국립축산과학원] D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D5[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D6[전문·연구 기관, 대학 등 (대한수의사회 등)] end subgraph C_Group [정책 집행 지원] C1[반려동물 사료 정의 및 범위] C2[반려동물사료 원료 정보 DB] C3[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C4[반려동물사료 위생관리(HACCP)] C5[반려동물사료 표시사항 및 광고방법] C6[반려동물사료 관련 감독 강화] C7[반려동물사료 품질 인증체계] C8[반려동물사료 및 산업 정책 수립] end </pre>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민간지원조직(‘진흥원’ 형태) 설립 통한 반려동물사료 산업 진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 위한 정책 수립·개발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 수립·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육성 및 지원 목적의 중장기(5년 주기) 정책 수립·개발 법제화 사례 다수 존재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육성 및 지원 목적의 중장기 정책 수립·개발 관련 주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사료 산업 진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개발 검토 필요 				

12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2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방향 및 목표 3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4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사업 5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의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6 •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 지원 7 • 반려동물 보호 관련 사업 지원 8 • 그 밖에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사업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사료 산업 진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개발 통한 반려동물 복지 증대 및 신산업 활성화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규칙 고시·훈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곤충 등 대체 동물성 단백질 활용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개발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사료 제조 원료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제품의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다양한 원재료를 개발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곤충 등 대체 동물성 단백질을 반려동물 사료의 원재료로 활용하여 기능성,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13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공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용곤충 9종 ('20년 7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제4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 제1호 나목]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미사료의 범위 중 동물성 종류에 반려동물용 곤충류 추가 검토 필요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의 동물성 종류에 곤충류 추가 검토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용 곤충류 활용 다양한 고부가가치 반려동물사료 원료 개발 및 수입 대체 효과 					

□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표 1-11]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정책 제언
1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활성화 애로사항 및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 품질인증 강화 필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대비 친환경유기농자재 선호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 등록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이에 대한 선별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생물제에 대한 공시뿐만 아니라 품질인증이 더 확대되어 농업인의 선별 사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는 포장지에 적용작물, 사용량, 사용방법이 표기되나 적용 병해충명은 기재가 불가능한 상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법 제2조(정의) 친환경농업법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업법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46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대상)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4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기준)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에 대한 품질인증을 의무화하여 농업인의 선별 사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 의무화 검토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의 품질인증 의무화 통한 농업인의 선별 사용 용이 기대 			

□ 생물비료

[표 1-12] 생물비료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생물비료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정책 제언
1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생물비료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성 평가 간소화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평가 간소화 등 통한 미생물비료의 조기 산업화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을 고성장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미생물비료의 조기 산업화를 지원할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료관리법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2조(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호) 				
	해외 유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 성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FDA는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규제 요건에 반영하여 신약개발시간 단축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생물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경우 ‘인체 또는 동식물에 병원성 발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생략하여 설정 및 지정 절차 중 안전성 평가 간소화 추진을 검토 할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미생물비료의 조기 산업화를 지원 기대 				
	신산업 분야	생물비료	소관 부처	통계청	법령 단위	정책 제언
2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검토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생물비료 관련 통계자료 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생물비료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에 포함되어 별도 생산량 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 미생물비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해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에서 미생물비료를 별도 분리하여 생산, 유통 및 소비까지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비료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4>에 포함되어 있음 	<pre> graph TD A[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31)] --> B[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A --> C[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A --> D[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 E[미생물비료] --> F[부속유기질비료] E --> G[유기질비료] E --> H[미생물비료] I[미생물비료 포함] -.-> D </pre>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 미생물비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해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에서 <미생물비료 20314>를 별도 업종으로 분리하여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 추진을 검토 할 필요 	<pre> graph TD A[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31)] --> B[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A --> C[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A --> D[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 A --> E[미생물비료 제조업 (20314)] </pre>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생물비료> 별도 생산량 집계 통한 정확한 미생물비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관리 지원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 (규제개선 방향) 우수한 국내 식물분자농업 관련 연구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식물분자농업 상용화 식물공장 운영기술 확립 및 산업화기술 확립 지원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을 도시농업의 정의 및 범위에 포함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의 기자재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표 1-13]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규제과제 및 개선방안 요약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법률
1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을 단기적으로 도시농업에 포함, 장기적으로 산업 활성화 목적 별도 법 제정 추진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활성화를 위해 식물분자농업을 도시농업의 정의 및 범위에 포함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분자농업 전용 식물공장은 제약/바이오 특화 전문인력 유치 등 필요에 의해 도심의 건축물 내에 위치하는 경향 -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식물공장은 도시농업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단기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변경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분자농업 행위 또는 관련 행위’ 를 추가하여 ‘도시농업’ 의 범위를 확장 - ‘식물분자농업 도시농업법인’ 추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도시농업] --> B[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 행위] A --> C[수목 또는 화초 재배 행위] A --> D[곤충 사육 (양봉 포함) 행위] A --> E[식물분자농업 또는 관련 행위] E --- F[식물분자농업 도시농업법인] G[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 E G --- H[• 식물분자농업 또는 관련 행위, 식물분자농업의 정의 및 범위 등 제반 자료] </pre> </div>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변경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농업의 유형에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형 도시농업” 추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p>도시농업의 유형 등</p> <pre> graph TD A[도시농업의 유형 등] --- B[주택활용형 도시농업] A --- C[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A --- D[근린생활권 도시농업] A --- E[학교교육형 도시농업] A --- F[도심형 도시농업] A --- G[식물분자농업형 도시농업] </pre> </div>					
장기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으로 식물분자농업 활성화 관련 별도 법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분자농업이 도시농업의 유형에 포함될 경우, 도시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만 도시농업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지역적 확장성에 한계 존재 또한 식물분자농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유전자변형생물(GMO)이 도시농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할 수 있음 이에 식물분자농업 활성화 관련 별도 법을 제정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의 도시농업 포함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세계적인 기술 우위 확보 지원 					
신산업 분야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법령 단위	법률 시행령	
규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으로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의 도시농업 포함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세계적인 기술 우위 확보 지원 장기적으로 식물분자농업 활성화 관련 별도 법을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 向 농식품 신산업 육성 추진 					
2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분자농업 활성화를 위해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기자재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약/바이오 특화 R&D 및 제조 가능 시설물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등 관련 기준 준수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커,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의 산업화에 어려움으로 작용 농업용 기자재(비료·농약·농업용 기계, 유기농 자재 등)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기자재의 경우 농업용 기자재로 열거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No.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관련 기자재도 다른 농산물 기자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유연하게 분류 검토 필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기자재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세계적인 기술 우위 확보 지원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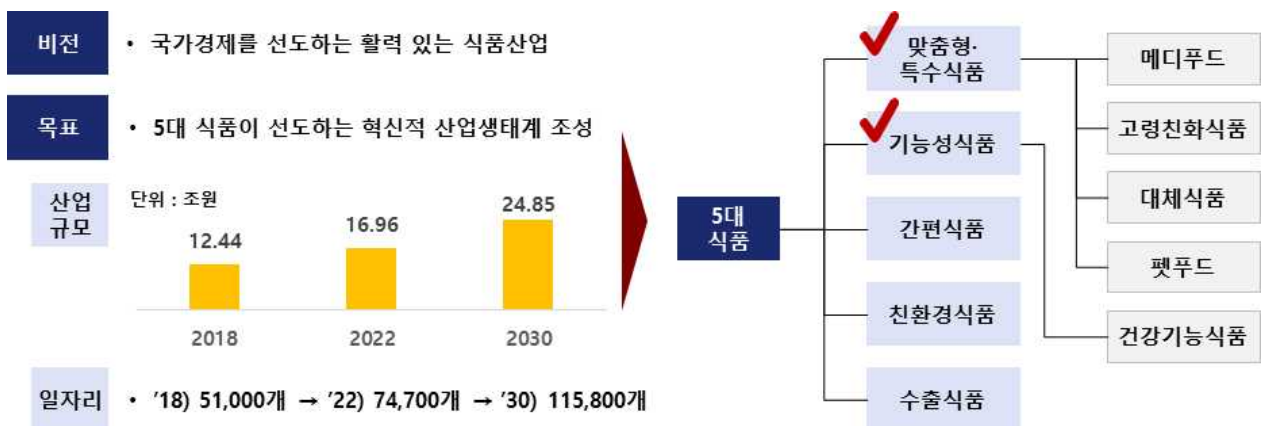
1. 연구 개요
2. 연구 체계

1.1 연구 추진배경

□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¹⁾

-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
 -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인구구조 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우리 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 등으로 식품산업 성장 여건 성숙
 -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고, R&D 저조 등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해 신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그림 1-1]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9)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재구성

1) 관계부처합동 (2019)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²⁾

-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그림 1-2]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①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② 바이오 부가가치의 원천인 미래 유망기술 확보
2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중점 육성	③ 바이오산업 우수 핵심인재 양성
3 시장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선진화	④ 바이오헬스 분야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 ⑤ 바이오산업 금융분야 제도 정비
4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⑥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⑦ 바이오 클러스터 재정비를 통한 지역거점 육성
5 바이오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	⑧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⑨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활성화 ⑩ 화이트바이오 초기시장 창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0)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재구성

- (핵심과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활성화
 - 고령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 추세에 따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기술 활성화 필요
 - 그린바이오 사례

맞춤형 혁신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푸드, 고령친화제품, 바이오기술 접목 차세대 대체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생명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 마이크로바이옴 등 미생물 생명자원·소재
식물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조건 제어 및 조직·세포 배양 등 바이오기술을 활용하는 농작물 생산 시스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0)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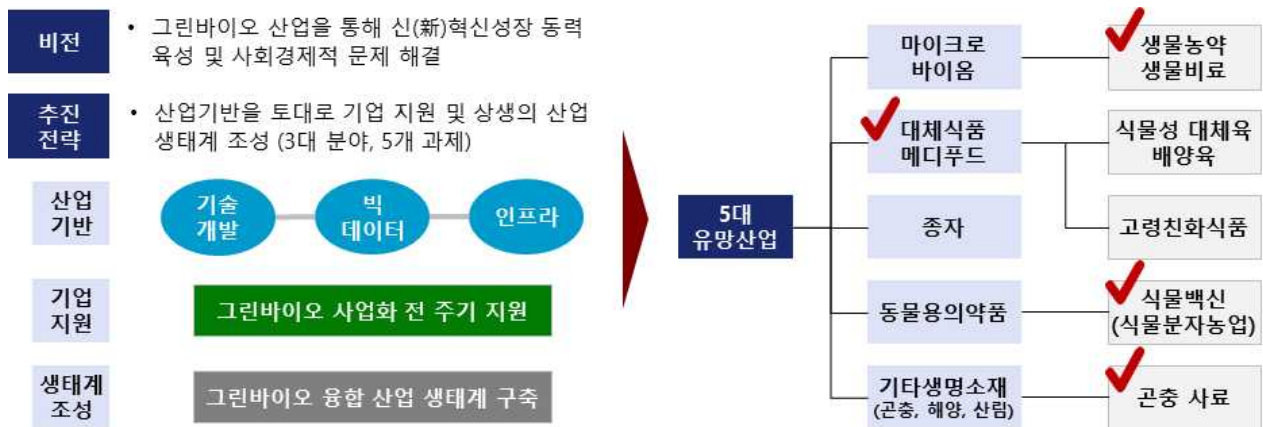
2) 관계부처합동 (2020)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³⁾

○ 5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BT, 빅데이터 및 AI 관련 기술을 융합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생명소재(곤충, 해양, 산림)
- 최근 IT·BT 등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은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여 산업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였고 경쟁력도 낮은 수준

[그림 1-3]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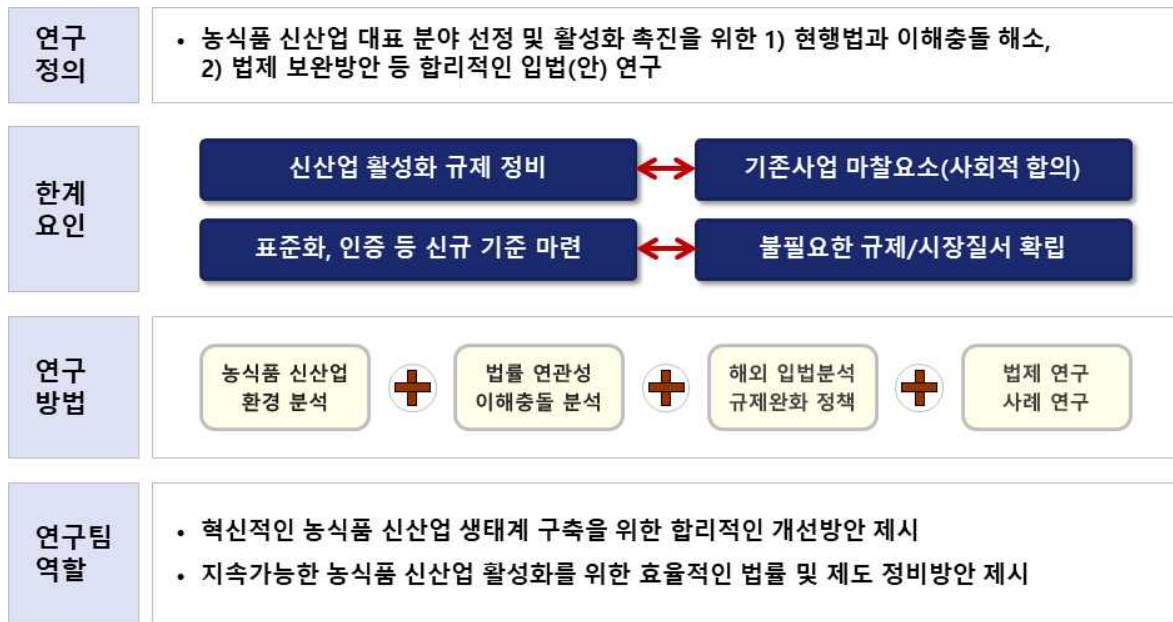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재구성

3)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1.2 연구 목적

- 농식품 신산업 대표 분야 선정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한 1) 현행법과 이해충돌 해소, 2) 법제 보완방안 등 합리적인 입법(안)을 연구
 - 혁신적인 농식품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농식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및 제도 정비방안 제시

[그림 1-4]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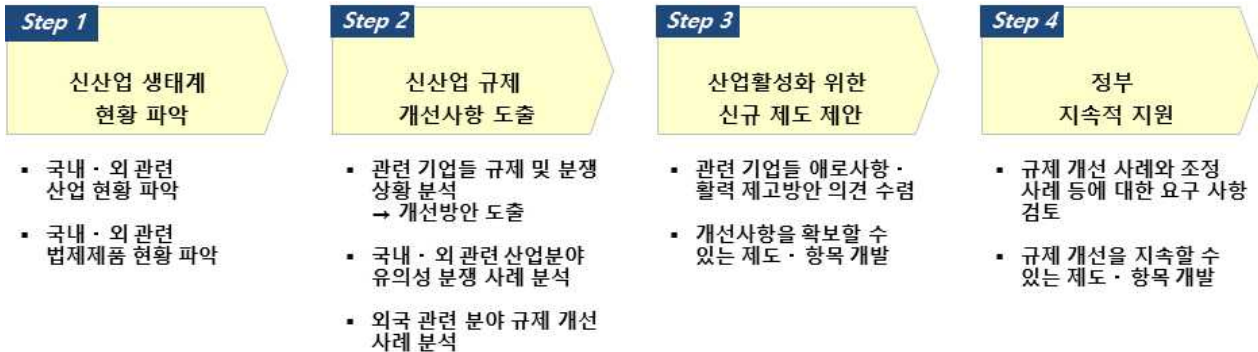


1.3 연구 방향

□ 농식품 신산업 규제개선 연구를 위한 기본방향

- 산업적·법적 개념 정의를 확립하여 농식품 신산업별 적정한 시장 획정 제시
- 농식품 신산업 관련 산업환경 분석 통한 시장 활성화 방향 도출
- 농식품 신산업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통한 규제 개선 방향 도출
- 농식품 관련 산업들 간 이해충돌 요인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시

[그림 1-5] 농식품 신산업 규제개선 연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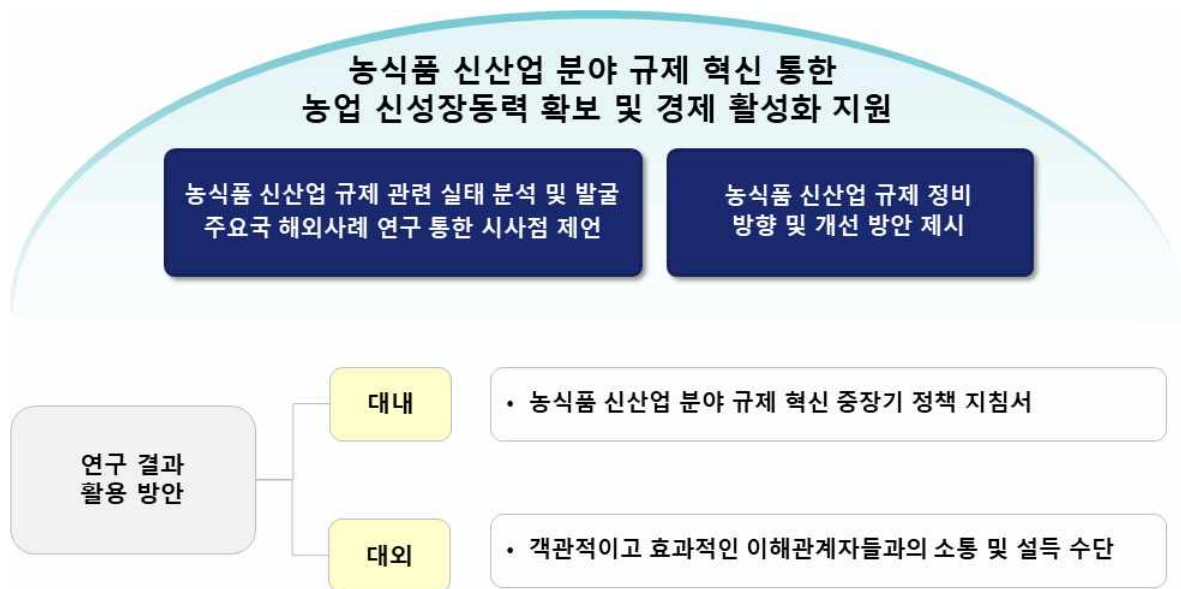


1.4 연구 기대효과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 결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1-6] 연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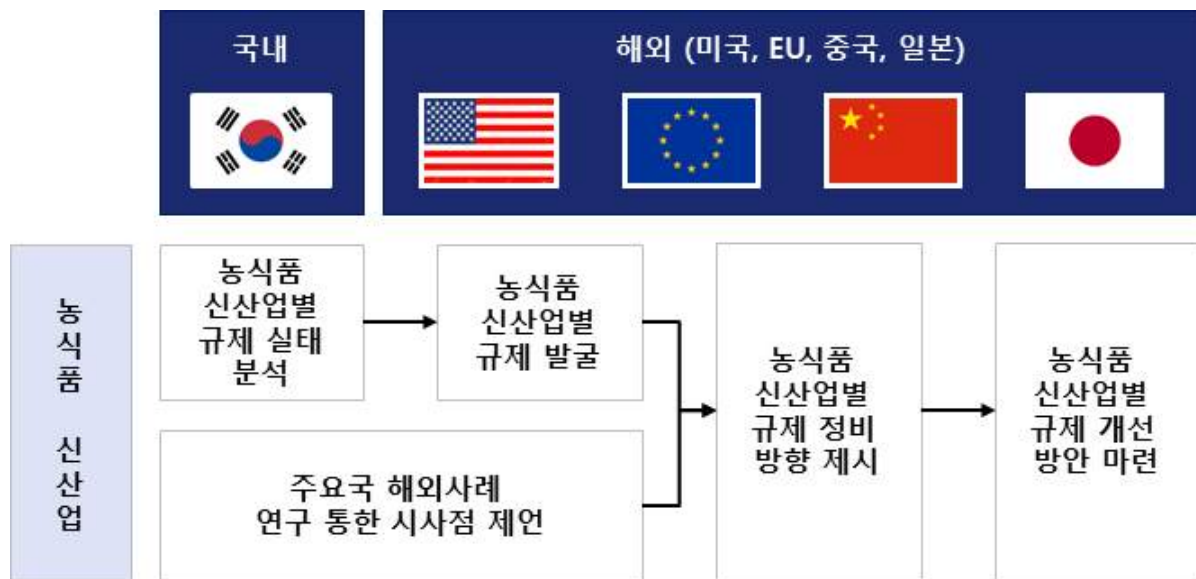


2.1 Approach Framework

□ 연구 수행 방법론

-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통한 농업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이라는 비전 달성 위한 농식품 신산업 규제 정비 방향 제시·개선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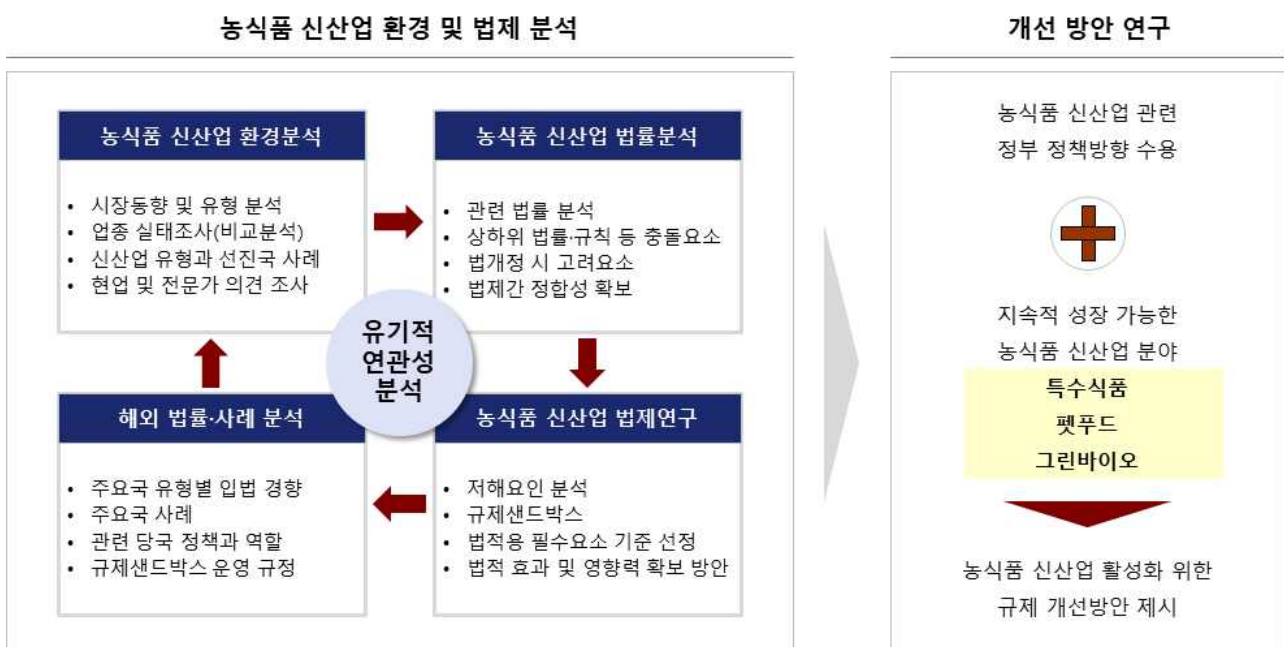
[그림 1-7] 연구 수행 방법론



□ 농식품 신산업 환경 및 법제 분석 방법

- 농식품 신산업 환경 및 법제 분석에 근거하여 규제보완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농식품 신산업 관련 정부 정책방향 수용
 - 지속적 성장 가능한 농식품 신산업 분야 대상, 농식품 신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방안 제시

[그림 1-8] 농식품 신산업 환경 및 법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방법론



2.2 연구 내용(범위)

□ 농식품 신산업 적용 범위

- 본 연구용역 범위는 국내외 관련 시장 성장성, 농업 연계 매출/고용 증대 가능성 등이 높은 농식품 R&D, 제조/가공 및 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신기술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에 중점
 - 5대 유망식품군 中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대체식품(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반려동물사료(펫푸드)
 - 그린바이오 中 천연식품보호제(생물농약), 생물비료, 친환경유기농자재,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그림 1-9] 농식품 신산업 적용 범위



II. 농식품 신산업별 규제 실태 분석 및 발굴

1.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2. 건강기능식품
3. 고령친화식품
4.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5. 대체식품
6. 반려동물사료(펫푸드)
7.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8. 생물비료
9.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1.1 산업 환경 분석

□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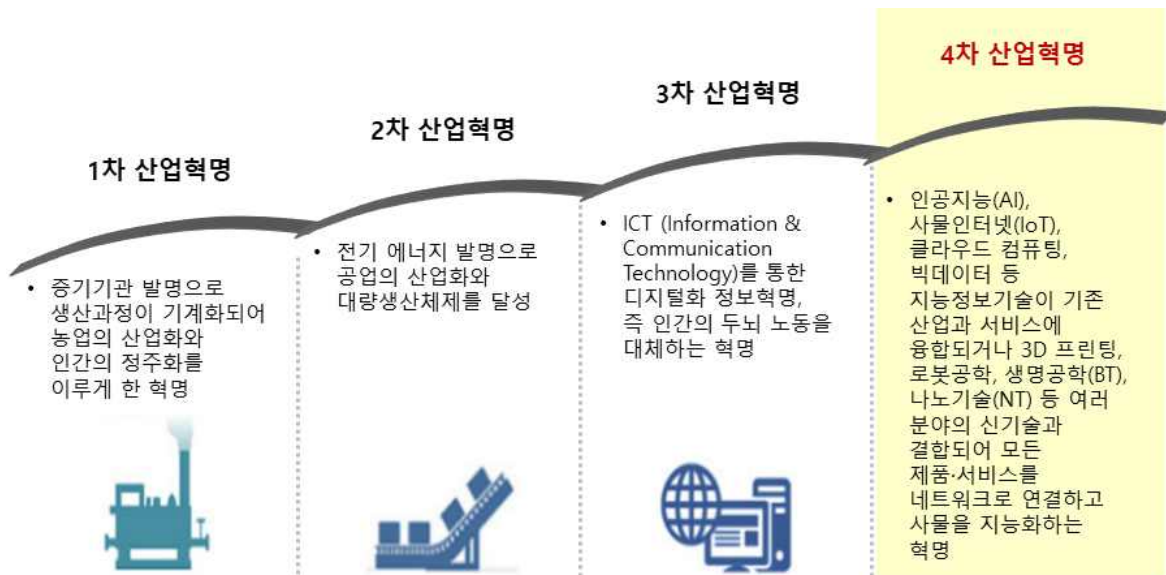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정의 및 범위

- (정의) 지능정보기술*이 ①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하거나, ② 다양한 미래 신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혁명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BT, Bio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등

[그림 2-1] 4차 산업혁명 개념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8)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 1, 재구성

4) 농촌경제연구원 (2018)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 1

- (범위) 농업부문 경우 물리적 기술, 디지털 기술 그리고 생물학 기술까지 포함

물리적 기술	• 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디지털 기술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 만물인터넷(loE, Internet of Everything) 등
생물학 기술	• 바이오연료 생산, 종자개발, 유전자조작종자(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등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8)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 1, 재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미래

- 미래농업의 주요 이슈는 ① 생산성·생산량 증대, ②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농업, ③ 신가치 창출, ④ 농업의 범위 확대로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농업에 적용할 경우 현재 및 미래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2-1]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농업의 주요 이슈

구분	주요 내용
생산성·생산량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절감 농업으로 전환 • 복합환경 자동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농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로 가격 안정 • 원격 전문가 지원 가능으로 경영 효율성 증대 • 식량안보(가용성, 접근성, 안전성)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최적이용으로 비용절감 및 자원고갈에 대응 • 재해예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가능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에 적합한 신품종 도입
신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융합 신유통 플랫폼 등장으로 효율성 제고 및 신가치 창출 • 식품의 안전성 •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 • 농산물 화상거래 시스템으로 전환 및 농산물의 On-Demand화
농업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품 연계 비즈니스 성장 • 바이오 생물학 적용을 통한 신약·에너지 생산 •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생물 처리기술 적용 확대 •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기술 적용 확대 •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인공 배양육 등 생산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8)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 1, 재구성

□ (정부)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⁵⁾

- (추진배경) 주요 기업·국가들이 농업을 새로운 혁신분야로 주목 중
 - 글로벌 농업 기업은 생산성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
 - *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도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 주요 농업 선진국들은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 * 2022년 세계 스마트팜 시장 예상규모는 약 4,080억 달러, 연평균 약 26.5% 지속 증가 예상
 -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IT(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BT(유전자분석 등)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하고 국가 R&D 역량 결집이 필요

- (중점추진과제)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구현하고, 농업 생명과학기술로 농업 전후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스마트농업) ICT와 농업의 융합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업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 (농업생명기술) 신육종기술, 유용 미생물 활용, 고부가 바이오소재 개발 등 신바이오농업의 활성화

- (중점추진전략) 민간의 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 R&D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구축
 - 농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표 2-2] (정부)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주요 내용

①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농업으로 확장

- (스마트팜) 스마트팜 기술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미래 선도형 융합기반 기술을 개발
- (스마트농업) 농업용 위성·드론 기반 작황 예측·평가와 기후변화 적응기술, 자율주행 트랙터 등 농업로봇 기술 고도화로 농업의 생산안정성 향상
- (스마트유통) 농산물 생산이력관리와 저장·품질 관리기술 고도화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안심 먹거리 관리

② 농업생명기술 개발로 바이오산업 활성화

- (신육종기술) 시장변화 대응 육종소재 다양화 및 신기능 도입을 위한 신육종 기술 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5)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19)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 (유용미생물) 폐플라스틱과 잔류농약 등을 분해하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환경문제 해결 및 미생물산업 성장 기반 마련
- (동식물질병) 방제가 어렵고 치료제가 없는 동식물 질병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기술 개발
- (농생명소재) ICT, BT 융합기술 기반 농생명소재, 3D프린팅 식품 등 고부가가치화

③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인력양성) 스마트팜 및 스마트농업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 (공감대확보) 푸드컴퓨터*의 활용과 도시농업 등으로 국민 공감대 확보
 - *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식물을 키우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재배기
- (R&D융복합) 부처·민간과의 농업 R&D 융복합 연구 추진과 보급 확대
- (인프라구축) 농업 스마트화를 가속하기 위한 D·N·A(Data, Network, AI) 인프라 구축
- (벤처창업) 농식품벤처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창업 기반 조성
- (안전농촌) 농업 D·N·A(Data, Network, AI) 인프라 활용 안전한 스마트 농촌 조성
- (수출지원) 농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수출 지원

자료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19)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재구성

□ 4차 산업혁명과 농업 부문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필요성

- (정의) 무형자산(지식재산생산물)은 지적 노력에 기반한 결과물로 미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고정자산⁶⁾
 - 국민계정체계는 무형자산을 무형의 생산자산(Intangible Produced Assets)으로 지식재산생산물(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로 분류*
 - * 2014년 국민계정 개편과 함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항목이 신설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
 - 무형자산(지식재산생산물)은 연구개발과 기타 지식재산생산물로 분류

구분		상세분류
무형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연구개발	• 연구개발(R&D)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광물탐사 및 평가 등

자료 : 한국은행 (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재구성

- (배경) 무형자산(지식재산생산물)은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범용기술의 효율적 이용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⁷⁾
 - OECD 각국에서 무형자산(지식재산생산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00년 이후 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기능

6) 한국은행 (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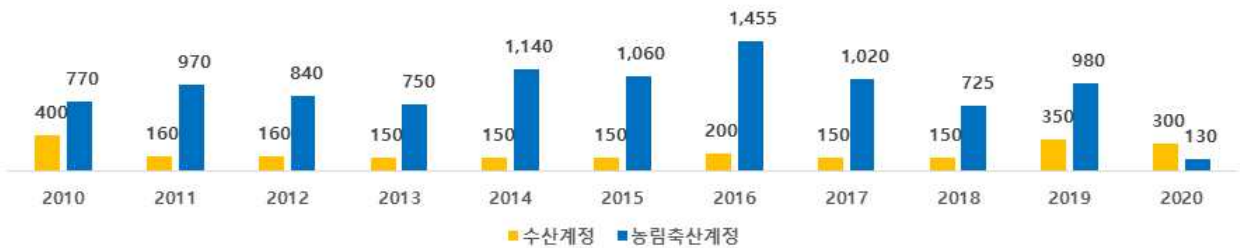
7) 기획재정부 (2020)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현황과 활성화 정책방향

- 무형자산(지식재산생산물) 중 연구개발(R&D) 성과는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조합 결성현황⁸⁾

- 농식품모태펀드는 농식품투자조합 총 75개, 결성총액 12,160억원으로 확대*
 - * (농림축산계정)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총액 9,840억원으로 확대
- 농식품모태펀드 산업별 투자 실적은 주로 6차(1차, 2차 및 3차) 산업 관련 농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4차 산업 관련 농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미흡한 상황

[그림 2-2] 농식품모태펀드 계정별 투자조합 결성현황 (기준 : 2019년 12월 말, 단위 : 억원)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8) 농업 투자 특수성 유지방안 연구, 재구성

○ 농식품모태펀드 산업별 투자 실적 비교⁹⁾

- 식품+식품관련산업(49.9%) > 농업+축산업 관련산업(14.8%) > 수산+수산관련산업(9.4%) > 농업+축산업(8.6%)
-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

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8) 농업 투자 특수성 유지방안 연구

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8) 농업 투자 특수성 유지방안 연구

[표 2-3] 농식품모태펀드 산업별 투자 실적 비교 (기준 : 2018년 5월 말, 단위 : 건)

구분	농업	농업 관련 산업	축산업	축산업 관련 산업	식품 산업	식품산업 관련 산업	수산업	수산업 관련 산업	비농업	합계
일반펀드	5	18	9	23	131	9	16	28	83	322
특수목적 펀드	9	16	18	14	91	8	1	-	-	157
합계	14	34	27	37	222	17	17	28	83	479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8) 농업 투자 특수성 유지방안 연구, 재구성

주석 : (농·축수산업) 농·축수산물 재배·생산업
 (농·축수산 관련 산업) 농·축수산 기자재 관련 산업, 농·축산물 이용 비식품산업
 (식품산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식품 관련 산업) 식품 제조용 기자재 또는 배달산업

[표 2-4] 농식품모태펀드 산업별 투자 실적 비교 (기준 : 2018년 5월 말 단위 : %)

구분	농업	농업 관련 산업	축산업	축산업 관련 산업	식품 산업	식품산업 관련 산업	수산업	수산업 관련 산업	비농업	합계
일반펀드	1.6	5.6	2.8	7.1	40.7	2.8	5.0	8.7	25.8	100.0
특수목적 펀드	5.7	10.2	11.5	8.9	58.0	5.1	0.6	0.0	0.0	100.0
합계	2.9	7.1	5.6	7.7	46.3	3.5	3.5	5.8	17.3	100.0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8) 농업 투자 특수성 유지방안 연구, 재구성

주석 : (농·축수산업) 농·축수산물 재배·생산업
 (농·축수산 관련 산업) 농·축수산 기자재 관련 산업, 농·축산물 이용 비식품산업
 (식품산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식품 관련 산업) 식품 제조용 기자재 또는 배달산업

□ 미래 농업은 “6차 산업에서 10차 산업으로 전환” 성공에 의존

○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의¹⁰⁾

-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 서비스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

○ 미래 농업은 ‘농업의 6차 산업화에서 4차 산업혁명 向 융복합형 신기술 기반 10차 산업화’로 전환 성공에 의존

- (농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존 6차(1차, 2차 및 3차)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들을 융복합하여 농업의 10차(1차, 2차, 3차 및 4차) 산업화 전환 추진 필요

[그림 2-3] 농업의 10차 산업화 개념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6차산업.com), 재구성

10)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6차산업.com)

1.2 법제 환경 분석

□ 농업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법령 비교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20.02.11.) 및 시행(2020.08.23.)으로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예상되나, 농업 분야 및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한 상황
- 벤처투자촉진법과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을 비교 분석 후 농업투자 분야 규정 및 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표 2-5] 벤처투자촉진법 주요내용 요약

제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중심 투자생태계 조성 • 벤처펀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민간자금 유입촉진 •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이원화된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9장 80개 조문으로 구성* * (시행령) 9장 51개 조문, (시행규칙) 8장 28개 조문, (고시) 전문개인투자자 관리규정 등 5개 고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 대상 확대 : 음식업 등 열거식 규제 → 사행산업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만 제외 • 벤처투자 방식 확대 : 투자 정의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법제화*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결정에 따라 선행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투자의무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펀드 운영의 자율성 강화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 도입 •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한국벤처투자 법정 기관화

자료 : 한국벤처투자 (2020) 벤처투자촉진법 설명회 발표자료, 재구성

- 벤처투자촉진법과 농수산물투자조합법 비교 : 목적 및 법체계
 - (벤처투자촉진법)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
 - (농수산물투자조합법) 농림수산물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

[표 2-6] 벤처투자촉진법과 농수산물투자조합법 비교 : 목적 및 법령체계

구분		벤처투자촉진법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정식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물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법령 체계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농림수산물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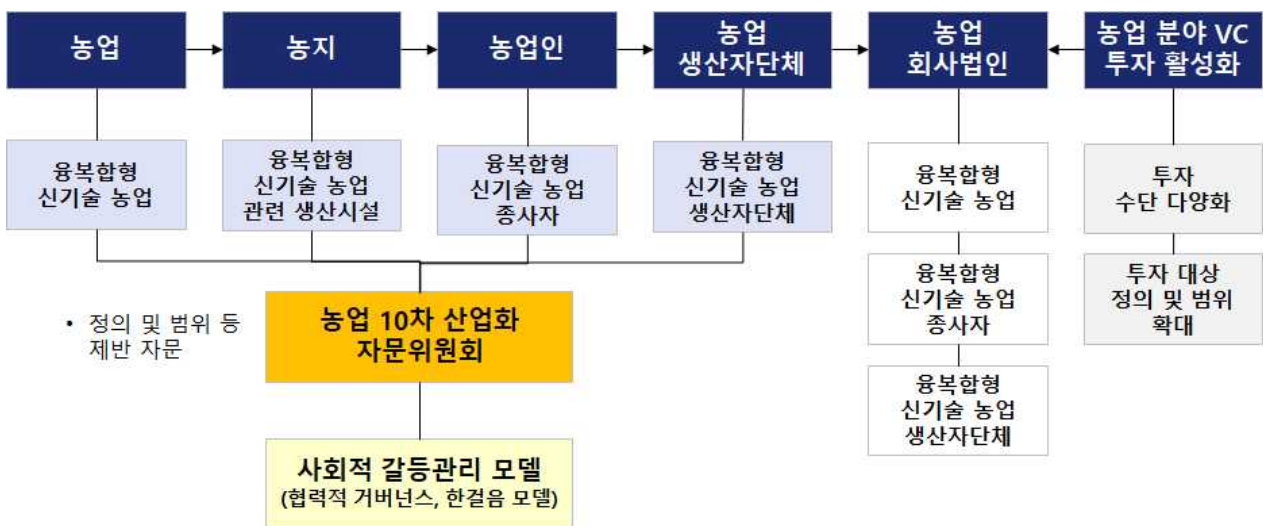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투자촉진법 &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재구성

1.3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 Approach Framework

-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부분의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방법론은 아래와 같음

[그림 2-4] ‘농업의 10차 산업화’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방법론



1] 농업의 정의 및 범위 확대

신산업 분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 규제 현황

- ‘농업의 범위’를 주로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에 한정하거나 더 중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관련 법령

- 농업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의 정의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에서 ‘재배, 축산, 임업’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면서 주로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에 한정하거나 더 중점을 두어 농업의 범위를 정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재구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일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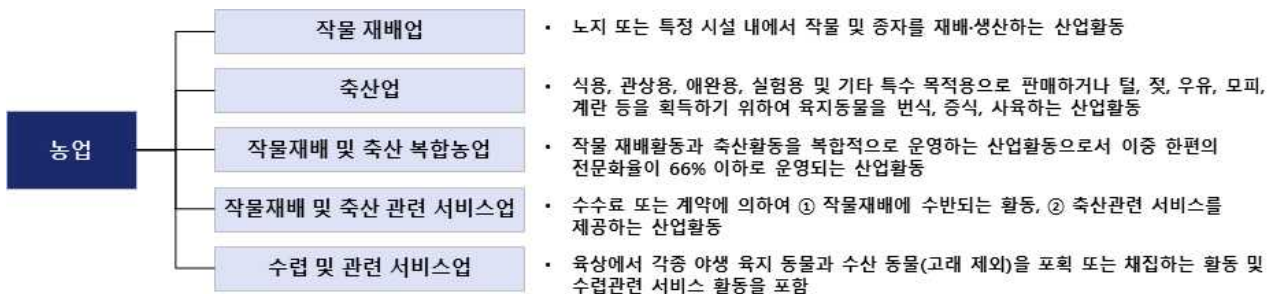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재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농업의 정의 및 범위

-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등’ 1차 생산활동과 관련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어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분류

[그림 2-5]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농업 정의 및 범위



자료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재구성

□ 개선 방안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

* 농업부문 경우 물리적 기술, 디지털 기술 그리고 생물학 기술까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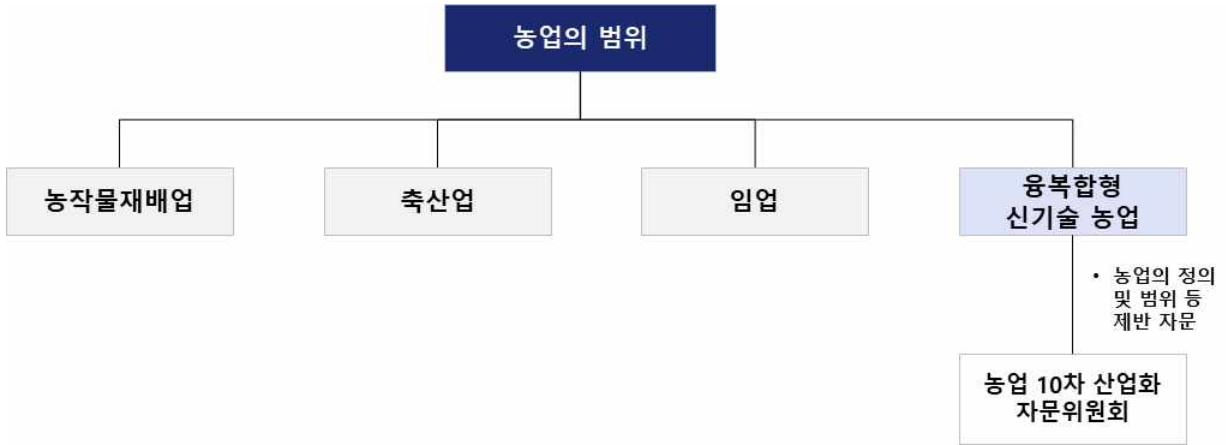
- (예) 토지가 아닌 시설(식물공장)에서 유전자조작식물(GMO)을 활용하여 약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식물분자농업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추가*

* 융복합형 신기술(물리적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등)과 농업을 결합하여 농업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

- ‘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농업의 정의 및 범위 등 농업의 10차 산업화 관련 제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그림 2-6] 농업의 범위 개선(안) 예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재구성

□ 기대 효과

- 농업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② 농지의 정의 및 범위 확대

신산업 분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정의)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 규제 현황

- ‘농지의 범위’를 주로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에 한정하거나 더 중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농지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관련 법령

- 농지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농지법」에서 ‘농지’를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정의
 - 농림축산식품부령(동법 시행규칙)에서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면서 주로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에 한정하거나 더 중점을 두어 농지의 범위를 정의

농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재구성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정의)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정의)

2. 과수·뿌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재구성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재구성

□ 개선 방안

○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 확대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생산시설’ 추가

- ‘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를 구성 및 운영하여 토지 개량시설 및 관련 생산시설 범위 등 농업의 10차 산업화 관련 제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그림 2-7] 토지 개량시설 및 관련 생산시설의 범위 개선(안) 예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재구성

□ 기대 효과

○ 농지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③ 농업인의 정의 및 범위 확대

신산업 분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정의)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 규제 현황

- ‘농업인의 범위’ 를 주로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에 한정하거나 더 중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농업인의 정의와 범위’ 를 확대할 필요

□ 관련 법령

- (농업인의 법적 정의 및 범위)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업인’ 을 농지 또는 시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축산업 종사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등으로 세부적으로 열거하면서 주로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에 한정하거나 더 중점을 두어 ‘농업인’ 의 범위를 정의

농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재구성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재구성

□ 개선 방안

- 농업 외 자본의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입을 현재 보다 더 유연하게 해야할 필요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종사자’ 추가
 - ‘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를 구성 및 운영하여 농업인의 범위 등 농업의 10차 산업화 관련 제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기대 효과

- 농업인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④ 농업 생산자단체의 정의 및 범위 확대

신산업 분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제2019-8호) 				

□ 규제 현황

- ‘생산자단체’를 농업경영에 이미 진입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생산활동 중심 ‘생산자단체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관련 법령

- 농업 생산자단체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농업경영에 이미 진입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한정하여 정의*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조금단체, 축산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등으로 열거하여 한정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의 참여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재구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제201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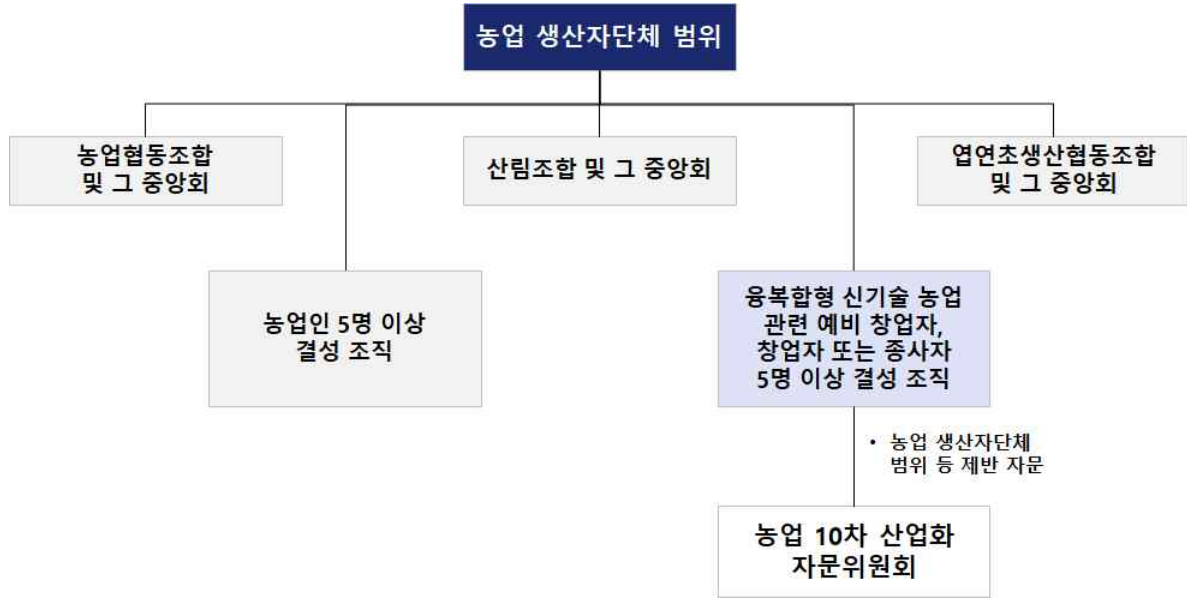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호, 재구성

□ 개선 방안

- 농업 외 자본의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입을 현재 보다 더 유연하게 해야할 필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생산자단체’ 추가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종사자 외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도 포함하여 농업 10차 산업화 활성화 목적 창업 생태계 구축 추진
 - ‘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농업 생산자단체 범위 등 농업의 10차 산업화 관련 제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그림 2-8] 농업 생산자단체 범위 개선(안) 예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재구성

□ 기대 효과

- 농업 생산자단체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5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기준 완화

신산업 분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법률 시행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 농지법 제2조(정의)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규제 현황

-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이미 농업경영에 진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로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입장벽을 개선할 필요

□ 관련 법령

-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만 가능하도록 하고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만하거나, 일반회사의 경우 농업인과 합작으로 자회사 형태로 가능하도록 제한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에게 준하는 세제혜택, 정부 정책지원의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생략

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구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구성

농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재구성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6조(농지 소유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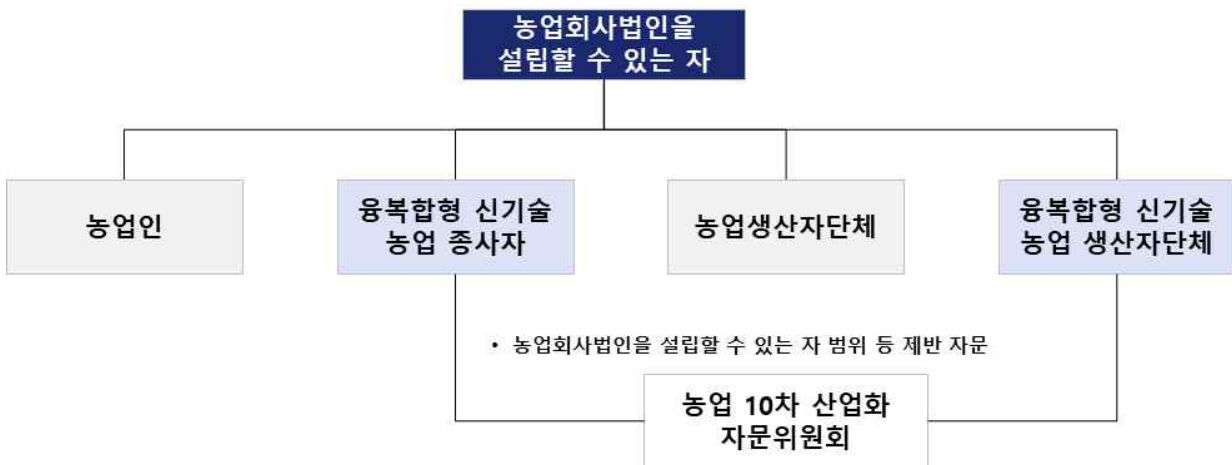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재구성

□ 개선 방안

- 농업 외 자본의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입을 현재 보다 더 유연하게 해야할 필요
 - ‘농업 10차 산업화 자문위원회’ 를 구성 및 운영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범위 등 농업의 10차 산업화 관련 제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그림 2-9]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범위 개선(안) 예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종사자’ 및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생산자단체’ 추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종사자’ 및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생산자단체’ 추가

-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형 ‘농업신기술’ 개발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신기술법인’ 경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 방식 등’의 다양화 확대 필요

□ 기대 효과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⑥ 농업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 : 투자 수단 다양화

신산업 분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법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조(정의) 				

□ 규제 현황

- (벤처투자촉진법) 주식회사의 주식(구주, 신주), 무담보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 가능하여 투자수단이 다양한 편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주식회사 경우 발행주식(신주)만 투자 가능하여 투자수단이 단순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관련 법령

- 벤처투자촉진법과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비교 : 투자 수단
 - (벤처투자촉진법) 주식회사 경우 주식(구주, 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 가능하여 투자수단이 다양
 - * (구주 매출) 투자자(양수인)가 기존 주주(양도인)의 주식을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하여 주주가 되는 경우. 양도인은 구주를 매각하여 기존 투자금을 회수(현금화), 양수인은 구주를 매수하여 지분참여 또는 경영권 인수 목적
 - * (신주 발행)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주식회사 경우 발행한 주식(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 가능하여 투자수단이 단순

벤처투자촉진법과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비교 : 투자 수단

구분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조 (정의)
투자 수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벤처투자촉진법과 농수산물투자조합법 비교 : 투자 수단

구분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2조 (정의)
	<p>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p> <p>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p> <p>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p>	<p>다. 농림수산물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물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p>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투자촉진법 &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구성

□ 개선 방안

- 농업 외 자본의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식(구주),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
 -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2조(정의) 개정 검토 필요
 - 주식회사의 주식(구주, 신주),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포함
- *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결정 에 따라 선행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 기대 효과

-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수단을 다양화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7 농업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 : 투자 대상 정의 및 범위 확대

신산업 분야	농업의 10차 산업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조(정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 규제 현황

- (벤처투자촉진법) '벤처투자'를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 등으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농업·임업·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을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과 제조·가공, 그와 관련된 산업으로 한정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관련 법령

- 벤처투자촉진법과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비교 : 투자 대상
 - (벤처투자촉진법) '벤처투자'를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 등으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농업·임업·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을 농축산물의 1차 생산활동과 제조·가공·유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으로 한정하여 정의

벤처투자촉진법과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비교 : 투자 대상

구분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투자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4.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관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그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2. 임업 관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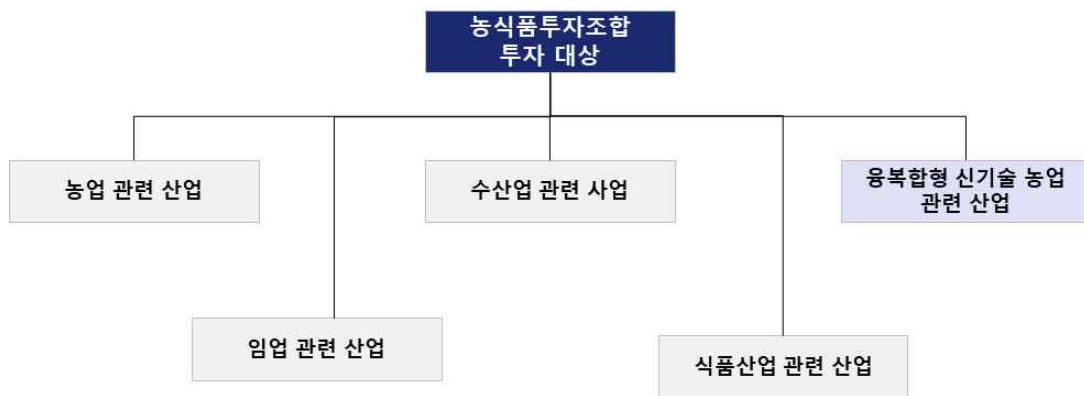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조 (정의)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p>	<p>가. 임산물 유통·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p> <p>나.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p> <p>3. 수산업 관련 산업</p> <p>가.~나. 생략</p> <p>4. 식품산업 관련 산업</p> <p>가.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p> <p>나.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p>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투자촉진법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재구성

□ 개선 방안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현재 보다 확대할 필요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산업’ 추가

[그림 2-10] 농식품투자조합 투자 대상 다양화 개선(안) 예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재구성

□ 기대 효과

-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 대상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의 농업 산업 및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촉진

2.1 산업 환경 분석

□ 건강기능식품 시장 획정

○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보호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구성

○ 건강기능식품 법적 정의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구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 건강식품 및 의약품과의 비교¹¹⁾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 표시*
- *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며,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함

[표 2-7] 일반식품, 건강식품 및 의약품과의 비교

구분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충제	의약외품	일반의약품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 •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동물 질병치료,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사람이나 동물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주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용, 동충하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카스, 레모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활명수 

자료 : IBK투자증권 (2017) 건강기능식품 - 불로장생의 꿈, 재구성

11) 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2.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①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성분 인정 및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품 이라는 내용의 표현’ 표기를 허용

신산업 분야	건강기능식품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법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 범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시사항) 				

□ 규제 현황

- 임상시험성적, 연구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경우, 이에 따라 제조·가공된 의료식품은 기존 식품과 구별되는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

- 의료식품 제조·가공기준의 경우 임상시험성적, 연구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경우에 설정되므로 이에 따라 제조·가공된 의료식품은 기존 식품과 구별되는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가 제안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① ‘영양소기능’, ②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③ ‘생리활성 기능’이 있음
 -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질병의 예방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품 이라는 내용의 표현’ 표기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

-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경우,
 -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인정 필요
 -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품 이라는 내용의 표현’ 표기 허용이 필요

□ 관련 법령

- 기능성 정의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3.-6. 삭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재구성

- 기능성 원료 정의
 -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
 - * 기능성 원료는 원재료, 추출물, 정제물, 합성물, 복합물로 분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 나. 가목의 추출물, 정제물
 - (1) “추출물“이란 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로부터 용매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으로 추출한 물질을 말한다.
 - (2) “정제물“이란 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성분을 분리·정제한 물질을 말한다.
 - 다. 나목 중 정제물의 합성물
 - (1) “합성물“이란 나목의 정제물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복합물
- 2.-7.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3호), 재구성

○ 기능성 원료 구분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① 고시형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② 개별인정형 원료로 분류
-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성(性)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해서는 안됨

고시형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영양소 및 기능성 원료* * 2020.10.16. 기준 영양소 28종, 기능성원료 68종. 총 96종 등재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불필요
개별인정형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2020.10.16. 기준 총 259종) •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3호), 식품안전나라, 재구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원료 등의 인정)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는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재구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기능성 불인정 범위)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 남성의 발기 기능
2. 성행위 시 지속 기능
3. 여성의 질 수축 기능
4. 성적 흥분·최음(催淫)의 유도 기능
5. 그 밖에 성(性)과 관련된 기능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 기능성의 종류 및 내용¹²⁾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① ‘영양소기능’, ②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③ ‘생리활성 기능’이 있음
- (시사점) 기능성의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등 고려 시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

영양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p>[사례]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 등 총 28종</p>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 <p>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p> <p>[사례] * 칼슘 (일일 섭취량 : 210~800 mg) * 비타민 D (일일 섭취량 : 1.5~ 10 ug)</p>
생리활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 기능 <p>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p> <p>[사례] 효과 (2014.07.31. 기준 총 31종)*</p> <p>* 기억력 개선, 혈행개선, 체지방감소, 갱년기여성 건강, 눈건강, 면역기능 등</p>

자료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재구성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규정

- 식품 등의 표시 관련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4. 생략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생략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8-11.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재구성

12)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2. 생략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재구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표시사항)

제3조(표시사항)

①-② 생략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 개선 방안

-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경우,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개정 검토 필요
 -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인정

-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경우,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품 이라는 내용의 표현’ 표기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개정 검토 필요
 -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품 이라는 내용의 표현’ 표기를 허용
 - 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 규제 개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 규제 개선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수렴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 기대 효과

-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경우 ‘질병의 예방 효과’ 기능이 있는 원료·성분 인정 및 표기 통한 소비자 이해도 증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전망

②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벤처기업 요건에 농식품투자조합을 포함

신산업 분야	건강기능식품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법령 단위	법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종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 규제 현황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벤처기업 요건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는 포함되어 있으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한 건강기능식품벤처기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
 - 건강기능식품업은 크게 ①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②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나뉘며,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2-8]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의 종류

구분		세부 종류	
건강 기능 식품	제조업	전문 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벤처 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판매업	일반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유통전문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재구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재구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종류)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구성

○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업종별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 (시사점)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벤처기업 요건에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 11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포함 필요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벤처기업 요건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는 포함되어 있으나,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11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어려움 예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5) 삭제 <2020. 2. 11.>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구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의2. 삭제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③-⑪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재구성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⑤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재구성

□ 개선 방안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벤처기업 요건에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포함하도록 개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개정 검토 필요
 -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11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 기대 효과

- 농식품투자조합 포함 통한 건강기능식품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전망

3.1 산업 환경 분석

□ 고령친화식품 시장 획정

○ 고령친화식품 법적 정의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는 ‘고령친화제품’을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다. 노인요양 서비스
-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재구성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을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로 정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재구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0호)」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을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H 4897) 정의¹³⁾

- (적용범위) 고령자의 식품섭취·소화·흡수·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표 2-9] 고령친화식품 물성기준 각 단계별(1~3단계) 특성 정의 및 종류

물성 기준	1단계 치아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아로 씹어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2단계 잇몸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잇몸으로 으깨어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3단계 혀로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혀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영양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백질, 비타민 A,C,D 등 8종의 영양성분 중 3종 이상이 제품 100g 당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10% 이상 		
표시방법			

자료 : e나라표준인증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H 4897) (2019.12.05.), 재구성

- (인증제 전환) 2017년에 제정된 기존 고령친화식품 표준(KS H 4897)은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는 기준·규격이었으나, 2019년 제3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로 전환*

*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검사,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를 정착, 이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방침

13) e나라표준인증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H 4897) (2019.12.05.)

□ 고령친화식품 시장 현황

○ 고령친화식품 주요 제품 사례¹⁴⁾




- (제품형태) 유동식과 분말식, 점도증진제, 젤리식, 영양죽, 연하식 등이 출시
- 주요 생산기업은 매일유업(메디웰), 정식품(그린비아), 대상웰라이프(뉴케어), 한국메디칼푸드(메디푸드), 한국엔테랄푸드(케어웰) 등*

* 특정 제품만을 생산하는 중소(사회적)기업으로는 연하식 제품을 생산하는 복지유니온(효반)과 레오스푸드(비스코업) 등

[표 2-10] 고령친화식품 주요 제품 사례

구분	제조사	제품명	주요 내용	제품
경구 투여 · 경관 투여 영양 보충	매일유업	메디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식) 영양보충 및 식사대용 음료 - 액상형 총 5종* * 노란색은 경관투여용 	
	정식품	그린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영양소가 배합된 환자용 균형 영양식 • 식욕저하·연하 또는 저작 기능이 저하된 환자, 장기간 유동식이 요구되는 환자, 영양보충이 필요한 환자 등에 적합 • 일반식, 전문식, RTH(Ready to Heat) 	
	대상 웰라이프	뉴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욕저하·연하·저작 기능이 저하된 환자, 또는 유동식이 필요한 환자, 수술 전/후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영양보충제 - 액상형 총 15종 	
연하 용이	한국 엔테랄푸드	연하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도증진제로 기도 흡입 방지와 탈수방지를 돕는 연하곤란 환자용 	
	대상 Well Life	뉴케어 토로미 퍼펙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탄검계 점도증진제로 연하곤란 환자의 안전한 수분섭취를 도와주는 제품 • 원하는 점도와 제품 용량에 따라 물, 차, 주스 등 여러가지 식품에 첨가하면 점도가 형성 	
	복지유니온 (사회적 기업)	효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키거나 씹기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죽 형태의 영양균형식 	

1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고령친화식품 시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고령자 건강증진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구분	제조사	제품명	주요 내용	제품
영양 보충	한국 메디칼푸드	무스웰 고단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백질이 함유된 무스 형태의 고농축 균형 영양식 (환자, 고령자, 성장기 청소년 등) 	
	이마트	하루한번 건강한 오곡 파우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들의 하루 영양소를 고려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분말 형태 (젤리, 파우치, 한끼식사 대용 죽 등 형태) 	
	정식품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층에 필요한 칼슘이나 면역력 강화에 좋은 영양성분으로 구성된 건강음료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고령친화식품 시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고령자 건강증진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재구성

□ 해외 유사 사례 : 일본 개호식품 산업 동향¹⁵⁾

○ 개호식품(介護食品)^{*} 정의 및 범위

- (정의) 고령, 질병 등으로 섭식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섭식기능에 맞게 안전성 측면에서 물성을 조정하고 미각, 시각과 함께 영양도 고려한 식품

* 개호식품(介護食品) : 개호(介護)란 곁에서 돌봐준다는 뜻으로, 체력적으로 약해진 고령층을 고려한 식품을 의미

- (범위) 주로 연하식, 저작곤란자식, 농후유동식 3종류로 분류^{*}

* 특성에 따라 수분보급형 식품(수분 보급 젤리), 영양보급형 식품(칼로리 섭취, 성분 강화 목적), 농후유동식(식사 대체), 저작·연하 보조식품(점도 조정 식품, 고형화 보조 식품)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기도 함

연하식 (嚥下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하기능 장애로 식사량이 감소해 영양실조나 탈수증상 등을 보이는 고령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걸쭉한 점성을 가진 조정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저트 식품, 수분 보급 젤리를 포함
저작곤란자식 (咀嚼困難者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잘게 썬 식품과 혼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쭉한 조정식품, 디저트 식품, 수분 보급 젤리, 겔화제

1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고령친화식품 시장

유동식 (流動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대체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균형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종합영양식품(질은 유동식 등)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형, 반고형, 고형, 분말형
----------------------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고령친화식품 시장, 재구성

○ 개호식품(介護食品) 인증 체계

- 2014년 일본 농림수산성은 개호식품을 ‘스마일케어식(Smile Care Foods)’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7가지 유형으로 분류
- 선택의 어려움, 비싼 가격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개호식품에서 스마일케어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저영양 개호 예방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

[표 2-11] 일본 스마일케어식(Smile Care Foods) 분류 체계

물성 기준	표시방법	형태	씹는 힘	삼키는 힘
개호 예방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상태 양호하나 향후 개호 예방 배려 위한 식품 	문제 없음	문제 없음
약한 힘으로 부술 수 있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운 두부 정도의 경도 • 부서지기 쉬운 정도 식품으로 약한 힘으로도 소화 가능한 형태로 부술 수 있음 	다소 약함	다소 약함
잇몸으로 부술 수 있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두부 정도의 경도 • 부서지기 쉬운 정도 식품으로 잇몸으로도 소화 가능한 형태로 부술 수 있음 	약함	다소 약함
혀로 부술 수 있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두부와 같이 원형은 그대로이지만 혀로 쉽게 부수어 소화할 수 있는 식품 	매우 약함	약함
반죽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것 • 입안에서 쉽게 넘길 수 있는 식품 	매우 약함	매우 약함
무스 형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젤리, 푸딩, 무스 형태의 것 • 소량을 숟가락으로 떠서 소화할 수 있는 식품 	매우 약함	매우 약함
젤리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얇은 슬라이스 형태 식품 	매우 약함	매우 약함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고령친화식품 시장, 재구성

3.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1]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구체화 필요

신산업 분야	고령친화식품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정책 제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20.0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 규제 현황

○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구체화 필요성

- 고령친화식품의 품목 범위를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영유아 및 임산·수유부용 식품 제외)까지 포함하여 분류¹⁶⁾

* 식품 : 두부류 및 묵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인삼/홍삼제품(인삼/홍삼음료, 차, 당절임) 등

- 고령친화식품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등과 별도 구분되지 않고, 상호 혼재된 개념으로 제품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추세*

* (예) ○식품 마일드케어 검은참깨



- (제품 설명) 영양보충이 필요한 일반인*, 환자** 및 노약자***를 위한 환자용 균형영양식

* 일반인을 위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식품

- (용도) 식사를 거르는 직장인의 영양보충용, 저산사식이 요구되는 환자, 식용저하나 저작·연하 기능이 약한 환자, 유동식에서 정상식으로 전환중인 환자

자료 : 회사 홈페이지, 재구성

- 소비자의 제품 구분 및 이해를 위해 고령친화식품을 별도 식품유형으로 분류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

1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고령친화식품 시장

□ 관련 법령

- 고령친화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¹⁷⁾
 -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개정 배경

-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개선 필요
- 고령친화식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고, 사례가 잘 걸리는 고령자의 식품 섭취편의를 위해 점도 규격 신설
- 섭취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 관리로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 (정의)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함
- 고령친화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규격(안)

제조·가공 기준	<p>(1)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p> <p>(2)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p> <p>(3)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p> <p>(4)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하여야 한다.</p> <p>①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p> <p>②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²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p>
규격	<p>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p> <p>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p> <p>③ 경도 : 500,000 N/m²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p> <p>④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² 이하의 액상제품에 한함)</p>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6.29), 재구성

17) 고령친화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20.06.29)

□ 개선 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경우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분 및 이해를 위한 별도 식품유형으로 분류하고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식품공전 중 특수용도식품 식품유형별 분류표 개선 권고(안) 예시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10.특수용도식품	10-1.조제유류	영아용조제유
		성장기용조제유
	10-2.영아용조제식	영아용조제식
	10-3.성장기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10-4.영·유아용이유식	영·유아용이유식
	10-5.특수의료용도등식품	환자용식품
		- 환자용균형영양식
		- 당뇨환자용식품
		- 신장질환자용식품
	-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식품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10-7.체중조절용조제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10-8.임산·수유부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10-9.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식품(고령자용조제식품)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재구성

□ 기대 효과




-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품 구분 및 이해 증가를 통한 소비 활성화

②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다양화 필요

신산업 분야	고령친화식품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정책 제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20.0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 규제 현황

- 현행 고령친화식품은 물성기준 각 단계별(1~3단계) 특성을 정의하고 분류
 - (물성기준, 1종류) 1단계 치아 섭취, 2단계 잇몸 섭취, 3단계 혀로 섭취
 - 소비자 선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다양화 필요

고령친화식품 분류체계	1단계 치아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아로 씹어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2단계 잇몸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잇몸으로 으깨어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3단계 혀로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혀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자료 : e나라표준인증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H 4897) (2019.12.0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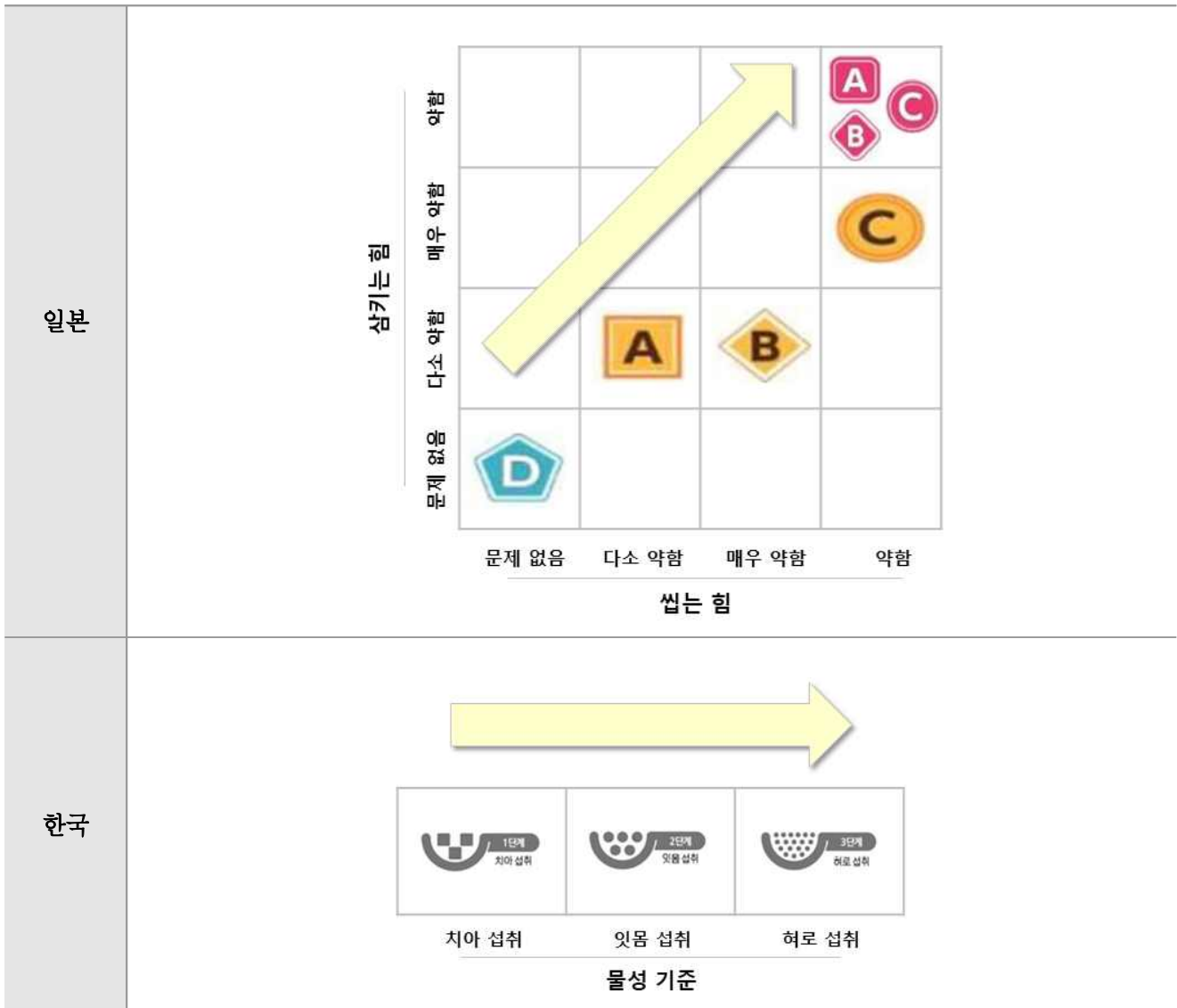
□ 관련 법령

- 고령친화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20.06.29)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 개선 방안

-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친화식품 분류체계를 현행 물성기준 3단계에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일본 물성기준, 2종류) 씹는 힘*, 삼키는 힘**
 - * (씹는 힘, 4단계) 1단계 문제 없음, 2단계 다소 약함, 3단계 매우 약함, 4단계 약함
 - ** (삼키는 힘, 4단계) 1단계 문제 없음, 2단계 다소 약함, 3단계 매우 약함, 4단계 약함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그림 2-11]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사례 비교 : 일본 vs. 한국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고령친화식품 시장, 재구성

□ 기대 효과

-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품 구분 및 이해 증가를 통한 소비 활성화

4.1 산업 환경 분석

□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20년 9월)¹⁸⁾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기술 및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극대화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 대체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육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자원고갈 및 고령화로 대체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산업규모를 9,403억원('19)에서 3.6조원('30)으로(연평균 13.1%↑), 고용규모를 1.2천명('19)에서 4.4천명('30)으로(연평균 12.5%↑) 확대 					
핵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의 경우 식품 성분 및 유전정보 데이터 등이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육의 경우 소재탐색 및 가공·배양기술이 중요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등 새로운 식품유형 확립으로 산업 활성화 유인 필요 					
	원료	제품과정				생산
		소재탐색	제품설계	시험평가	제형화	
식물, 곤충, 해조류, 미생물	맞춤형소재 소재적성DB	소재특성 확립	효능검증 안전성평가	제형가공 기술	대체·배양 육, 메디푸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재구성

- 식품산업과 신가공기술 등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 강화
 - 기능성 신소재(난소화성 등) 및 신가공기술(물성조절 등), 맞춤형 식이 설계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복합 제조 공정 개발 등 중점 투자(농식품부, '21~)
 - 바이오촉매 기술(효소+광에너지기술) 등 고부가 식품소재생산기술 개발투자 확대 (사업 기획중, '22~, 환경부)
- 민간의 진입 촉진을 위해 식품영양성분·효능*에 대한 공공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산업계·공공급식 등에 개방('20~, 농진청 등)
 - * 식품성분·효능정보 : ('20) 24만건 → ('22) 30만건(「국가표준식품성분DB 구축」('18~'22, 농진청) 등

18)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를 질환별·섭취대상군별로 세분화하여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표준화된 제조기준 마련('20~'21, 식약처)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시장 확정¹⁹⁾

○ 특수의료용도식품 주요 개정 내용²⁰⁾

- 식품공전 기준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특수용도식품의 하위 품목인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에 포함되어 분류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식품유형은 식품공전이 개정('18년 1월 1일)되면서 새로운 유형분류로 적용*

* 개정 이전에는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개정 과정을 통해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 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 열량및영양공급용의료용도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

** 6개 식품유형을 환자용식품 1개로 통합한 이유는 주요 질환 이외에 다양한 질환별 환자용식품이 제조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위함

[표 2-12] 특수의료용도식품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개정 후 ('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분류	19. 특수용도식품	10. 특수용도식품
중분류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0-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식품 유형	(1) 환자용균형영양식 (2) 당뇨환자용식품 (3) 신장질환자용식품 (4)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5) 연하곤란자용점도증진식품 (6) 열량및영양공급용의료용도식품 (7)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8)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9)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 환자용식품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3)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4)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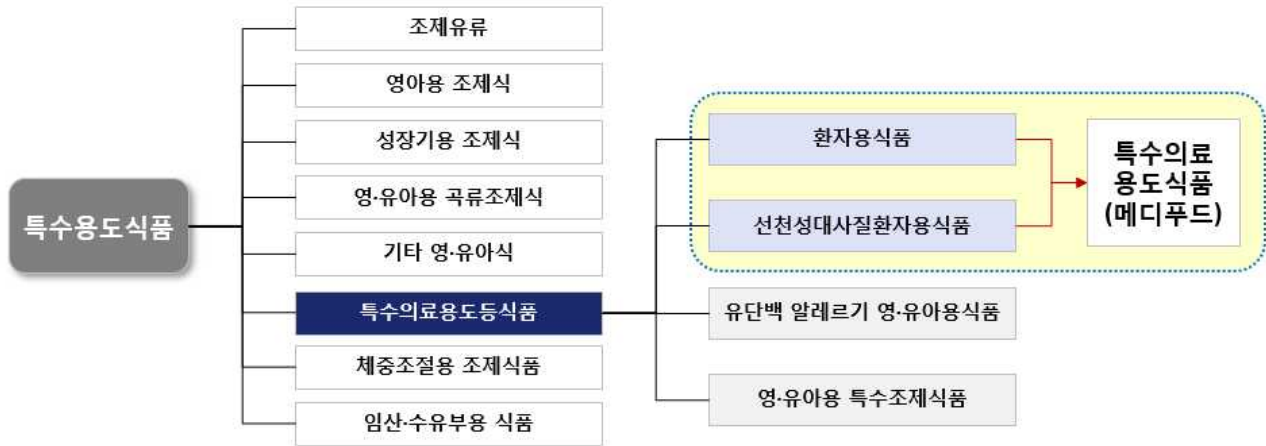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시장, 재구성

- ‘환자용식품과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을 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분류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6.29)

2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시장

[그림 2-12] 식품공전 기준 특수용도식품 식품유형 분류 체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재구성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식품공전 기준 식품유형 분류 개편 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환자 대상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증가, 이에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여 독립된 식품군으로 개편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개편 방향

- 기존 환자용식품은 식품유형을 세분화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으로 재분류
-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상식사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분류와 기준·규격 신설
-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환자용 식품 개발·공급 기반과 맞춤 관리체계 구축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6.29), 재구성

-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20.06.29)
 -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급식*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함
 - * (경구급식) 입을 통해 체내로 음식물, 물, 약물을 받아들이는 방법
 - ** (경관급식) 위장관의 소화·흡수기능은 정상이지만 구강으로 영양섭취 하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관(Tube)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

[표 2-13]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특수 의료 용도 식품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병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6.29), 재구성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정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성분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유동식 또는 물이나 음식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분말 형태의 것을 말함

[표 2-14]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분류 체계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질병, 수술 등의 사유로 저하된 체력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함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뇨병 환자 또는 고혈당 환자 등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당질, 포화지방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함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장질환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함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질환으로 인해 영양성분의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거나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사용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함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환으로 인한 과대사 또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열량 및 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을 말함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섭취가 어려운 연하곤란자의 기도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제품을 말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6.29), 재구성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정의) 선천적·후천적 질병, 수술 등 일시적 또는 만성적 임상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과학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유동식 또는 물이나 음식과 혼합하여 유동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분말 형태의 것을 말함

[표 2-15]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분류 체계

<p>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결함이 있어 물질대사효소의 불능 또는 물질의 이송결함 등으로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환자를 위하여,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함
<p>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아 등 정상적인 영·유아와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영·유아 또는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대신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조제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p>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질환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6.29), 재구성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정의) 영양성분 섭취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조리된 식품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조합하여 도시락 또는 식단 형태로 구성한 것,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조리법과 함께 동봉한 것 또는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함

[표 2-16] 식단형 영양조제식품 분류 체계

<p>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 환자 등 당질 섭취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당질, 포화지방 등의 섭취를 관리하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함
<p>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병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칼륨, 인,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6.29), 재구성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시장 현황²¹⁾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주요 제품 사례

- 주요 제품 종류는 경구용, 경관용, 경구·경관 모두 섭취 가능 제품 등
- 특수의료용도식품 주요 제조업체는 ‘대상웰라이프’, ‘엠디웰’, ‘정식품’, ‘한국메디칼푸드’ 등

[표 2-17]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주요 제품 사례

구분	(제조사) 제품명	경구	경관	제품
환자용 식품	환자용균형영양식 (엠디웰) 메디웰 구수한맛 (대상웰라이프) 완전균형 영양식 뉴케어	●		
	당뇨환자용식품 (정식품) 그린비아 플러스 케어 당뇨식 (엠디웰) 메디웰 당뇨식	●	●	
	신장질환환자용식품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케이지 (투석용)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케이지 플러스 (비투석용)	●		
	장질환환자용가수분해식품 (한국메디칼푸드) 모노웰	●		
선천성대사질환환자용식품	(한독) 네오케이트 (CJ제일제당) 햇반 저단백밥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재구성

- (판매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 따르면 2017년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억원 수준으로 2013년 390억 원 수준에서 약 205억원(52.3%) 성장
 - (환자용식품) 2013년 38,608백만원 대비 2017년 59,241백만원 → 20,633백만원 증가, 53.4% 증가
 - (선천성대사질환환자용식품) 2013년 632백만원 대비 2017년 513백만원 → 119백만원 감소, 18.8% 감소

2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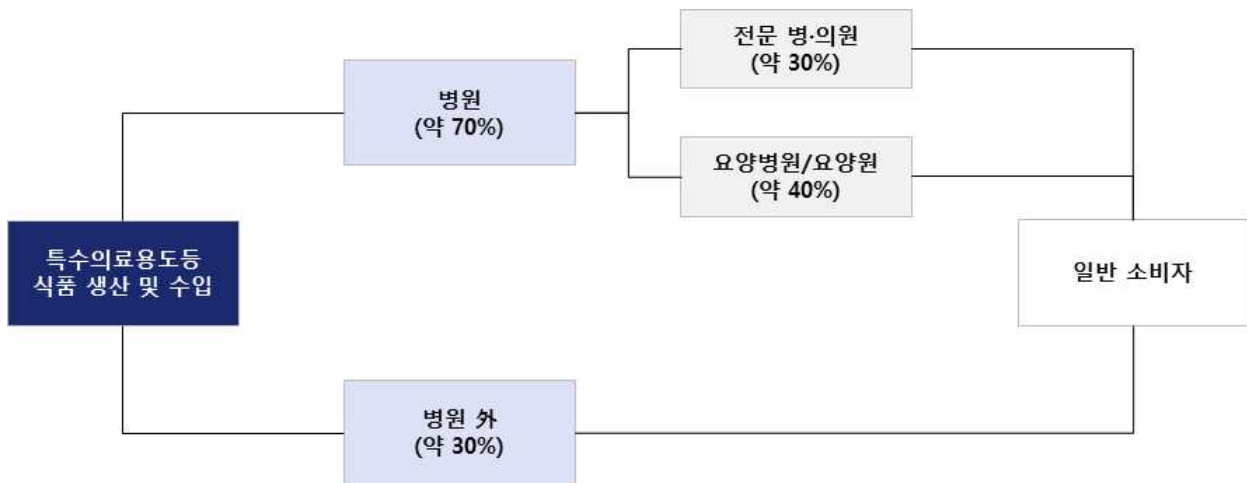
[표 2-18]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국내 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액	증가율
환자용식품	38,608	43,653	47,225	49,558	59,241	20,633	53.4%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632	482	468	511	513	△119	△18.8%
특수의료용도식품	39,240	44,135	47,693	50,069	59,754	20,514	52.3%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재구성

- (유통 현황) 병원 약 70%, 인터넷 및 약국 등 병원 외 약 30% 차지
 - (병원 중심 유통) 병원 및 병원 외 유통채널 등에서 경관용과 경구용 제품 모두 유통되고 있지만, 병원에서 특히 ‘경관용’ 제품의 유통 비중이 높고, 병원 외에서는 ‘경구용’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특징
 - (경관용 중심 유통) 경관용 제품 차지 비중이 70~80%, 경구용 제품 차지 비중이 20~30%로 추정

[그림 2-13]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유통 구조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시장, 재구성

4.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①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허용 필요

신산업 분야	특수의료용도식품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시행규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 규제 현황

-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은 건강기능식품을 표시할 수 없는 상황
 - 임상시험성적, 연구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제조·가공된 특수의료용도식품은 기존 식품과 구별되는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련 개선 건의 등

- 의료식품 제조·가공기준의 경우 임상시험성적, 연구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경우에 설정되므로 이에 따라 제조·가공된 의료식품은 기존 식품과 구별되는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가 제안
 - 생략 -
- 의료식품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질환 중 시장수요가 크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립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질환과 관련된 새로운 제조·가공기준을 추가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질환별 의료식품에 대한 시장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질환 이외의 질환을 대상으로 한 의료식품의 경우 식약처 심사 또는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증과정을 거치면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생략 -
- 의료식품에 관련 질환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상적 유효성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련된 제조·가공기준을 따르거나 별도의 식약처 검증 등을 거친 제품에 한하여 관련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

□ 관련 법령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표기 관련 규정

- (식품 정의)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말함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재구성

- 식품 등의 표시 관련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6. 생략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8-11.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재구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2.-3.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재구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표시방법)

제5조(표시방법)

①-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양표시)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재구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영양표시)

제6조(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④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표시 관련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표시 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유통기한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 아) 용기·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주요 내용	
	타)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기타 표시 사항	공통사항 (조제유류 제외)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 성분은 “영양성분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성분과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영·유아(0~36개월) 대상 제품은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식품 제외)
	조제유류	생략
	영아용 조제식	생략
	성장기용 조제식	생략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생략
	기타 영·유아식	생략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가) 제품특성별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치료효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생략
	임산·수유부용 식품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T, 재구성

□ 개선 방안

-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련된 제조·가공기준을 따르거나 별도의 식약처 검증 등을 거친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표시 필요
 - * (과학적 근거) 임상시험성적, 연구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개정 검토 필요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 기대 효과

- 건강기능식품 표시 허용 통한 소비자의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이해도 증가 및 오남용 방지

5.1 산업 환경 분석

□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20년 9월)²²⁾

- (대체식품) 기술 고도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신시장 선점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 대체식품·메디푸드					
육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자원고갈 및 고령화로 대체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산업규모를 9,403억원('19)에서 3.6조원('30)으로(연평균 13.1%↑), 고용규모를 1.2천명('19)에서 4.4천명('30)으로(연평균 12.5%↑) 확대 				
핵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육의 경우 소재탐색 및 가공·배양기술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푸드의 경우 식품 성분 및 유전정보 데이터 등이 핵심 - 대체육 등 새로운 식품유형 확립으로 산업 활성화 유인 필요 				
	원료	제품과정			생산
		소재탐색	제품설계	시험평가	
식물, 곤충, 해조류, 미생물	맞춤형소재 소재적성DB	소재특성 확립	효능검증 안전성평가	제형가공 기술	대체·배양 육 메디푸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재구성

- 대체식품 제조를 위한 최적원료 발굴 및 함량 증진, 대체식품 제조의 핵심기술인 육류모사가공기술(식물성 대체육), 세포배양기술(배양육) 등 R&D 중점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21~'25, 농식품부), 「대체간편식품소재개발」(사업 기획중, '22~'30, 농진청), 「미래유망특수식품개발」(사업 기획중, '22~'26, 해수부)
-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 기준 마련
 - 대체식품 안전관리기준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마련('20~'25)

22)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① 식물성 대체육

□ 식물성 대체육 시장 확정²³⁾

○ 대체육 정의

-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뜻함
- (대체육) 식육을 대체한 식품으로, 현재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배양육 등으로 분류

○ 식물성 대체육 정의 및 원료

- (정의) 식물성 대체육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고기, 계란 등 축산 식품과 비슷한 형태와 맛이 나도록 제조한 식품(또는 소재)으로 식물성 고기, 식물성 계란, 식물성 유제품 및 음료 등이 있음
- (원료) 밀 글루텐 및 대두단백질이 식물성 대체육의 주요 원료이며 그 외에도 완두콩, 콩, 깨, 땅콩, 목화씨, 쌀, 곰팡이 등을 이용하고 있음

[표 2-19] 주요 식물성 단백질 및 원료

식물성 단백질	원료
베타 콘글리시닌	대두
글리시닌, 비실린	콩
레구민,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텔린	씨앗 기름
글루텐	밀, 호밀, 보리
마이코프로테인	곰팡이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9) 세계 대체육류 개발 동향, 재구성

□ 식물성 대체육 산업 동향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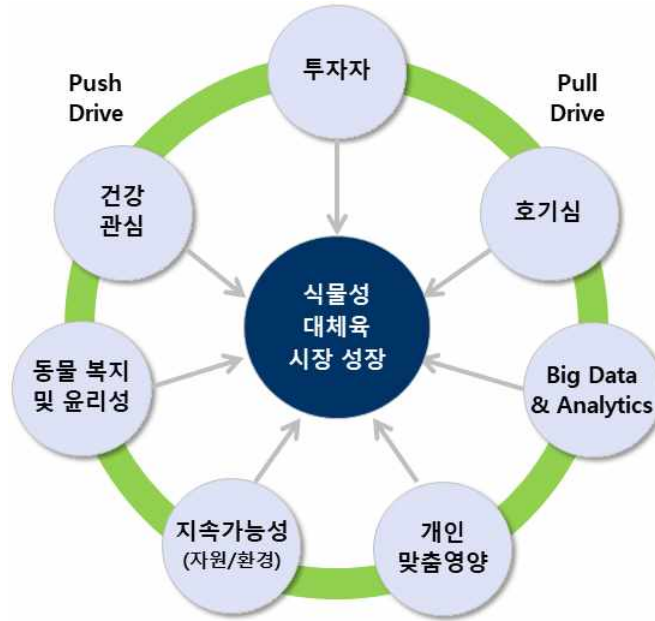
○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건강을 고려한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소비가 크게 증가

23) 농촌경제연구원 (2019) 세계 대체육류 개발 동향

24) 농촌경제연구원 (2020)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그림 2-14] 식물성 대체육 성장 요인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20)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재구성

-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는 2016년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2-20]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 추정 (단위 : 백만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6	CAGR(%)
47.6	58.0	70.1	140.5	216.0	15.7

자료 : Statistics Market Research Consulting, 농촌경제연구원 (2020)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재구성

○ 국내 식물성 대체육 기술수준

- 국내는 한정적인 단백질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육류의 조직감·맛·풍미 등 육류 특성 모방 기술 및 다양한 제품이 부족한 실정*
 - *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150여 종의 식물체 중 약 2% 수준만 단백질 소재로 사용(한국비건인증원)
- 최근 국내 바이오기업 중심으로 식물성 대체육의 원천기술 특허 출원 사례가 증가 추세*
 - * 생물학적 공정을 통한 햄 복합체 제조기술 및 콩 뿌리혹의 육즙 모사 성분 추출기술 등을 미국 특허 출원

○ 글로벌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

- 글로벌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는 2016년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2-21] 글로벌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 추정 (단위 : 백만달러)

2017	2018	2019	2025	CAGR(%)
7,890.8	8,395.8	8,962.5	14,319.8	8.1

자료 : Statistics Market Research Consulting, 농촌경제연구원 (2020)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재구성

□ 해외 유사 사례²⁵⁾

○ 전통적인 동물성 식품 용어 사용 규제 추세

- 기존 식품업계의 반대로 식물성 대체육 및 계란에 육류/계란과 관련된 음식을 상징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추세

[표 2-22] 식물성 대체육 관련 전통적인 동물성 식품 용어 사용 규제 사례

미국 사례	<p>[미주리주 육류광고법 개정으로 ‘고기’ 용어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육류 제품에 고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미주리주는 2018년 8월 28일부터 식품회사들이 가축을 도축하여 생산한 고기가 아닌 상품에 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육류광고법’을 시행 • 실제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대체육류에는 그 표면에 소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규제
	<p>[식물성 계란(마요네즈) 용어와 라벨링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햄프턴 크릭(저스트 이전 기업명)의 식물성 계란은 2014년 미국에서 대형 유통업체 홀푸드에 유통 및 판매를 시작하면서 미국달걀협회의 견제와 논란이 지속되던 중 2014년 10월 31일 마요네즈를 생산하는 국제 식품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가 햄프턴 크릭의 마요네즈 제품 ‘저스트 마요(Just Mayo)’가 FDA의 식품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
EU 사례	<p>[식물성 제품에 전통적인 동물성식품 용어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는 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 버거, 스테이크, 소시지 등 육류와 관련된 음식을 상징하는 명칭을 식물성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유럽연합(EU) 규정 17조 1169/2011)을 마련 • 이로 인해 유럽 식품업계는 향후 식물성 버거, 식물성 소시지, 두부 스테이크, 콩 돈가스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대신 채식 튜브, 채식 디스크, 콩 슬라이스 등의 용어를 사용할 예정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9) 세계 대체육류 개발 동향, 재구성

25) 농촌경제연구원 (2019) 세계 대체육류 개발 동향

2 배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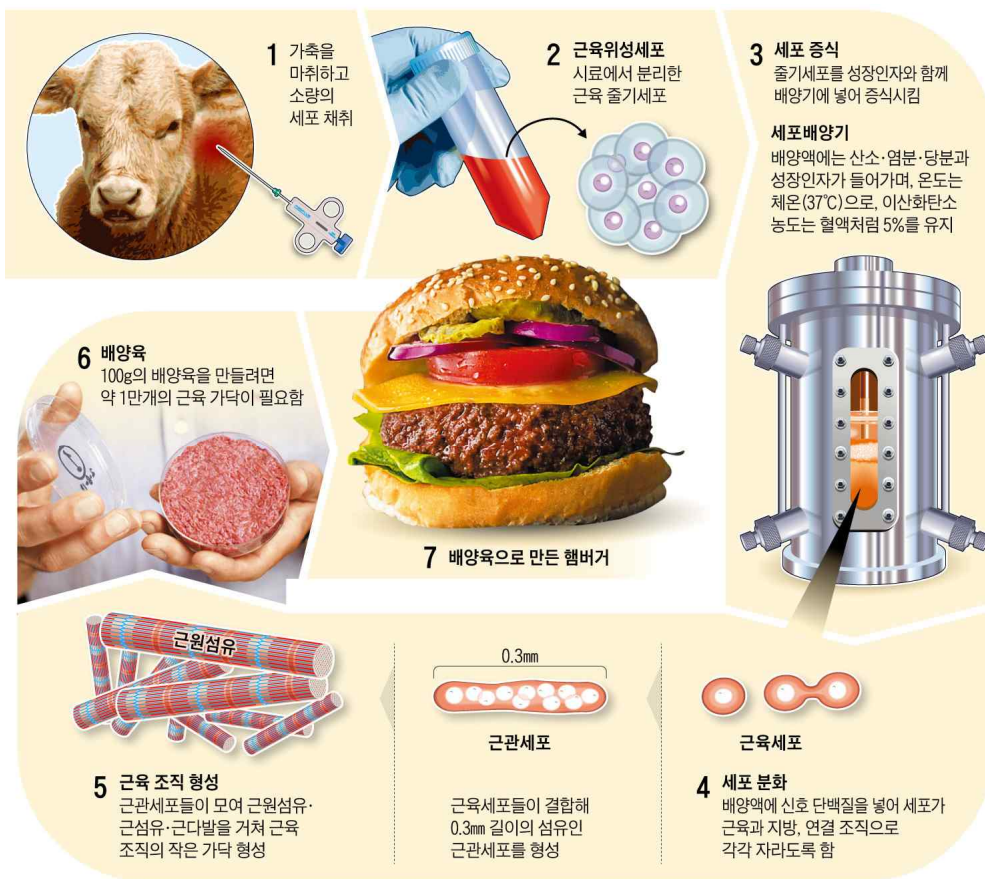
□ 배양육 시장 획정²⁶⁾

○ 배양육 정의

- 배양육은 살아 있는 동물세포에서 얻은 줄기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 실내에서 키워내는 식용 고기를 의미*

* 배양육의 맛은 근세포, 지방세포, 섬유아세포로 조절 가능

[그림 2-15] 배양육 제조 프로세스



자료 : 조선일보 (2019.03.14.)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肉食의 새 길을 열다“, 채구성

○ 식량자원으로 배양육의 가치

- 배양육 생산은 동물조직 배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과정 중 가축 사육을 배제하여 동물복지·윤리 및 환경문제 등 최소화 가능

26) 농촌경제연구원 (2019) 세계 대체육류 개발 동향

- 또한 모든 공정들을 무균환경에서 실시할 뿐만 아니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등 기존 식품품질 관리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해 외부 오염이나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식중독 등 여러 질병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 전망

□ 배양육 산업 동향²⁷⁾

- 해외 배양육은 2013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대학 마크 포스트 박사가 배양육을 이용하여 햄버거 패티를 만드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생산비가 높아 제품 출시가 안 되고 있음
 - 배양육을 이용한 햄버거 패티 생산 비용(100g당 가격)
 - : (2013) 37만 5천 달러 → (2017) 1,986달러 → (2021) 10달러 목표
 - 배양육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형 배양장비 개발이 필요*
 - * 줄기세포가 고기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배양육 개발의 관건이며, 줄기세포가 자라는 그릇인 스캐폴드에 줄기세포를 채운 뒤 세포배양액에 담가 고기로 배양
 - 최근 배양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글로벌 주요 축산기업은 배양육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
- 배양육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은 미국 외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에 소재**
 - * (미국) Memphis Meats, Finless Foods, Just, (네덜란드) Mosameat (이스라엘) SuperMeat, Future Meat Technologies, (일본) Integriculture 등
 - ** 배양육 주요 기업 대부분은 육류 배양을 시도하고 있으며, Finless Foods(미국)는 참치 배양을 연구
- 배양육 안전성 등 소비자 수용성 논란과 관리감독 관할권 문제 해결 필요
 - 세포배양방식 육류 생산에서 요구되는 안전 조건 및 지침이 없으며, 관리감독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배양육은 동물세포에서 근육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배양한 식품으로 세포배양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을 쓰고 있어 GMO 및 안전성 논란이 있음
 - 배양육 경우 비동물성 소재인 녹조류, 버섯 추출물, 식물유래 단백질로 세포 배양액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 중이나, 대부분 세포 배양과정에 소 태아혈청을 이용하고 있음

27) 농촌경제연구원 (2020)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5.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식물성 대체육)

1] 식물성 대체육 관련 표기 개선 및 통계자료 정비 필요

신산업 분야	대체식품 (식물성 대체육)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고시·훈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시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 규제 현황

-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으로 식물성 고기·소스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 예상
 - 현재 국내 시장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 기존 동물성 제품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아직 없지만,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식물성 대체육을 ‘식품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고, ‘제품명 및 안내문’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 필요

식물성 고기 시장 확대 ... 축산업계 대응 ‘촉각’

- (생략)
- 지금까지 축산업계는 맛과 향·식감을 완벽히 흉내낸 식물성 고기가 우리 몸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물의 영양성분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 하지만 채식을 하며 ‘안티 축산’을 외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식물성 고기가 시장을 넓혀 나간다면 축산업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식물성 고기 시장에 맞서 축산업계가 대응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 : 축산신문 (2020.01.29) “식물성 고기 시장 확대 ... 축산업계 대응 ‘촉각’“, 재구성

- 관련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식품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통계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

□ 관련 법령

○ 식품 및 축산물 정의 관련 규정

- (식품 정의)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말함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재구성

- (축산물 정의)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략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재구성

○ 식품 및 축산물 표시 관련 규정

- 식품 등의 표시 관련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5. 생략

6.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11.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재구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표시사항)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 (식품공전) 식품유형 분류 체계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대분류 기준]

- 1.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2.빙과류, 3.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4.당류, 5.잼류, 6.두부류 또는 묵류,
- 7.식용유지류, 8.면류, 9.음료류, 10.특수용도식품, 11.장류, 12.조미식품, 13.절임류 또는 조림류, 14.주류,
- 15.농산가공식품류, 16.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7.알가공품류, 18.유가공품, 19.수산가공식품류,
- 20.동물성가공식품류, 21.벌꿀 및 화분가공품, 22.즉석식품류, 23.기타식품류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재구성

□ 개선 방안

- 식물성 대체육을 기존 축산물(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과 별도 ‘식품유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되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명 및 안내문’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은 필요
 - (유사 사례) 계맛살의 뜻 : 계살의 맛이 나도록 가공하여 만든 식품
 - (개선 사례) 식물성 소고기, 식물성 돼지고기, 식물성 닭고기, 식물성 계란, 식물성 마요네즈, 식물성 버터 등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

-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개정 검토 필요
 - ‘24.대체식품류 및 24-1. 식물성 대체육류’ 분류 추가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그림 2-16] 식물성 대체육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개선(안) 예시



[표 2-23] 식물성 대체육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개선(안) 예시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1.-23. 생략	- 생략 -	- 생략 -
24.대체식품류	24-1. 식물성 대체육류	식물성 식육가공품
		식물성 알가공품
		식물성 유가공품
		식물성 수산가공품
		기타 식물성 대체육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재구성

□ 기대 효과

- 식물성 대체육을 ‘식품유형’ 으로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고, ‘제품명 및 안내문’ 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을 사전 예방

5.3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배양육)

1 ‘축산업’과 ‘축산물’의 정의 및 범위 확장 필요

신산업 분야	대체식품 (배양육)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법률 시행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 축산법 제2조(정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규제 현황

- ‘축산업’의 정의에 ‘배양육 제조업’, ‘축산물’의 정의에 ‘배양육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배양육 경우 ‘축산업’ 및 ‘축산물’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

□ 관련 법령

- 축산업 및 축산물 정의 관련 규정
 - (축산업 정의)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을 말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재구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일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재구성

축산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3. 생략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8의2-10의2.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재구성

- (축산물 정의)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함

축산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 4.-10의2.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재구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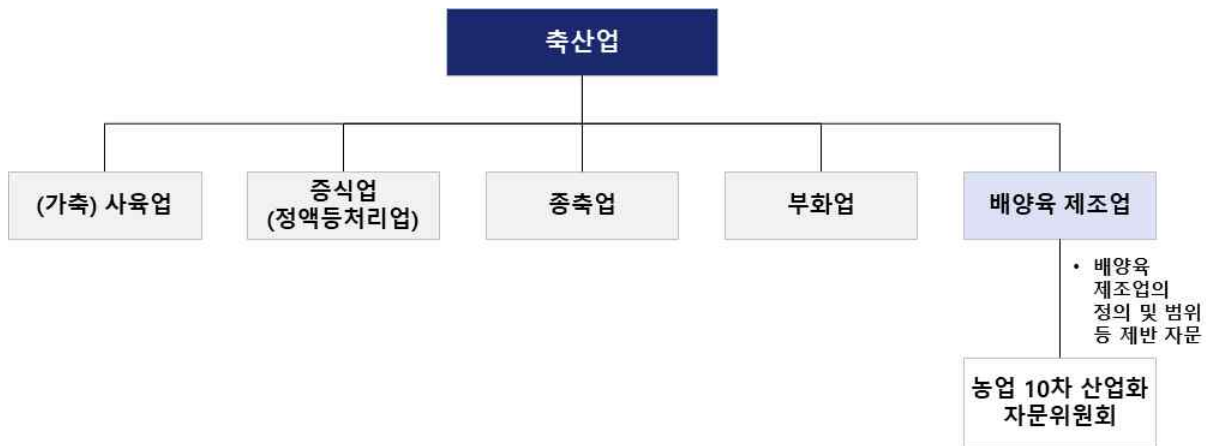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략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재구성

□ 개선 방안

- ‘축산업’의 정의에 ‘배양육 제조업’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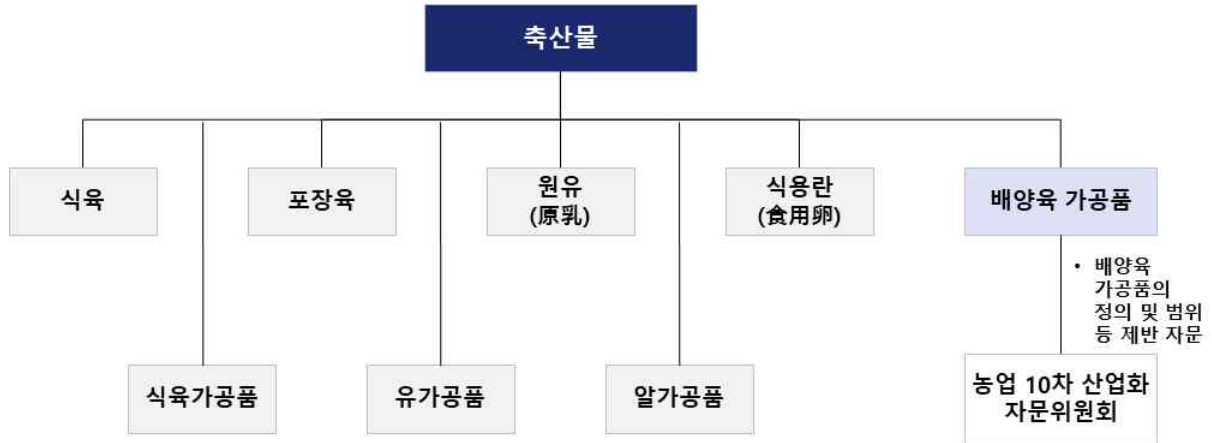
[그림 2-17] ‘축산업’ 정의 개선(안) 예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개정 검토 필요
 - ‘축산업’의 정의에 ‘배양육 제조업’ 추가
- 축산업법 제2조(정의) 개정 검토 필요
 - ‘축산업’의 정의에 ‘배양육 제조업’ 추가

- ‘축산물’의 정의에 ‘배양육 가공품’을 추가

[그림 2-18] ‘축산물’ 정의 개선(안) 예시



- 축산법 제2조(정의) 개정 검토 필요
 - ‘축산물’의 정의에 ‘배양육 가공품’을 추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개정 검토 필요
 - ‘축산물’의 정의에 ‘배양육 가공품’을 추가

- ‘배양육 제조업’을 축산업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 필요

□ 기대 효과

- ‘축산업’의 정의에 ‘배양육 제조업’, ‘축산물’의 정의에 ‘배양육 가공품’을 추가하여 배양육 산업 육성 도모

② 배양육 관련 표기 개선 및 통계자료 정비 필요

신산업 분야	대체식품 (배양육)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령 단위	고시·훈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시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 규제 현황

-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으로 배양육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 예상
 - 배양육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관련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식품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배양육에 대한 통계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

□ 관련 법령

- 배양육 관련 표기 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시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 개선 방안

- 배양육을 기존 축산물(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과 별도로 ‘식품유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되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명 및 안내문’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은 필요
 - (개선 사례) 소고기 배양육, 돼지고기 배양육, 닭고기 배양육, 계란 배양육, 배양육 포함 마요네즈, 배양육 포함 버터 등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 제공

-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 개정 검토 필요
 - ‘24.대체식품류 및 24-2. 배양육류’ 분류 추가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그림 2-19] 배양육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개선(안) 예시



[표 2-24] 배양육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개선(안) 예시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1.-23. 생략	- 생략 -	- 생략 -
24.대체식품류	24-1.식물성 대체육류	- 생략 -
	24-2.배양육류	배양육 식육가공품
		배양육 알가공품
		배양육 유가공품
		배양육 수산가공품
기타 배양육		
24-3.기타대체식품류	기타대체식품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재구성

□ 기대 효과

- 배양육을 ‘식품유형’ 으로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고, ‘제품명 및 안내문’ 에 유사 축산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을 사전 예방

6.1 산업 환경 분석

① 반려동물사료(펫푸드)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시장 확정

○ 반려동물 개념²⁸⁾

- 반려동물 개념은 본래 가축을 제외하고 인간과 함께 사는 개나 고양이처럼 소유하고 가지고 논다는 의미로 ‘애완동물(Pet)’ 이라 불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자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이라 칭함

* 반려동물이란 단어는 ‘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심포지움에서 동물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가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 가치를 재인식하여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고 제안. 국내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

○ 반려동물 법적 정의

-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함

[그림 2-20] 반려동물 법적 범위

< 개 >	< 고양이 >	< 토끼 >
		
< 페럿 >	< 기니피그 >	< 햄스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재구성

28) 농림축산식품부 (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재구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반려동물의 범위)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재구성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대상 정의²⁹⁾

-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로 그 범위를 한정해서 개와 고양이 대상 사료에 대해 기술

[표 2-25] 개별법상 반려동물 범위

주요 관리법	동물 범위
동물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를 말한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호의2, 규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수의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고양이, 소, 말, 돼지, 양, 토끼,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

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주요 관리법	동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법」 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개, 고양이</u>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II 제29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구성

○ 국내 반려동물 양육 현황

- ‘19년 기준 국내 반려견 개체 수는 약 598만 마리, 반려묘 개체수는 약 258만 마리로 추정
- 동 기간 반려견 개체 수 연평균 증가율은 2.9% 수준, 반려묘 개체 수 연평균 증가율은 17.0% 수준으로 반려견 대비 반려묘 개체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표 2-26] 국내 반려동물 양육 현황 추정 (단위 : 만마리)

구분	2010	2012	2015	2017	2018	2019	CAGR
반려견	462	440	513	662	507	598	2.9%
반려묘	63	116	190	233	128	258	17.0%
합계	524	556	702	895	635	856	5.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정의 및 범위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정의

-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를 말하는데 주로 주식과 간식으로 분류
- 국내에는 아직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
- 반려동물사료와 산업동물사료는 그 목적 및 유통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며, 반려동물사료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목적으로 영양과 기호성, 흡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주식) 반려동물의 연령별·특징별(크기 및 체질 등) 차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³⁰⁾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국내 반려동물 간식시장 조사 보고서

[표 2-27]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주식 범위

구분		주요 내용
주식 (사료)	전연령견 사료	• 펠피(생후 6개월 ~1년), 어덜트(생후 1년 이상) 구분 않고 모두 먹일 수 있는 사료
	자견용 사료	• 생후 12개월까지 어린 반려동물들에게 먹이는 사료로서 성장기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이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
	성견용 사료	• 생후 1년 이상 반려동물들에게 먹이는 사료로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만 보충하면 되는 사료
	노령견 사료	• 최상의 신체 조건을 위해 조절된 에너지와 보통 수준의 단백질을 갖춘 사료, 지방과 칼로리가 낮음
	비만견 사료	• 운동부족 반려동물이나 불임수술 후 체중이 증가하는 반려동물들의 체중 감량을 위한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 사료
	소형 반려동물 사료	• 고품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사료
	대형 반려동물 사료	•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 등이 보장된 사료
	민감체질 사료	• 야채와 유기농 재료 등을 써서 재료 선택에서부터 온순하고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사료
	피부개선 사료	• 피부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오메가-3 등 성분이 풍부한 같은 영양분으로 만든 사료
	국내 알뜰사료	• 외국 수입산 사료에 비하면 무척 저렴하고 소용량 보다는 대용량 위주로 많이 판매되는 사료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 국내 반려동물 간식시장 조사 보고서, 재구성

- (간식) 주식을 제외한 반려동물사료이며, 원재료의 종류와 가공특성에 따라 제품 및 종류가 다양³¹⁾

[표 2-28]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간식 범위

구분		주요 내용
간식 (식품)	육포/사사미	• 주로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 고기를 말린 형태의 제품 • 비타민E, 미네랄, 칼슘을 함유해 고단백, 저지방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반건식 슬라이스 타입의 간식
	저키류	• 비교적 부드러운 형태·재질의 간식으로, 다양한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껌	• 반려동물의 치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매우 딱딱하고 질긴 형태의 간식

3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 국내 반려동물 간식시장 조사 보고서

구분	주요 내용
습식간식/소시지	• 소시지 같은 형태, 촉촉한 형태 간식
캔/파우치	• 통조림 형태로 가공된 간식 • 100% 순살코기 등으로 만든 고단백 영양간식으로 건식사료를 먹일 때보다 기호성이 뛰어나며, 반려동물의 피부 및 모질개선에도 효과적
비스켓/쿠키	• 반려동물용으로 가공된 제품 • 적당한 단단함으로 반려동물의 씹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치아와 턱 근육 발달에 좋고, 고구마 등을 함유하여 기호성을 높임
건조식품	• 고기의 부산물 및 어류, 육류, 과채류 등을 건조한 제품
기타	• 반려동물 전용 유제품, 이온음료 등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 국내 반려동물 간식시장 조사 보고서, 재구성

○ 국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시장 현황³²⁾

- 반려견·반려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매출기준 국내 반려동물사료 소매시장은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9% 고성장 달성, 2019년~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5.9%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려견 사료시장)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3% 고성장 기록, 2019년~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4.8% 지속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반려묘 사료시장)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26.1% 고성장 기록, 2019년~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8.2% 고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건식사료 시장)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4% 고성장 기록, 반려견 (9.7%) 대비 반려묘(25.4%) 성장이 더 높음
- (습식사료 시장)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2% 고성장 기록, 반려견 (8.8%) 대비 반려묘(18.7%) 성장이 더 높음
- (간식 시장)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7.2% 고성장 기록, 반려견(14%) 대비 반려묘(51.8%) 성장이 더 높음

32)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표 2-29] 국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매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8	CAGR (2014-2018)	2019	2023	CAGR (2019-2023)
반려견	사료	건식	320	463.2	9.7	N/A	N/A
		습식	26.4	37	8.8		
	간식		65	109.7	14	643.5	776.1
	소계		411.4	609.9	10.3		
반려묘	사료	건식	81	200.4	25.4	N/A	N/A
		습식	12.3	24.4	18.7		
	간식		3.8	20.2	51.8	276	378.7
	소계		97	244.9	26.1		
합계	사료	건식	401	663.6	13.4	N/A	N/A
		습식	38.7	61.4	12.2		
	간식		68.8	129.9	17.2	919.5	1154.8
	소계		508.4	854.8	13.9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② 반려동물 관련 산업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정의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반려동물의 생산, 사육 및 관리, 사후처리 과정까지 한 생명체의 Lifecycle 전체를 감당하는 산업분야라고 정의³³⁾
 - 생산업, 판매업, 동물병원, 동물보험, 사료·푸드, 용품, 장묘업 등

[그림 2-21]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연관산업 가치사슬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재구성

○ 반려동물 관련 산업 법적 정의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란 “반려동물의 생산·유통, 반려, 사후관리(After Market) 등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 영업”이라 하여 그 세부 영업의 목록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열거하고 있음

33) 농림축산식품부 (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추진

동물보호법 제5장 영업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재구성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표 2-30]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구분	주요 내용
동물장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장묘업 •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 • 반려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동물화장(火葬) 시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 반려동물 전용 봉안시설
동물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동물수입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동물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동물전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
동물위탁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동물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동물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재구성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및 관련 용품 유통 경로³⁴⁾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유통 경로

- 온라인 쇼핑물 > 반려동물 전문 온라인 쇼핑물 > 반려동물 전문 오프라인 매장 > 동물병원 > 대형마트 등에서 반려동물사료를 구매

[표 2-31]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구매 장소 (단위 : %)

구분	온라인 쇼핑물	반려동물 전문 온라인 쇼핑물	반려동물 전문 오프라인 매장	동물병원	대형마트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물
1 순위	35.4	17.0	12.4	10.8	7.6	3.8
1+2+3 순위	52.8	37.8	29.0	22.0	18.0	13.4

자료 : 오픈서베이 (2020)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0, 재구성

○ 반려동물 관련 용품 유통 경로

- 온라인 쇼핑물 > 반려동물 전문 오프라인 매장 > 반려동물 전문 온라인 쇼핑물 > 동물병원 > 대형마트 등에서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구매

[표 2-32] 반려동물 관련 용품 구매 장소 (단위 : %)

구분	온라인 쇼핑물	반려동물 전문 오프라인 매장	반려동물 전문 온라인 쇼핑물	동물병원	대형마트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물
1 순위	31.4	16.6	14.0	12.2	6.0	5.4
1+2+3 순위	49.0	35.8	33.4	24.2	17.6	13.8

자료 : 오픈서베이 (2020)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0, 재구성

34) 오픈서베이 (2020)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0

③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및 관련 산업 정책

□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19년 12월)³⁵⁾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주요 내용

- (육성방안) 기존 사료 시장과 차별화되는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인식 개선*

* 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반려동물사료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 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 등 반려동물사료산업 육성 기반 강화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중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부문 주요 내용

- ①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원료·가공·표시기준 마련 및 (가칭)「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②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 ③ 유기 인증 제품 확대 및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 ④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사양 정보 DB 구축 등 R&D 추진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9)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재구성

○ 반려동물사료(펫푸드)를 위한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가칭)「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양한 제품의 개발·출시가 가능토록 원료 범위를 식품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품 검정·검사 강화* 등 원료의 품질 및 안전성 기준 정비

* (품질) 등록성분량, 원료 함량 등 / (안전성)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특성에 맞는 열처리, 보존방법 등 가공 기준 개선·보완*

* 열처리 외 멸균 및 살균 처리 동등성 기준 마련, 제품 유형별 포장·용기, 보존방법 등 기준 보완

-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품질, 영양정보, 원재료함량 등 표시 기준 마련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를 구축, 국산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22)

- 전문가, 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품질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산 제품의 원료성분, 표시사항 등을 평가하고, 우수제품 홍보체계 구축

○ 건강·기능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기인증제품 확대 및 반려동물사료(펫푸드)에도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35) 관계부처합동 (2019)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 '19.1월부터 전면 시행('17년 도입)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유기사료 인증제의 홍보 강화 및 제조업체 참여 유도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19.12)을 참고,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기능성 표시제 도입방안 검토

-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고급화와 수출* 확대 지원('20~)
 - 반려동물사료 전용 국내산 원료 생산 제조업체에 시설·운영 자금 지원(530억원)
 - 품종, 크기,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 영양소 요구량 평가 및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사양 정보(기호성, 분변지수 등) DB 구축 등 R&D 추진(농진청)
 - 해외 정보수집·분석·제공, 마케팅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수출 확대 지원

* 반려동물사료 수출 현황 : ('17) 1,270만불 → ('18) 1,450 → ('19) 3,678

□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20년 1월)³⁶⁾

-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

*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내면화
추진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②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화 ③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④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 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재구성

-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주요 내용
 -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

36)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표 2-33]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추진 과제

6대 분야	26대 과제
①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1. 동물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 2.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3.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4.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5.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 6. 불법 영업 근절 7.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8.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③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9.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10.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개선 11.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12.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13.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14. 운송·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15.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16.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17. 말·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18.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19.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처벌강화 20.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21.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22.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23.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 운영 24. 동물보호·복지 통계·실태조사 개선 25.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26.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재구성

6.2 법제 환경 분석

① 반려동물사료(펫푸드)

□ 반려동물 관련 법률

- 우리나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및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대해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사료 및 반려동물 사육·관리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사료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음

반려동물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등
반려동물 사육 및 관리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약취방지법, 도시공원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검역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항만법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재구성

□ 사료관리법

- 사료관리법 제정 취지
 - 1963년 제정된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사료관리법 법령체계도

(법률)	사료관리법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11.14., 타법개정]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19-58호] - 사료검사기준 [고시 제2019-59호]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제2019-61호] - 수입사료 사후 관리기준 [고시 제2019-60호] -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9-61호] - 사료검사수수료 [고시 제2020-17호]
(훈령)	- 국립축산과학원 원료사료 인정 심의규정 [훈령 제69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 사료관리법 주요 내용

- (사료의 수급 안정)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사료 원료의 수급 및 가격과 산업동물을 위한 배합사료의 생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 등) 사료제조업자의 등록, 제조시설 기준, 사료의 성분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전한 배합사료 생산을 위하여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그리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체계 준수를 명시
- (사료 검사 등)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기준과 방법, 그리고 위해요소에 대한 조치 및 벌칙에 관한 사항 명시

[표 2-34] 사료관리법의 주요 구성과 내용

구성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의 목적, 정의 • 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사료 수출업자의 적용배제 규정
제2장 사료의 수급 안정	제5조~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 사료의 수입 추천 등 •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제3장 사료의 품질 관리 등	제8조~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제조업의 등록 및 승계 • 사료안전관리인 • 사료의 공정 등 • 사료의 성분 등록 및 취소 • 사료의 표시사항,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등의 표시 •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담당기관 지원 • 사료공정서의 작성 및 보급
제4장 사료검사 등	제19조~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의 수입신고 등 • 자가품질검사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 사료검사, 재검사 규정 •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 사료 폐기 등의 조치 • 제조업의 등록 취소 • 과징금 처분
제5장 보칙	제27조~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구성	조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수수료 및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법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3조~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양벌규정) • 과태료 규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 사료관리법 시행령

○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정 취지

-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 사료관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재정지원, 사료안전관리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내용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취지

-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사료의 안전성 지도기준을 비롯하여 사료제조업의 등록, 시설기준, 변경, 승계 규정과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직무 등을 규정
- 사료 공정의 설정 절차와 사료 성분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작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 사료의 검사종류 및 사료검사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사료검정기관의 지정과 검정방법, 변경신고, 재검사 등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 사료의 폐기 및 행정처분 기준

□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19-59호) : 사료공정서
 - 사료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 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사용·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료검사기준(고시 제2019-59호)
 - 사료 검사에 필요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사료검사는 사료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와 제조업자의 시설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
 - 사료검정은 서류확인, 현물검사와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관능적·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정상·등록성분 또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분석하거나 사료로서의 적합 여부를 감별하는 것을 의미
 - 주요 검사항목으로 수입 시 관련 서류,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설 검사, 사료의 중량 및 품질, 안전에 관한 성분 등이 있음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제2019-61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의미
 - 축산물의 안전성이 중시되면서 사료 안전에 관한 관심과 위생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배합사료공장 HACCP 인증제도를 도입
 - 사료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포장·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
 - 사료공장 HACCP 인증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제정 취지

- 유기사료에 대한 일관된 표시기준이 부재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반려동물사료 산업 육성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를 시행*

* 유기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시작(2001.7~)으로 유기 가공식품인증(2008.6~), 가축 유기사료 인증(2014.1~)에 이어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2017.6~)을 도입

- (시행시기등)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업체 준비기간, 수입제품 등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유기인증 제품 표시는 약 1년 7개월 유예*

* (인증제 시행) '17. 6. 3.부터 시행, (표시유예) 해외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는 '18. 12. 31.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까지 허용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주요 내용

- 미국 펫사료 유기인증 사례*, 개·고양이의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인증기준 마련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의 경우, 미국이 유일(NOP, National Organic Program)

- 국내 유통 중인 유기 반려동물사료는 미국(NOP)에서 인증받은 유기원료 70%이상 함유 제품인 점을 고려하여 유기원료 함량 70%이상 제품에 대해 인증

인증대상	•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유기사료 제조 및 가공 등에 적용
인증기준	• 비식용유기가공품(양축용 유기사료)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을 준용
표시방법	• 유기원료 95%이상 함유제품에 한해 인증로고 사용하되, 70~94% 제품은 주표시면에 유기표시, 70%이하의 원재료·함량란에 유기표시 허용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반려동물 유기사료 Q&A 자료, 재구성

- 사료관리법령에 정한 사료원료 중 가축용 유기사료 허용물질에 유기가공식품 첨가물·가공보조제를 더하여 원료 다양성 확보*

*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보조사료+유기가공식품 첨가물·가공보조제

-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표시도형 또는 표시문자)와 인증사업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표 2-35]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고시)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 (제한적 유기표시 제품)	
	유기농함량 95% 이상	유기농함량 70% 이상 (반려동물 사료)	유기농함량 70% 이상	유기농함량 70% 미만 (특정원료)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유기사료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O	X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시	O	X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O	X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O	O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O	O	O	O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반려동물 유기사료 Q&A 자료, 재구성

□ 반려동물사료 관련 적용 법률

- 국내 반려동물사료는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 산업동물사료와 반려동물사료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
- 특히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료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진 법률
- 사료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서 규정하는 산업동물사료와 반려동물사료의 차이점은 ① 대상동물이 가축(산업동물)과 반려동물(펫)이라는 점과 ② 제조시설기준, 공정설정 및 안전성에 있어서 반려동물사료(펫푸드)에 대한 예외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

[표 2-36] 산업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펫푸드) 법령·제도 비교

구분	산업동물용 사료	반려동물용 사료	비고
대상 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에 따른 가축 (소·돼지·닭 등: 양축용), 수산동물, 실험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구분		산업동물용 사료	반려동물용 사료	비고
제조시설기준 (배합사료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시설) 건물, 저장, 분쇄, 배합, 계량, 정선, 포장 (추가시설) 먼지제거, 수송,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시설) 건물, 저장, 분쇄, 배합, 계량, 정선, 포장 등 	
공정 설정	배합·단 미사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료 혼합시(혼합성) 단미사료로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량의 보조사료 (보존제·항미제에 한함) 혼합 시 (혼합성) 단미사료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 단미사료+단미사료
	사료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단계별(자돈사료, 비육돈사료 등) 명칭 법제화 (양축용 사료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자가 자율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동물 중 수산·실험동물은 제조업자가 자율로 정함
	성분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분(단백질, 지방등) 비율 (%) 등록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분(단백질, 지방 등)이 아닌 원료명으로 등록 가능 	
안전성 관리	동물성 단백질 평균·살 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처리(121 °C 15분 이상 등)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처리 예외(익스트루전 형태, 소독제 처리 후 동결 건조, 조사처리 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수산동물 (뱀장어) 사료도 예외 인정
	배합사료 수분 제한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분 14% 초과 불인정 원칙 (단, 통조림, 레토르트 등 밀봉형태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분 14% 초과 인정 (단, 유통기한 18개월 이내) 	
	B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SE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사료는 수입 시 마다 BSE 현물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BSE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 반려동물사료는 1년에 한번만 BSE 현물검사 실시 	
	HAC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관리(시설·제조공정·위생·방역 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관리평가 외에 원료육에 대한 온도·해동·건조 공정 등에 대한 평가 추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② 반려동물 관련 산업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제정 취지

-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로,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2011년 전면개정 이후 15차례의 일부개정이 진행
-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① 동물의 정상적인 사육·관리 또는 보호, ② 동물 학대행위 금지, ③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지자체 조례 제정), ④ 동물의 외과적 수술의 경우 수의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취지를 담아 제정

○ 2011년 전면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 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

○ 2017년 일부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동물의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 증가에 따라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증가에 따른 동물생산업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기존 반려동물 관련 4개 업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외에 4개 업종(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

-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함께 영업자가 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
-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지역별로는 경기도 27.4%, 서울 15.7%, 인천 7.5% 순을 기록함

년도	2017	2018	2019
등록마리수	104,809	146,617	797,081
전년비 증가율	14.4%	39.8%	1,443.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 2020년 일부개정 배경

-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

○ 동물보호법 법령체계도

(법률)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2.11., 일부개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52호, 2020.4.28., 타법개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2호, 2020.8.21., 일부개정]

(행정규칙)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고시 제2016-17호]
- 동물도축세부규정[고시 제2019-28호]
-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고시 제2020-7호]
-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고시 제2017-33호]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고시 제2018-20호]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고시 제2016-5호]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고시 제2018-94호]
-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고시 제2019-20호]
- 동물실험지침[훈령 제75호]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고시 제2016-61호]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고시 제2016-18호]
- 동물운송 세부규정[고시 제2018-29호]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고시 제2014-114호]

(자치법규)

- 각 17개 지방자치단체별 동물보호 조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재구성

○ 동물보호법의 주요 구성과 내용(2020년 8월 12일 시행)

-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②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③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 ④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

[표 2-37] 동물보호법의 주요 구성과 내용

구성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의 목적, 정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복지위원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사육·관리, 동물학대 등의 금지 • 동물의 운송 및 반려동물 전달 방법 • 동물의 도살방법, 수술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 •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신고 등 •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 동물의 소유권 취득, 분양·기증, 인도적인 처리 등
제3장 동물시험	제23조~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시험의 원칙과 금지 등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지도·감독 등
제4장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제29조~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부정행위 금지 • 인증의 승계
제5장 영업	제32조~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반려동물 영업의 등록 및 허가 •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등 • 반려동물 영업의 승계 및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등 • 반려동물 영업 등록 및 허가 취소 등 • 영업자에 대한 점검

구성	조항	주요 내용
제6장 보칙	제39조~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자 대상 출입·검사 규정 •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수수료 및 청문, 권한의 위임 •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7장 벌칙	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양벌규정) • 과태료 규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재구성

[표 2-38]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구분	주요 내용
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특성 고려, 위생적·체계적인 사육시설, 입지기준 마련 • “생산”의 정의, 허가제, 생산시설 표준모델, 반려동물이력제(개체번호 부여)와의 연계
판매·유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관련 면허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계약서) 마련 • “직접 대면” 계약원칙, “계약서 교환” 제도화, 경매장 규율
사료 및 용품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용법 상의 안전과 위생 기준 설정, 제품표시 의무 강화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종 신설 및 관리기준 마련 • 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관련 미흡한 제도 정비 • 세부 영업의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최저 기준, 서비스업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및 인증제도 구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포상금, 민간지원조직 신설 법적근거 마련 등 • 반려동물 거래시 표준거래규범에 따라 계약서 작성 관행의 정착,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관련산업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및 실태조사 등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재구성

6.3 해외 유사 사례 조사

① 산업 환경 분석

□ 글로벌 반려동물 양육 현황³⁷⁾

○ 글로벌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 아시아 태평양(32.5%) > 유럽(31.5%) > 북미(16.8%) > 중남미(15.5%) > 기타(3.6%)*
순서로 반려동물 개체 수가 많음

* 기타지역 : 중동·아프리카, 호주

[표 2-39] 글로벌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기준 : 2016년, 단위 : 만 마리)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중남미	기타 지역
49,310	47,747	25,498	23,492	5,523
32.5%	31.5%	16.8%	15.5%	3.6%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 글로벌 종류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 2016년 기준 글로벌 반려견 개체 수는 약 3억 8천만 마리(25.0%)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반려동물이며, 반려묘 개체 수는 약 2억 8천만 마리(18.4%)로 두 번째로 개체 수가 많은 반려동물
- 기타 반려동물로는 소형 포유류, 조류, 파충류, 관상어 등이 있으며,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의 약 56.6%를 차지*

*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개체 수 기준으로 관상어가 가장 많으나, 사육 형태의 특성상 관상어 개체 수와 기타 반려동물의 개체 수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표 2-40] 글로벌 종류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기준 : 2016년, 단위 : 만 마리)

반려견	반려묘	기타 반려동물	합계
38,080	28,054	86,410	152,544
25.0%	18.4%	56.6%	100.0%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37)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 글로벌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시장 현황³⁸⁾

○ 글로벌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시장 현황

- 매출기준 글로벌 반려동물사료 소매시장은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 저성장 달성,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5.8% 지속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려견 사료시장)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 저성장 기록,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5.8% 지속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반려묘 사료시장)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0.6% 저성장 기록,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5.8% 지속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건식사료 시장)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0.8% 저성장 기록, 반려묘(0.7%) 대비 반려견(1.2%) 성장이 더 높음
- (습식사료 시장)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0.3% 저성장 기록, 반려묘(△0.2%) 역성장 대비 반려견(18.7%) 성장이 더 높음
- (간식 시장)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4.2% 지속 성장 기록, 반려견(3.7%) 대비 반려묘(6.5%) 성장이 더 높음

[표 2-41] 글로벌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매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	2017	CAGR (2013-2017)	2018	2022	CAGR (2018-2022)
반려견	사료	건식	31,942	33,128	0.9	N/A	N/A	N/A
		습식	7,999	8,389	1.2			
	간식		7,264	8,396	3.7			
	소계		47,205	49,913	1.4	55,193	69,172	5.8
반려묘	사료	건식	13,018	13,376	0.7	N/A	N/A	N/A
		습식	13,728	13,609	△0.2			
	간식		1,536	1,975	6.5			
	소계		28,282	28,960	0.6	31,420	39,437	5.8
합계	사료	건식	44,960	46,504	0.8	N/A	N/A	N/A
		습식	21,727	21,998	0.3			
	간식		8,800	10,371	4.2			
	소계		75,487	78,873	1.1	86,613	108,609	5.8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38)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 글로벌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품 동향

- 반려견 및 반려묘용 사료 경우 모두 고가 사료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저가 및 중가 사료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어, 고품질 사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반려동물사료의 원재료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원재료의 우수성, 생산지 및 생산 이력 등 조달·제조 과정을 공개하는 고가 제품의 출시 증가 추세

[표 2-42] 글로벌 반려동물용 건식 및 습식 사료 세부 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

반려견용 사료		2018	2022	CAGR (2018-2022)	반려묘용 사료		2018	2022	CAGR (2018-2022)
건식 사료	저가	6,075	5,667	△1.7	건식 사료	저가	2,294	2,161	△1.5
	중가	11,571	11,042	△1.2		중가	5,350	5,275	△0.4
	고가	14,297	16,419	3.5		고가	5,374	5,940	2.5
	소계	31,942	33,128	0.9		소계	13,018	13,376	0.7
습식 사료	저가	1,616	1,416	△3.3	습식 사료	저가	2,072	1,776	△3.8
	중가	3,103	2,931	△1.4		중가	6,317	5,838	△1.9
	고가	3,280	4,042	5.4		고가	5,340	5,994	2.9
	소계	7,999	8,389	1.2		소계	13,728	13,609	△0.2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그림 2-22] 글로벌 고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품 출시 사례

미국 Spot Farms	캐나다 Orij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반려동물 양육 가족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천연, 유기농 원료를 활용한 반려동물사료를 생산하며, 원재료 획득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리 지역 농장에서 재배한 식자재들과 청정지대에서 키운 소고기, 방목란, 자연산 생선 등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원료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사료 제조함을 부각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 글로벌 주요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³⁹⁾

- (EU)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Feed, R.767/2009)」은 사료의 원료에 관해 규정하고, 사료를 유형에 따라 복합사료, 완전배합사료, 보조사료, 특수목적사료, 약용사료* 등으로 구분
 - (사료 원료, Feed Materials) 식물이나 동물에서 유래한 신선한 제품으로서, 동물의 영양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의미
- * 약용사료의 경우 Council Directive 90/167에서 별도 규정

[표 2-43] EU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구분		주요 내용
사료	복합 사료 (Compound Feed)	• 동물에 급여를 목적으로 하여 최소 2가지 이상의 사료 원료가 혼합된 사료. 완전배합사료, 보조사료로 구분
	완전 배합 사료 (Complete Feed)	• 동물에게 주식(主食)으로 급여하여도 충분할 정도의 구성을 갖춘 사료
	보조 사료 (Complementary Feed)	• 특정물질 함량이 높지만, 그 구성으로 인하여 주식(主食)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료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사료 - 미네랄 보조사료, 기타 보조사료로 구분
	특수목적 사료 (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 특별한 사료 구성 및 제조방법으로서, 특별한 영양적 목적을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사료* * 만성신부전, 소화불량, 피부질환 등 35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FEDIAF)의 영양기준을 따름 • ‘반려동물에게 급여 전, 영양전문가 또는 수의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는 표기를 해야 함
의약품	약용 사료 (Medicated Feeding Stuffs)	• 사료와 수의학 의약품*의 혼합물, 사용 시 수의사 처방 필요 * 수의학 의약품은 사료첨가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Regulation 2019/6에서 정의된 약리학적 작용으로 질병을 치료 혹은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의약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39)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 (일본) 일본애완동물사료(펫푸드)공정거래협의회(Pet Food Fair Trade Association)는 반려동물사료를 ①종합영양식(総合栄養食), ②간식(間食), ③요법식(療法食), ④ 기타 목적식(その他の目的食)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⁴⁰⁾

[표 2-44] 일본 애완동물사료공정거래협의회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구분	주요 내용
종합영양식 (総合栄養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사료 중 개 또는 고양이에게 매일 주요 식사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애완동물 사료와 물만으로 지정된 성장단계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적으로 균형 잡힌 제품으로, '애완동물 사료 공정거래협회'가 정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정해져 있음 • 애완동물사료의 목적으로 '종합 영양식'이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는 애완동물사료가 적용되는 개 또는 고양이의 성장 단계가 병기 되어 있음 • '종합 영양식'이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정해진 2가지 시험을 실시해야함* * 제품 분석시험 결과를 시행규칙의 영양기준과 비교하여 영양성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분석시험' * 실제 급여시험을 실시하여 종합영양식임을 증명하는 '급여시험'
간식 (間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스낵 또는 보상으로 제한된 양을 주는 것을 의도한 애완동물식품 - 일반적으로는 간식, 스낵, 트리트 등 이와 유사한 표현 및 표시가 되어 있음 • 적절한 영양량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 횟수 및 급여 한도량 표시와 주식 급여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표시에 의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 - 급여 한도량은, 원칙으로서 1일 당의 에너지 소요량의 20%이내에 억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소재기준으로 반죽가공품, 소재기본품, 껌, 치아구강, 과자류, 기타 등으로 분류 • 수분함량 기준으로 건식, 반건식, 반습식, 습식, 기타 등으로 분류
요법식 (療法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사가 개나 고양이 질병치료 등을 할 때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양학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요법식'이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사료 중 영양 성분의 양이나 비율이 조절되고 치료를 보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하에 식사 관리에 사용될 것을 의도한 것을 말함
기타 목적식 (その他の目的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영양식', '간식' 및 '요법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영양의 조정 또는 칼로리 보충, 기호성 증진 등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 나아가 애완동물 사료 또는 식품과 함께 제공하려고 의도한 것을 말함 - 부식·반찬형, 영양보조제 등으로 구분
부식·반찬형 (副食・おかずタイ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증진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애완동물사료로 일반식(반찬형), 일반식(종합영양식과 함께 급여), 부식, 후리카케 등으로 표시 - 수분함량 기준으로 건식, 반건식, 반습식, 습식, 기타 등으로 분류
영양보조제 (栄養補助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영양 조정과 칼로리 보충 등 목적 애완동물 식품으로 영양 보완식, 칼로리 보충식, 동물용 영양 보조식(동물용 보충제) 등으로 표시

자료 : 일본애완동물사료(펫푸드)공정거래협의회(Pet Food Fair Trade Association, <http://petfood.or.jp>), 재구성

40) 일본애완동물사료(펫푸드)공정거래협의회(Pet Food Fair Trade Association, <http://petfood.or.jp>)

- (시장 현황) 저가형 사료와 건강 유지·향상 목적의 고가형 사료로 수요가 양극화 되는 추세

[표 2-45] 일본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시장 현황

구분		상품 타입	주요 내용	사례
사료	반려견	건식, 습식, 반 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종합영양식), 부식 타입 일반식, 영양보조식 	 습식
	반려묘	건식, 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종합영양식), 부식 타입 일반식, 영양보조식 	 건식
고가 사료	반려견 반려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를 차별화하거나 생애주기, 사육환경, 반려동물이 갖고 있는 증상이나 고민 등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보존료, 착색료, 향료,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 곡물을 사용하지 않고, 원재료의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자연소재 사료
간식	반려견 반려묘	육포, 껌, 비스킷, 기타 형태 (예, 추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 또는 훈련 등 목적으로 급여되는 부식 	 추르
우유	반려견 반려묘	분말, 액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유나 이유식 대체 및 영양보조식, 요양식 등으로 유아기부터 노령기까지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급여하는 우유 	 견용
영양제	반려견 반려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이 주식으로는 보충할 수 없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영양보조식품 정장 작용 및 면역활성화 작용 등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건의능 성분을 포함한 영양보조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처방식	반려견 반려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질환 증상에 맞추어 영양균형이 조정되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급여되는 처방식 	 체중감량 견용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일본 펫푸드 시장 현황 및 한국산 펫푸드 진출안 조사, 재구성

② 법제 환경 분석

□ 미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및 관련 산업 법제 환경⁴¹⁾

- 미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주요 법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있음

-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은 사료를 포함한 미국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포함)산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1938년에 제정*
 - * FDCA 제정 이후 식품의 범주에 동물사료가, 의약품의 범주에 수의약품이 포함
 - FDCA는 온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의 제조 및 생산, 유통 및 거래, 그리고 소비를 위한 입법 및 관리 체계를 말함
 - 핵심 내용으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식품의 안전규제, 기준 설정, 업체 검사 등 규제 권한을 부여
 - 2007년 멜라민 사료 사태 이후,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려동물사료 원료 및 제조의 표준을 정함에 있어 미국사료협회(AAFCO,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반려동물사료 성분에 대한 기준 및 정의, 반려동물사료 제조 기준, 영양 및 성분 정보를 포함한 표시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 등
 - 2007년 FDA 수정법안(FDAAA, FDA Amendments Act)은 반려동물 질병 발생 및 반려동물사료와 관련된 오염사고의 식별과 추적 및 보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Early Warning Surveillance System)을 요구*
 - * 이에 따라 개발된 PETNet은 FDA와 AAFCO회원 간의 반려동물사료 안전사고에 대한 즉각적 정보 교류를 통해 신속한 규제 조치를 행할 수 있게 하였음

-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사건·사고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방·대응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도에 제정
 - FSMA는 지금까지의 사후대응 관리체계를 벗어나, 예방관리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 또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하위 규정인 「동물용 식품의 예방관리 규칙(Final Rule for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HARPCAF)」을 통해 동물용 식품에 대해서도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예방관리 준수 사항을 이행

41)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 EU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및 관련 산업 법제 환경⁴²⁾

- EU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주요 법령으로 「일반식품법」, 「사료위생법」,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R.178/2002)」은 EU 식품 및 사료에 있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
 - 1990년대 중반, 영국 광우병 파동(BSE)은 기존 제도가 지닌 한계를 드러냈고,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를 통해 식품법 분야의 관점을 공동시장의 개발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 보장으로 변화^{*}
 - *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를 기초로 하여 일반식품법(Regulation(EC) 178/2002)이 채택
 -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일반원칙 및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절차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설립을 포함^{*}
 - * 일반법률을 통해, 반려동물사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의 사료를 포괄하고 있음
 - 사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련의 단계는 검증되어야 하고 그 이력은 추적 가능(Traceability)하도록 기록되어야 하며, 신속경보시스템(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을 통해 사료 안전에 관한 사고 혹은 직간접적인 위험 요인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유럽위원회 및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를 확립
- 「사료위생법(Feed Hygiene Regulation, R.183/2005)」은 사료 및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원칙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프로그램을 적용
 - 사료와 식품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원칙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프로그램을 적용
 - 공동체 규범의 정립을 통해 국가 간 합목적성을 확보^{*}
 - *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FEDIAF)의 ‘안전한 반려동물사료 제조를 위한 모범사례 안내서’를 채택
-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Feed, R.767/2009)」은 마케팅 및 사료 표시사항의 체계가 되는 법률
 - 사료의 유형별 시판 조건 및 표시사항 명시
 - 표시사항에 대한 공동체 규범을 작성할 것을 말하며,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안내서를 산업동물용 사료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명시^{*}
 - *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FEDIAF)의 ‘반려동물사료를 위한 우수 표시사항 실습’을 채택

42)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 일본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및 관련 산업 법제 환경⁴³⁾

- 일본은 2008년도에 제정된 「애완동물 사료 안전법」 및 동 법 정령, 성령을 통해 산업 동물용 사료와는 별도로 반려동물사료(펫푸드)의 제조·유통·판매 전반에 대해 관리

[표 2-46] 일본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법률 체계

1. 법률 :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사료안전법) 2008.06.18

2. 정령 :

- 1)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03 (날짜 및 정의)
- 2)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3. 성령 :

- 1) 애완동물용 사료의 성분과 규격 등에 관한 성령 2009.04.28 농림수산 성령/환경 성령 제1호
- 2)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05.18. 농림수산 성령/환경성령 제2호
- 3)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관련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05.18 농림수산 성령/환경 성령 제3호
- 4)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등 및 보고에 관한 성령 2009.05.18 농림수산부령 제31호
- 5)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농정국장에 위임 권한을 정하는 성령 2009.05.18 농림수산 부령 제32호
- 6)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사무소장에게 위임 권한을 정하는 성령 2009.05.18 환경성령 제5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은 반려동물사료(펫푸드)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하였으며,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정의하여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제정된 법률
 - 사료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제조, 유통 및 판매의 각 단계 규제에 관한 것이며 크게 6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표 2-47] 일본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주요 내용

① 기준 및 규격의 설정 및 제조의 금지 (제2장 5, 6조)

-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은 성령에서 사료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료는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

②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애완동물사료의 제조를 금지 (제2장 7조)

43)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애완동물사료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

③ 애완동물사료의 폐기 등의 명령 (제2장 8조)

-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유해하다고 판명되는 사료는 폐기 또는 회수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제조업자의 신고(제2장 9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에게 성명,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함

⑤ 장부의 비치 (제2장 10조)

-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소매의 경우는 제외)는 판매한 애완동물사료의 명칭, 수량을 장부에 기재해야 함

⑥ 보고징수, 현장검사 (제2장 11-14조)

- 농림수산대신 또는 환경대신에 의한 애완동물사료의 제조업자로부터의 보고징수, 제조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에 관해서 규정
- 이 때 환경성과 농림수산성 소속 검사원 혹은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 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s Inspection Center)이 검사를 시행하며 이 때 창고, 기계, 운송장비 등을 모두 검사할 수 있음. 검사 후에는 검사기록지가 제출되어야 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정령」으로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있음
 -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반려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성령」으로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성분규격에 관한 성령」,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행규칙」, 「현장검사 등 보고에 관한 성령」 등이 있으며, 반려동물사료(펫푸드)의 라벨링, 성분 규격, 유해물질 기준 등에 대해 규정

[표 2-48] 일본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성령」 주요 내용

① 애완동물사료의 성분규격에 관한 성령

- 일본 라벨링 규정은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제조국, 제조사 및 수입업자 등의 주소 등 다섯 가지 항목을 표기하도록 함
- 이외에도 첨가물(2항목), 농약(5항목), 오염물질(10항목), 기타(1항목) 등 유해물질에 대한 상한치를 명시하고 있음

②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조업자 등의 신고) 펫사료 제조 및 수입업자는 신고서를 규정된 양식에 따라 농림수산부 장관과 환경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장부의 기록) 펫사료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장부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2년간 장부를 보존하여야 함
- (책임자의 신분증 서류) 현장검사 시 펫사료 업체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검사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함

③ 사료안전법 관련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애완동물사료 제조 기록 장부는 애완동물사료 제조 및 수입업자가 서면 혹은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보존형태는 디스크, CD롬, 그 외 컴퓨터로 지원되는 형식이어야 함
- 원본 문서를 스캔한 형태도 가능하며, 보존된 장부는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된 양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④ 사료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등 및 보고에 관한 성령

- 사료안전법 제13조의 현장검사 시에 대한 성령으로, 매달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 홈페이지에 검사보고서가 업로드 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6.4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1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별도 관리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규제 현황

- 산업동물용사료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료의 영양 가치 및 생산성을 위해 제조, 반면 반려동물사료는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원료 종류 및 품질, 기능성 등을 강조하는 경향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소비자는 일반 식품과 같이 반려동물사료를 신중히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

[표 2-49] 반려동물사료(펫푸드)와 산업동물사료 차이점

구분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산업동물사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의 생애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호 및 영양을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 목적의 경제성 효율 제고 (고기질/성장률/산란율/안전한 먹거리 등)
유통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트, 슈퍼마켓, 펫샵, 동물병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동물 생산농장, 도매상 등 한정된 유통경로로 판매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농가로 제한
품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품목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종별, 성장단계별 단순한 형태 및 종류
라벨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과 같은 정보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법에 따른 기준
소비자 관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사육 목적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단백질 원료 및 가공형태가 존재하므로 적절한 적용기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처리, 동물질병 관련(BSE*, 구제역, AI**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광우병 ** AI : 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구분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산업동물사료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품종, 소량포장, 소량생산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품종 대량생산 자동화 공장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구성

□ 관련 법령

○ 사료 정의

-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 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함.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

[표 2-50] 사료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1항)

구분	주요 내용
단미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조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배합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표 2-51] 단미사료의 범위 [별표 1] (제4조 관련)

구분	사용가능 물질
식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류(곡물), 강피류(곡물부산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조류,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동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 곤충류*, 플랑크톤류, 낙농가공부산물류 * 1.거저리유충(밀웜·슈퍼밀웜), 2.건조귀뚜라미, 3.건조메뚜기, 4.동애등에유충, 5.번데기(번데기박을 포함), 6.장구벌레, 7.파리유충, 8.혼합곤충
광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염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 미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류, 단세포단백질, 남은음식물, 반려동물음용수, 기타
혼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제 - 혼합성 단미사료[둘 이상의 단미사료를 혼합한 것으로 각각의 단미사료는 혼합 전에 개별 단미사료의 기준 및 규격 등(열처리, 수분 등)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사용가능 물질
	<p>※ 애완용 동물의 간식용, 영양보충용은 소량의 보조사료(보존제와 향미제에 한함)를 첨가 가능</p> <p>※ 1. 식물성 ~ 4. 기타의 합제류 및 혼합류 사료를 제외한 것을 말함</p> <p>※ 보조사료 중 규산염제와 완충제는 광물성사료에 혼합시 단미사료로 인정하여 혼합광물질로 분류 가능</p>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표 2-52] 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 (제5조 관련)

구분	사용가능 물질
1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결착제, 2.유화제, 3.보존제, 4.아미노산제, 5.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 포함), 6.효소제, 7.미생물제, 8.향미제, 9.비단백태 질소화합물, 10.규산염제, 11.완충제, 12.착색제, 13.추출제, 14.올리고당, 15.기타, 16.혼합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표 2-53] 배합사료의 범위 [별표 3] (제6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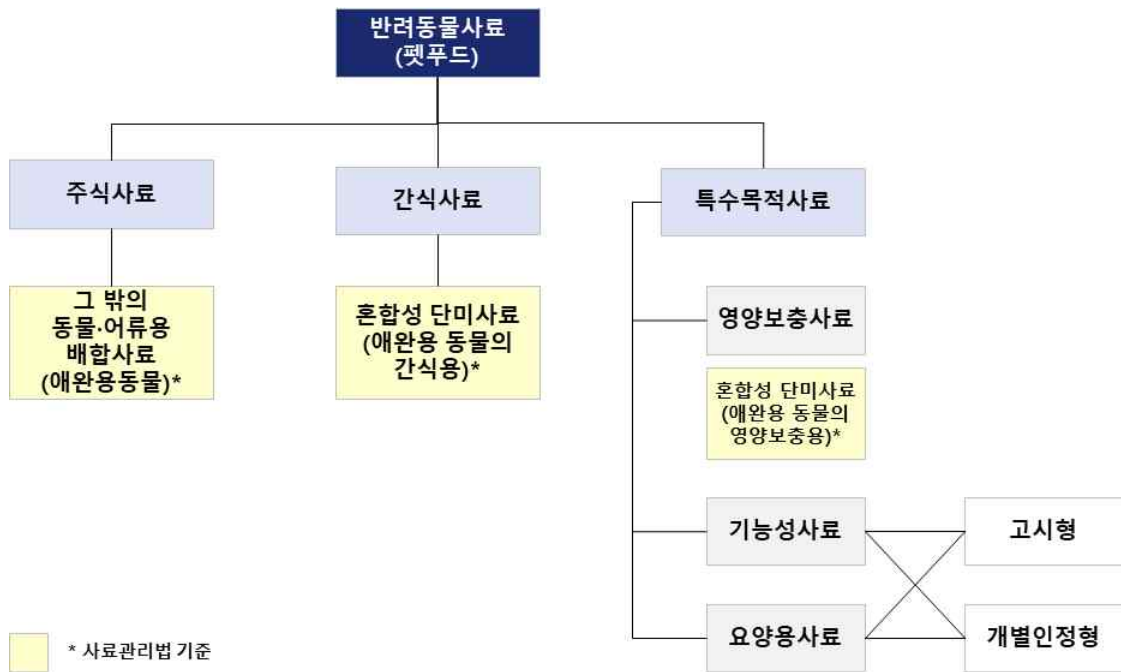
구분	사용가능 물질
양축용 배합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기소, 젓소, 돼지, 닭, 오리, 개, 꿩, 말, 메추리, 사슴, 양, 오소리, 칠면조, 타조, 토끼, 거위, 노새, 당나귀, 꿀벌, 지렁이, 배합사료원료, 특수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 축종별로 구분* *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라 함은 주로 배합사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사료로서 비타민제와 미량광물질류를 주 원료로 하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 아미노산제 등의 보조사료와 부형제를 혼합하여 균질화한 것을 말함
대용유용 배합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 축우용대용유, 양돈용대용유, 주문용대용유* * "대용유용배합사료"라 함은 주로 어린(갓난)가축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사료로서 교차오염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대용유용배합사료 제조시설(규칙 별표 1)에서 주로 유당, 유장, 유조제품을 혼합하고 필요에 따라 비타민제 등의 보조·단미사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배합사료를 말함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기소, 젓소, 기타 반추동물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용동물, 애완용동물*, 사육하는 동물, 수산동물 * 애완용 동물별 사료명칭 및 사용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명**에 의거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정함 ** 반려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반려용으로 사육하는 동물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 개선 방안

- 반려동물사료(펫푸드)의 범위를 주식사료, 간식사료, 특수목적사료(영양보충사료, 기능성사료 및 요양용사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그림 2-23]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개선(안) 예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 (주식사료)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성분 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배합사료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애완용동물) 포함
- (간식사료) 주식 외 단순애호, 기호(嗜好)증진, 훈련·보상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반려동물사료*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 혼합성 단미사료(애완용 동물의 간식용) 포함
- (특수목적사료) 주식사료·간식사료 외 영양보충사료*, 기능성사료 및 요양용사료 등으로 분류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 혼합성 단미사료(애완용 동물의 영양보충용) 포함

[표 2-54]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중 특수목적사료 개선(안) 예시

구분	주요 내용
영양보충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영양소 제공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려동물사료
기능성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가진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 반려동물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원료는 ① 고시형 원료*와 ②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 * (고시형 원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개별인정형 원료) 국립축산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요양용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적으로 섭취·소화·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 반려동물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반려동물에게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려동물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용 사료는 ① 고시형 요양용사료*와 ② 개별인정형 요양용사료**로 구분 * (고시형 요양용사료) 대한수의사회, 국립축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에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제조·가공할 수 있는 사료 ** (개별인정형 요양용사료) 대한수의사회, 국립축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제조·가공할 수 있는 사료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분류 방법은 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반려동물사료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도 증가 등
 - 주식사료, 간식사료, 특수목적사료(영양보충사료, 기능성사료 및 요양용사료) 등 신제품 출시 증가 통한 반려동물사료 산업 활성화
 - 다양한 반려동물사료 선택권 확보 통한 소비자 만족도 증가 등

②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영업 범위 별도 관리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규제 현황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자는 등록 의무, 수입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으나 판매업자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
 - 반려동물사료 감독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판매업자에게 등록 의무 부과*
- * (일본)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소매의 경우 제외)에게 판매한 반려동물사료의 명칭, 수량 등 관련 내용 기재 의무 부과

□ 관련 법령

- 사료 영업 범위
 - 제조업, 제조업자, 수입업,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으로 구분

[표 2-55] 사료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구분	주요 내용
제조업	•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
제조업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수입업	•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 포함)하는 업
수입업자	•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업자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 사료 영업 등록 및 신고 의무
 - (제조업)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의무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 (수입업) 사료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의무

사료관리법 제19조 (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행위

사료관리법 제14조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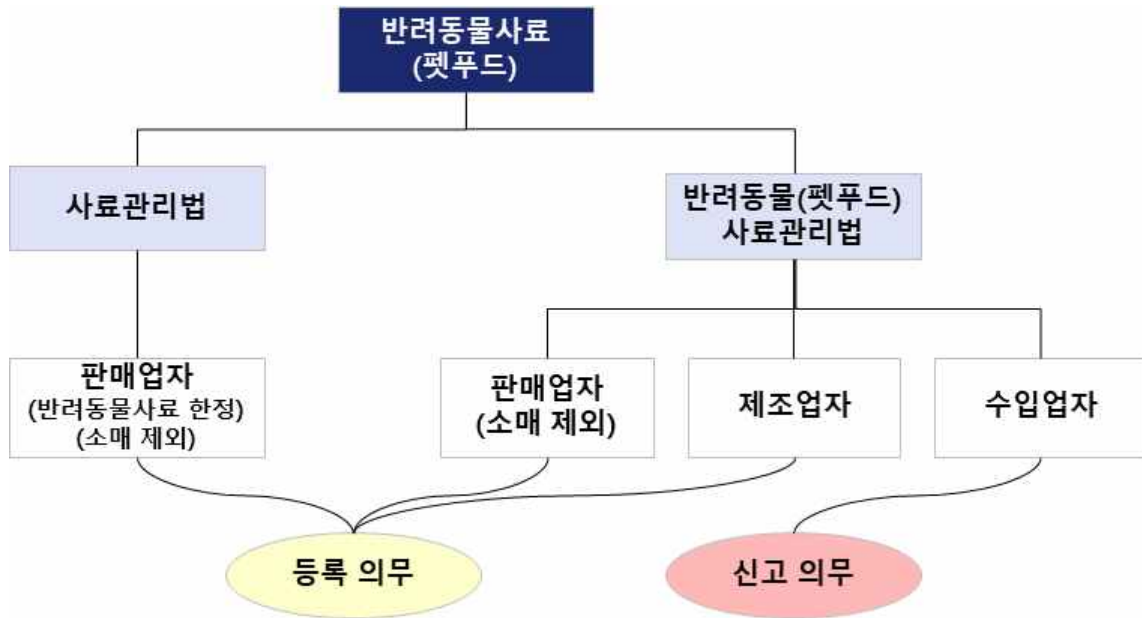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 개선 방안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영업 관리 강화 검토 필요
 - (사료관리법 상 반려동물사료*) 판매업자(소매 제외)에게 등록 의무 부과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배합사료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애완용동물) 포함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 혼합성 단미사료(애완용동물의 간식용),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 혼합성 단미사료(애완용동물의 영양보충용) 포함
 - (반려동물사료관리법 상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소매 제외)에게 등록/신고 의무 부과
 - 반려동물사료 판매 소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

[그림 2-24]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영업관리 개선(안) 예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 기대 효과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영업 관리 강화 통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강화 기반 마련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그 제조·수입·판매하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정확한 표시의무 부과 (예) 명칭, 수량 등

③ 정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 역량 강화 필요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 규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7호)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장 내역 개선 				

□ 규제 현황

- 정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 역량 강화 필요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관할
 - (일본)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내 축수산안전관리과에 「반려동물용사료대책반」을 별도로 두고 반려동물사료(펫푸드)를 산업동물사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 (반려동물용사료대책반) 반려동물사료(펫푸드)의 기준 및 규격 인정·지도, 제조업자 등의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 확충 추진

□ 관련 법령

-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 (인원현황) 총 10명 (반려동물 영업 1명, 반려동물 산업 1명 포함)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야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 ⑫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7호), 재구성

□ 개선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반려동물정책과를 별도 분리하여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전담 관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인원확충 예시) 총 5명(총괄 1명, 반려동물 정책 1명, 반려동물 사료 1명, 반려동물 보호 1명, 반려동물 관련 산업 1명)
- 또한 연구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원의 확충에 대한 검토 필요

[표 2-56] 정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 전담 조직 확충 개선(안) 예시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야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정책과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사료, 보호 및 관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사료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7호), 재구성

□ 기대 효과

- 정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 역량 강화 통한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도모

④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전문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비고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규제 현황

- 해외 선진국은 반려동물 관련 민간협의체가 정한 자율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
 -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미국사료협회(AAFCO) 간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의 원료 및 제조표준, 표시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
 - (유럽)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FEDAIF), 반려동물사료 산업계 공동체 규범 정립
 - (일본) 일본애완동물사료협회(JPFA), 안전한 반려동물사료 제조 실시 기준 제정
 - (일본) 일본반려동물요법식평가센터 (JVDEC), 요법식 기준 정비 및 영양표준 정의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전문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계의 ‘자율’ 과 ‘책임’ 을 동시에 장려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국내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

□ 관련 법령

- 민간업계 의견 반영 관련 주요 내용 : 사료 성분등록
 -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성분등록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사료공정의 설정 등)

제8조(사료공정의 설정 등)

①-⑩ 생략

⑪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9조 (사료의 성분등록)

제9조(사료의 성분등록)

①-⑪ 생략

⑫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성분등록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 민간업계 의견 반영 관련 주요 내용 : 사료 표시 및 광고

- 사료관련 단체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사료관련 단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0조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제10조(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① 생략

②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제2항에 의거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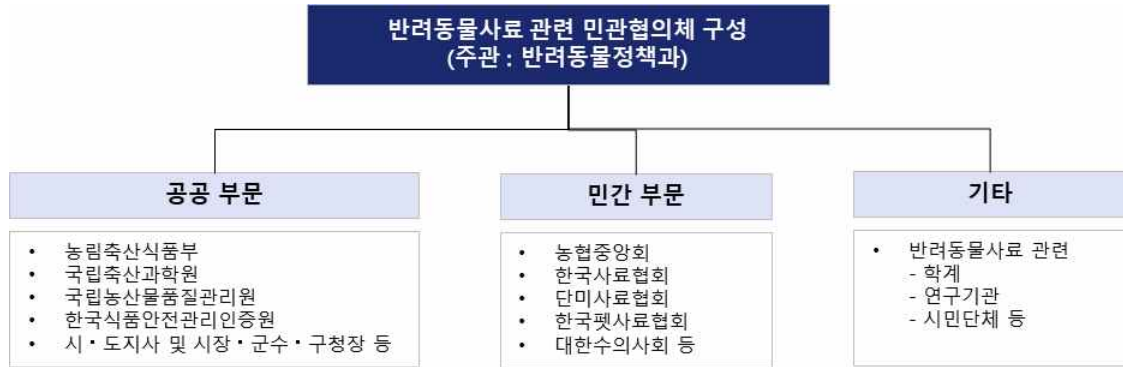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 민간업계 의견 반영이 사료 성분등록, 표시 및 광고에 한정되어 있어, 사료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계의 의견 반영이 필요

□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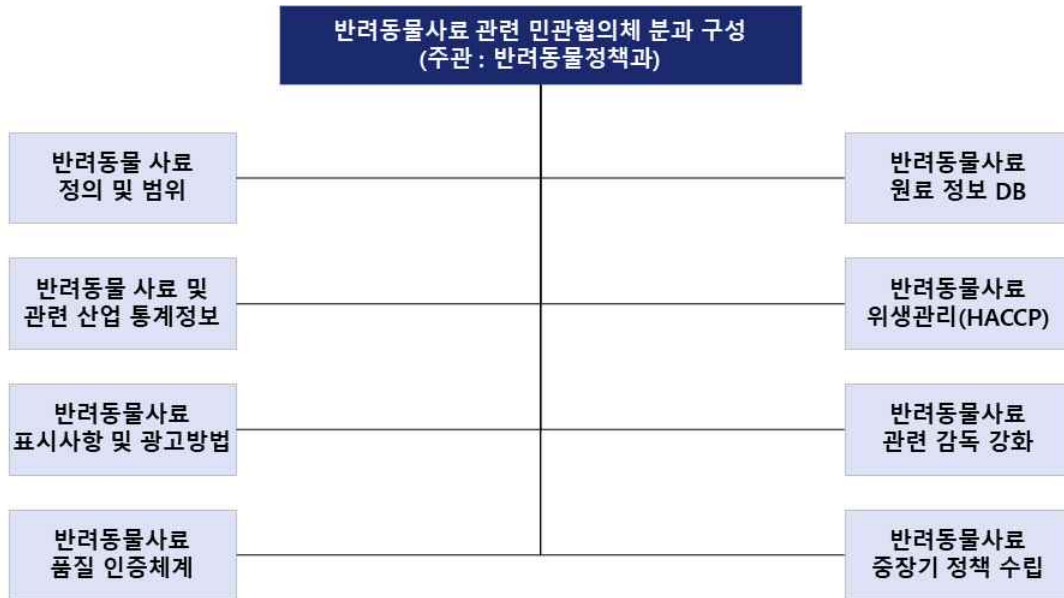
- 국내 반려동물사료 산업 육성과 합리적·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조·유통·소비·안전 관련 기준 및 제도 마련 검토 필요
- (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 (민)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한국펫사료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 (기타) 반려동물사료 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

[그림 2-25] 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안) 예시



- 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관 협의체 분과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
 - 분과별 목적 및 참여기관 등 관련성을 검토하여 소그룹으로 재편할 것을 권고

[그림 2-26] 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관 협의체 분과 구성(안) 예시



□ 기대 효과

- 전문성 있는 민간 부문 참여 확대 통한 반려동물사료 산업의 자율규제 및 산업 활성화 도모

5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제공 기반 마련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법령 단위	신법 제정 정책 제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 규제 현황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업계, 소비자,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통계정보 제공 기반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미국, 일본) 반려동물사료 관련 민간협회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실태를 매년 조사
 - (미국) 국가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반려동물사료 산업을 별도 구분·분리하여, 제조, 유통 및 소비 동향 관련 통계정보 제공
- 국내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의 정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방법 개선 필요

□ 관련 법령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통계 현황 : 종합 요약
 - 국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은행 등에서 제조, 유통, 소비 부문에 걸쳐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를 작성 및 공표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 작성이 독립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표 2-57] 국내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 제공 내역 종합 요약

구분	통계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반려동물사료 관련 항목구분	
제조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전수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품목	애완동물사료
	동물용 조제식품				
경제총조사	통계청	전수조사	업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	

구분	통계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반려동물사료 관련 항목구분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 사용실적	농림축산 식품부	배합사료 제조업 전수조사	품목	애완동물사료 (애완개, 애완고양이, 관상용어류, 기타애완동물)
	생산자 물가조사	한국은행	표본조사	품목	애완동물사료
제조, 유통, 소비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청	전수조사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조사	통계청	표본조사	업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소비	가계동향조사 (지출편)	통계청	표본조사	품목	애완동물 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표본조사	품목	애완동물 용품
					애완동물 관리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통계 현황 : 한국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분류 체계
 - 반려동물사료 제조업은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제조업의 하위 항목으로 통합되어 있어, 반려동물사료 제조업 관련 상세 현황과 동향 파악에 한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 가금류를 포함한 가축용, 어류 양식용, **애완동물용**, 실험 동물용 각종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 어류용 배합사료 제조
 - 애완동물용, 실험 동물용 배합사료 제조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배합사료용 혼합 조제품 및 조제 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개 껌 및 비스킷 등의 애완동물용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동물사료용의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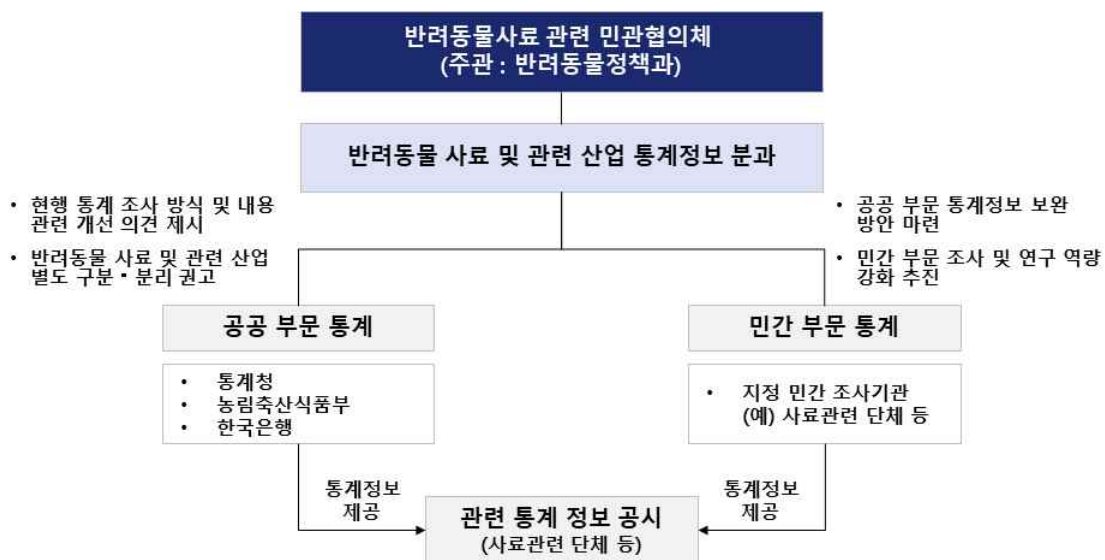
- <예시>
- 단미사료(원료사료) 제조
 - 비스킷 제조(동물용)
 - 조제 보조사료 제조
 - 동물사료용 재료 분쇄물 생산
 - 음식폐기물 가공 단미사료 생산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재구성

□ 개선 방안

- 민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통계 조사방법 개선 및 민간 부문 통계 정보 확보 검토 필요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분과 중심 통계정보 제공 기반 마련 추진
- 공공 부문 통계 개선(안)
 - 통계정보 제공 주체 대상 현행 통계 조사 방식 및 내용 관련 개선 의견 제시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을 별도 구분·분리하여 통계정보 작성 및 제공 권고
- 민간 부문 통계 개선(안)
 - 공공 부문 제공 통계정보 보완 방안 마련
 - 사료관련 단체 등 지정 민간 조사기관 중심 민간 부문 조사 및 연구 역량 강화 추진
 - (사료관련 단체 등)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 통계 정보 공시

[그림 2-27]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제공 개선(안)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에서 '반려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하여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 검토 필요

[표 2-58]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개선(안) 예시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 반려동물 관련 사료 제외
	반려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용 주식사료 제조업 (10901) • 반려동물용 간식사료 제조업 (10902) • 반려동물용 특수목적사료 제조업 (10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보충사료 제조업 - 기능성사료 제조업 - 요양용사료 제조업 ※ 반려견 및 반려묘 대상 • 기타 반려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904) ※ 반려견 및 반려묘 제외 기타 반려동물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재구성

□ 기대 효과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제공 통한 공공·민간 부문 의사결정 지원
 - 반려동물사료 관련 업계, 소비자,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통계정보 제공

⑥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확대 따른 표시사항 및 광고방법 변경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규제 현황

- 주식사료, 간식사료, 특수목적사료(영양보충사료, 기능성사료 및 요양용사료) 등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확대에 따른 표시 사항 및 방법 변경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은 특수목적사료 관련 영양기준 등을 사전 지정하여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

[표 2-59] 특수목적사료 관련 국가별 주요 쟁점 사항 비교

구분	주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FDA의 가이드라인(FDA Compliance Policy Guidance) 형태로 존재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의 질환을 진단(Diagnose)하고, 치료(Cure)하고, 완화(Mitigate)하며, 관리(Treat)하고, 그리고 예방(Prevent)하는 목적을 위한 마케팅 및 표시사항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FDA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의사의 관리 하에 판매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FEDIAF)의 영양기준에 따라 만성신부전, 소화불량, 피부질환 등 35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은 목적, 특성, 대상 종, 표시사항, 권장기간, 기타로 구성 - (급여 시) 수의사 의견을 구하는 것을 권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약 시행규칙 해설서에 미국사료협회(AAFCO)의 영양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사료’는 일반적으로 ‘요법식’이라 명명되며, 영양 성분의 양과 비율이 조정되어 특정 질병 또는 건강 상태에 있는 반려동물의 영양학적 지원을 목적 - ‘처방식’은 사료가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음 - (급여 시) 수의사 처방을 권고하고 있음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 관련 법령

○ 사료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관련 주요 내용

-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에 따른 [별표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규정

[표 2-60] 사료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별표 4] (제14조 관련)

배합사료 표시사항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6) 주의사항	5) 사료의 용도
7) 사료의 용도	6) 주의사항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7)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8)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0)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1)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재구성

-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 및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으로 구분
- (사료의 용도)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 금지

[표 2-61]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별표 4] (제14조 관련) - 배합사료

표시장소	표시사항	내용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① 사료성분등록번호	-
	②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명칭) “성장단계+동물명(혹은 동물종류)” 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성장단계에 해당할 경우 “성장단계” 생략 가능

표시장소	표시사항	내용
		• (형태)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
	③ 등록성분량	•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며, 최저량은 “이상”, 최대량은 “이하” 를 표시
	④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작성 • 단미사료 중 광물성과 보조사료의 경우 “위 사용 원료는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⑤ 동물의약품 첨가내용	-
	⑥ 사료의 용도	•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표시 • <u>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하여서는 아니 됨</u>
	⑦ 실제 중량	•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개수로 표시
	⑧ 제조(수입) 연월일, 유통기간, 유통기한	• 제조(수입) 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시
기타 표시면	① 주의사항	•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 표시
	② 제조(수입)업자 정보	•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
	③ 재포장 내용 (생략 가능)	• 재포장 사유·날짜·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를 표시하고 등록성분량은 재포장 전에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기재
	④ 기타사항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재구성

○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관련 주요 내용

- 사료 관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제10조제1호 관련)

1.-3. 생략

4.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외국어로 표시·광고한 것을 포함한다)

가.-다. 생략

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1)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음

3)-4) 생략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제10조제1호 관련)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 의약품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기계·장치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어 빈혈예방, 고혈압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약사법」 제61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서류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마.-타. 생략

파. 소비자가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파의 2. 생략

하. 허위 및 과장 표시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

1) 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동물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동물의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료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사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특수용도사료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령동물의 영양보급, 아픈 동물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6) 사료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사료가 어린동물, 아픈동물 등으로 급여하는 특수용도사료라는 표현

나) 해당 사료가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노령기 등 동물의 특정 성장단계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사료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7) 해당 제품의 사료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급여방법 또는 급여량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8) 생략

5.-7.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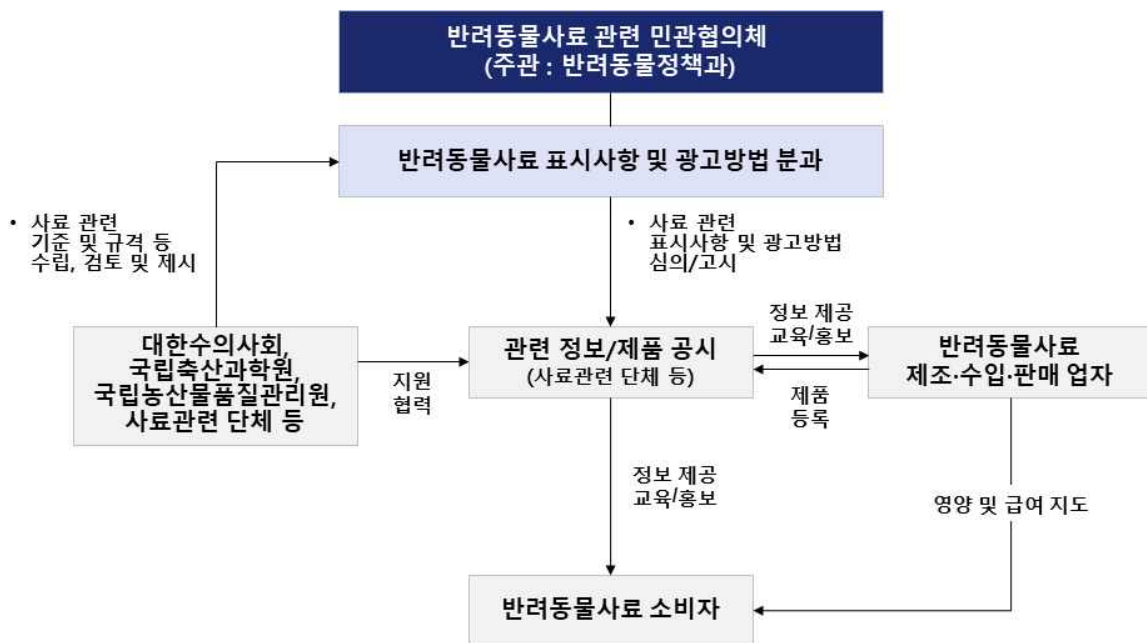
□ 개선 방안

○ 사료 관련 기준 및 규격 등을 사전 지정하고, 이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

- (대한수의사회,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관련 단체 등) 사료 관련 기준 및 규격 등 수립, 검토 및 제시

-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및 광고방법 분과) 사료 관련 표시사항 및 광고방법 심의/고시
- (사료관련 단체 등) 사료 관련 정보/제품 공시,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 (반려동물사료 제조·수입·판매 업자) 사료 관련 제품 등록, 반려동물사료 소비자 대상 사료 관련 영양 및 급여 기준 지도 등

[그림 2-28] 사료 영양 및 급여 기준 사전 지정 통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개선(안) 예시



□ 기대 효과

- 주식사료, 간식사료, 특수목적사료(영양보충사료, 기능성사료 및 요양용사료) 등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확대에 따른 표시 사항 및 방법 변경을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만족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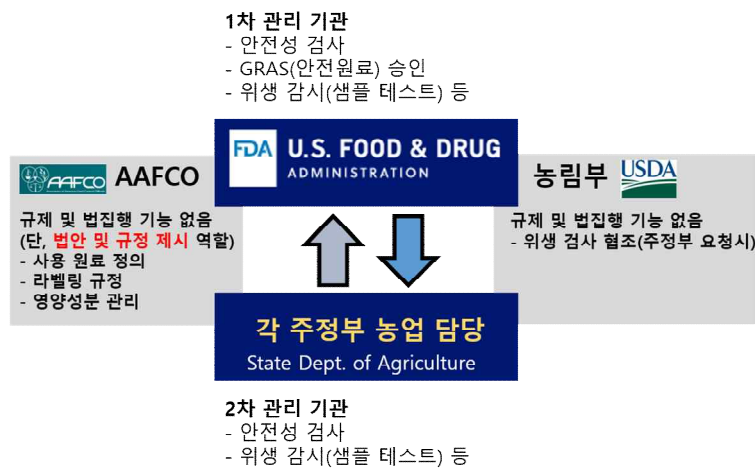
7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비고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규제 현황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를 구축, 국산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추진
 - 전문가, 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품질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산 제품의 원료성분, 표시사항 등을 평가하고, 우수제품 홍보체계 구축
- 미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정책 거버넌스 사례
 - 미국사료협회(AAFCO)는 규제에 대한 집행 기능이 없는 독립 주체로 FDA와 협업을 통해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개정 및 반려동물사료의 원료에 대한 정의, 영양 기준치 등을 설정하며, 입법 지침(Model Bill)을 마련*
 - * FDA는 미국 반려동물사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차 관리기관으로 안전성검사, 제조 원료에 대한 승인 및 위생 등 반려동물사료 안전 전반에 대해 포괄적 관리
 - * 각 주별 농업부는 반려동물사료 관련 2차 관리기관으로 반려동물사료의 제조, 유통, 수입 과정에서 허가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그림 2-29] 미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정책 거버넌스 사례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재구성

□ 관련 법령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 관련 주요 업무

- 사료 및 유해물질의 범위, 기준과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의 사료공정을 설정
-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사료성분표의 발간
-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축종별 사양표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사료공정의 설정 등)

제8조(사료공정의 설정 등)

①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완료하고 국립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 관련 주요 업무

- 사료검정기관의 사료표준분석방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실시
- 사료의 검사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하며, 사료시험검사기관·검정기관의 검정능력을 관리
- 사료의 검정 업무를 수행*
 - * "사료검정"이라 함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물검사와 규칙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관능적·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성상·등록성분 또는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분석하거나 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감별하는 것을 말함
- (기타) 유기농업자재 인증 및 공시*, 유기사료 인증 관리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 (사료표준분석방법)

제13조(사료표준분석방법)

- ①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사료표준분석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 ② 국립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표준분석방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료표준분석방법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 (사료표준분석방법)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시험연구소장에게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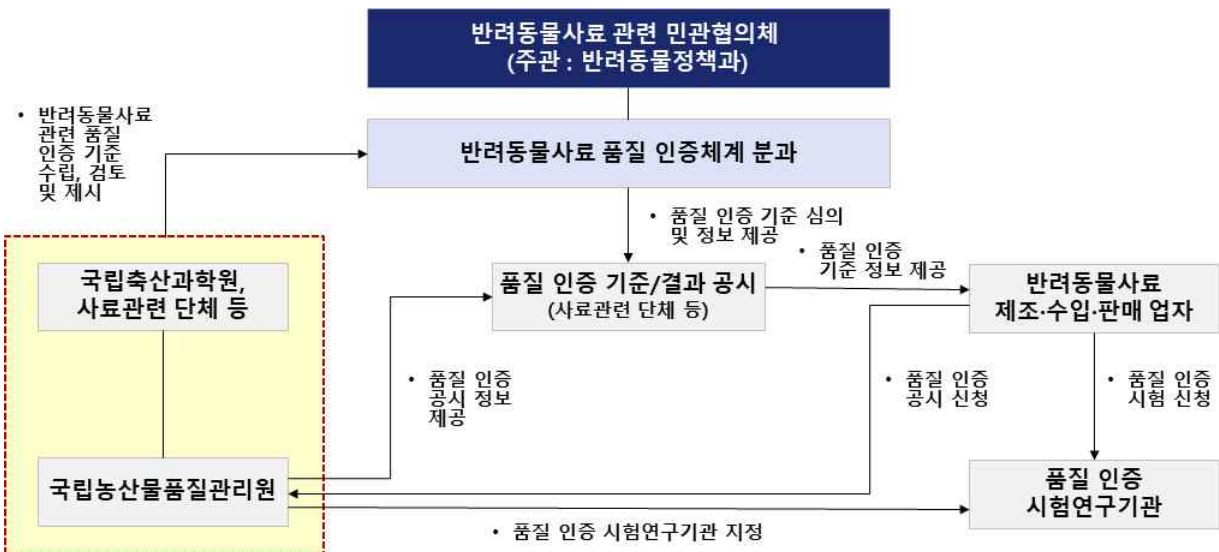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료표준분석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고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시 개정 전에도 사료표준분석방법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 개선 방안

-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검토 필요

[그림 2-30]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개선(안) 예시



-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관련 단체 등) 반려동물사료 관련 품질 인증 기준 수립, 검토 및 제시
- (반려동물사료 품질 인증체계 분과) 반려동물사료 관련 품질 인증 기준 심의 및 정보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반려동물사료 관련 품질 인증 시험연구기관 지정, 비식용 유기농식품 제도 운영
- (사료관련 단체 등) 반려동물사료 관련 품질 인증 기준 공시 및 정보 제공

- (반려동물사료 제조·수입·판매 업자) 반려동물사료 관련 품질 인증 시험 신청
- (품질 인증 시험연구기관) 반려동물사료 관련 품질 인증 시험 실시
- (반려동물사료 제조·수입·판매 업자) 반려동물사료 관련 품질 인증 공시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반려동물사료 관련 품질 인증 공시 정보 제공
- (사료관련 단체 등) 반려동물사료 관련 품질 인증 공시

□ 기대 효과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민관 합동 품질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국산 반려동물 사료(펫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만족도 제고 및 소비 활성화

⑧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원료 정보 DB 구축 체계 마련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규제 현황

- 다양한 제품의 개발·출시가 가능토록 원료 범위를 식품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품 검정·검사 강화* 등 원료의 품질 및 안전성 기준 정비 추진
 - * (품질) 등록성분량, 원료 함량 등 / (안전성)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 현행 「사료관리법」의 기준 및 규격은 산업동물용사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고품질화 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 제시할 필요
- 해외 선진국은 반려동물 사료의 기준 및 정의에 있어, 민간협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 소비 동향에 발맞춘 유기적 변화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사료협회(AAFCO)는 온라인 원료 DB(ODI, On-Line Database Ingredients)를 운영하며, 사료 원료 명칭 및 정의 등 DB 관한 공공 접근성을 확대하고 실시간 개정 가능 등 사료 원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

□ 관련 법령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 관련 주요 업무
 - 사료 및 유해물질의 범위, 기준과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의 사료공정을 설정
 -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사료성분표의 발간
 -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축종별 사양표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
 - 사료의 검정 업무를 수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4조 (사료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14조(사료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사료성분표의 발간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축종별 사양표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4조 (사료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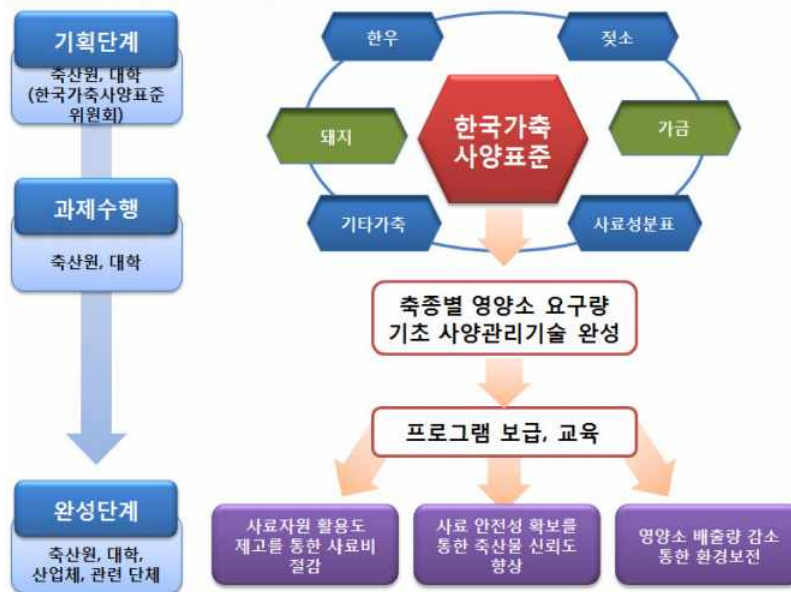
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료영양분석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5년 주기로 사료성분표와 사료영양정보총람, 축종별 사양표준 등으로 각각 작성·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성분표 관련 주요 업무

- 사료 관련 산학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방향을 설정하고, 각 축종별로 필요한 분야를 연구사업 수행이나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 수집 후 국내 축산 환경을 반영하여 매 5년마다 작성·공표

[그림 2-31] 축종별 한국가축사양표준 활용 및 개정 방향



자료 : 한국사료협회 (2016)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한국가축사양표준의 활용 방안,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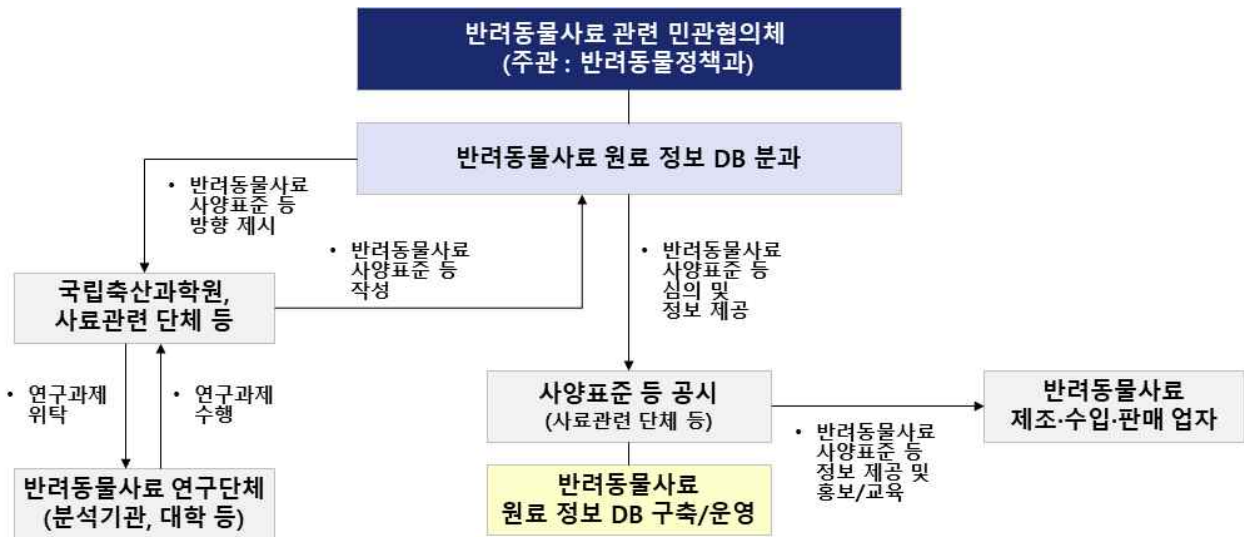
- 2017년 표준사료성분표는 국내 사료분석기관(한국사료협회·농협경제지주(주)축산연구원·한국단미사료협회)과 공동으로 사료원료의 구매 변화를 반영해 작성됐고, 수입 원료사료를 비롯해 농식품 부산물과 수입 풀사료까지 각각 자료 범위가 확장*
- * 한국표준사료성분표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1,236건 사료의 일반성분, 무기물, 아미노산, 비타민 등을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서 제공
- * 2017년 개정판 기준 축종별 사양표준은 한우, 젓소, 돼지, 가금(닭, 오리) 등만 취급

□ 개선 방안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사료 원료 정보 DB 구축 검토 필요
 - 민관 협의에 따라 반려동물사료 원료 정의 및 기준 등 설정
 -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작성 및 원료 정보 DB 구축/운영 민간 위임 등

-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원료 정보 DB 구축 프로세스
 - (반려동물사료 원료 정보 DB 분과)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방향 제시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관련 단체 등)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관련 연구과제 위탁
 - (분석기관, 대학 등 반려동물사료 연구단체) 사양표준 등 관련 연구과제 수행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관련 단체 등)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작성
 - (반려동물사료 원료 정보 DB 분과)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심의 및 정보 제공
 - (사료관련 단체 등) 반려동물사료 원료 정보 DB 구축/운영, 반려동물사료 사양표준 등 정보 제공 및 홍보/교육

[그림 2-32]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원료 정보 DB 구축 체계 개선(안) 예시



□ 기대 효과

- 사양표준 등 작성 및 원료 정보 DB 구축/운영 통한 다양한 반려동물사료 개발 및 수입 대체 효과

9]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위생관리(HACCP) 강화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비고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규제 현황

-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위생관리(HACCP) 기준 및 사료 안정성 강화 필요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의미
 - 현재 반려동물사료 전용 위생관리(HACCP) 기준이 부재하여 신설이 필요한 상황

□ 관련 법령

- 축산물의 안전성이 중시되면서 사료 안전에 관한 관심과 위생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배합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제도를 도입
 - 사료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포장·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료 관련 주요 업무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담당기관으로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의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한 평가를 실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 (담당기관 지정 등)

제9조(담당기관 지정 등)

①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 (담당기관 지정 등)

② 담당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심사 및 제11조에 따른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재구성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교육훈련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2 (교육훈련 등)

제9조의2(교육훈련 등)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재구성

- 사료공장 HACCP 인증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

* [별지 1] 배합사료(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외)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

* [별지 2]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등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

** 2020.1.2. 기준 HACCP 인증 사료업체는 총 219개사이며, 반려동물사료(배합사료, 단미사료) 제조업체는 21개사로 잠정 집계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평가방법 등)

제10조(HACCP 적용 사료공장의 평가방법 등)

① 담당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 정기심사 및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⑦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전 담당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의한 유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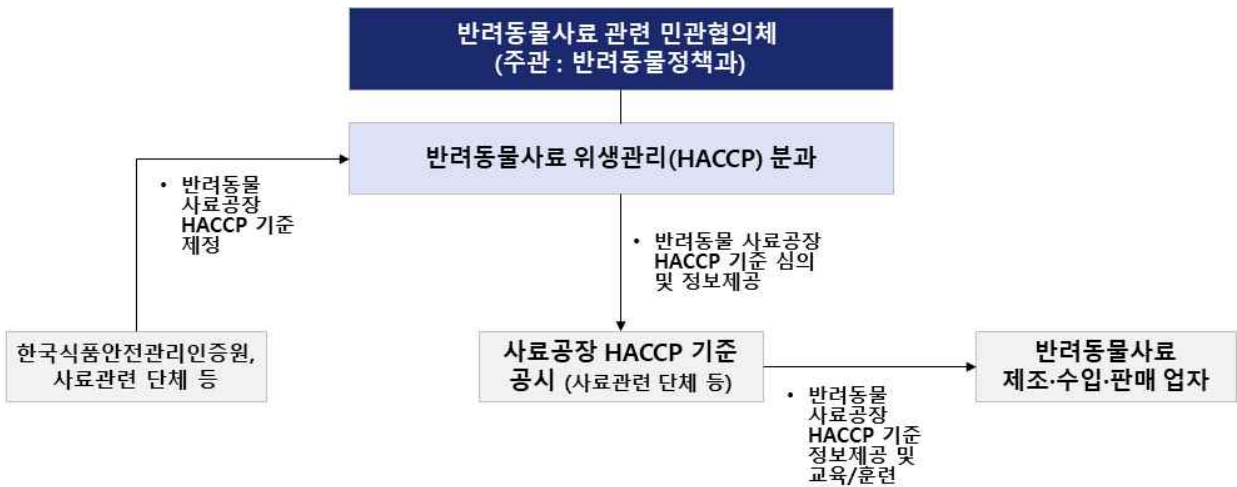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재구성

□ 개선 방안

- 반려동물사료 전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는 부재하여 신설이 필요
 - 특히 소규모 공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건사료 공장용(주식사료)과 소규모 공장용(간식사료)으로 구분할 필요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위생관리(HACCP) 강화 검토 필요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료관련 단체 등) 반려동물 사료공장 HACCP 기준 제정
 - (반려동물사료 위생관리(HACCP) 분과) 반려동물 사료공장 HACCP 기준 심의 및 정보제공
 - (사료관련 단체 등) 반려동물 사료공장 HACCP 기준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그림 2-34]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위생관리(HACCP) 강화 개선(안) 예시



□ 기대 효과

-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사료공장 HACCP 기준 제정 통한 사료 안정성 강화 및 소비자 만족도 증가

Ⅱ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강화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규제 현황

- 선진국 경우 사료 장부 기재사항 관련 구체적 항목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사료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음
 - (EU) 역내 모든 농식품 및 사료업계에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력추적제도 의무화*
 - * 일반식품법 시행으로, 해당 업계는 투입재와 생산물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담당기관에게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권 부여
 - * 주요 특징으로는 작업 단계별 바로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업종간 연계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이력추적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 결정을 인정
 - (미국) 식품 및 사료의 제조·가공·포장·수송·분배·수령·보관 또는 수입하는 경우 최소 2년간 관련 기록 작성 유지 의무. FDA에게 기록검사권 부여
 - (일본) 제조·수입·유통 등 사업주체별 구체적 기재사항 마련 및 전자문서화*
 - * 만일의 경우 제품의 폐기·회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사료 관련 업계에 사업자 신고 및 장부 비치의 의무를 부여
 - * 농림수산대신, 환경대신 및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에게 해당 업체의 장부 비치 유무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반려동물사료 추적 관리체계 제도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등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사료 장부 비치 관련, 제조·판매·유통 각 단계에서 장부 기재사항의 구체화 및 전자문서화 추진
 - 반려동물사료의 제조·수입·유통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① 관련 규정 제정, ② 사업자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제도화, ③ 사료 이상 시 폐기·회수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 관련 법령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감독 관련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음*

* 사료검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

사료관리법 제21조 (사료검사)

제21조(사료검사)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료검사원의 자격·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재구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수거량·검정의뢰 등)

제20조(수거량·검정의뢰 등)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이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는 물량은 별표 10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사료검사원은 그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封緘)하고 사료검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으로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수거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수거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재구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제27조(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사료검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재구성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감독 관련 개선 필요성

- 사료검사원은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에 대한 장부(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록제품 배합비율표 등) 및 자가품질검사대장에 한하여 연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함이 규정되어 있음
- 반면,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의 장부비치 의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사료의 형태, 제조번호, 수량 등 구체적 의무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장부비치 적용대상)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사기관

[표 2-62] 사료 관련 장부 비치대상 및 기재사항

장부 비치대상	장부 기재사항
배합사료 제조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수불대장(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 •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와 무첨가사료 구분) •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 등록제품배합율표(배합율표·제품성분표·원료성분표 등)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수불대장 •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결과)
수입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수불대장 • 제품판매대장 •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분석결과)
판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수불 및 판매대장
사료시험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대장 • 사료검정증명서
사료검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대장 • 사료검정기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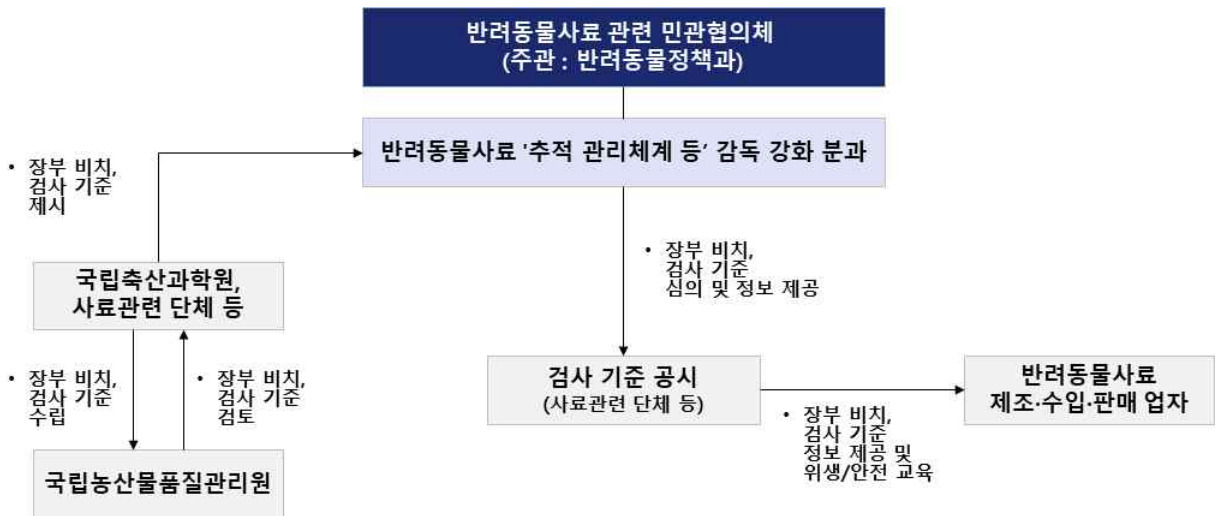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재구성

주) [기재방법] 종이·전자 문서, [보존기간] 8년(원료수불대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등)

□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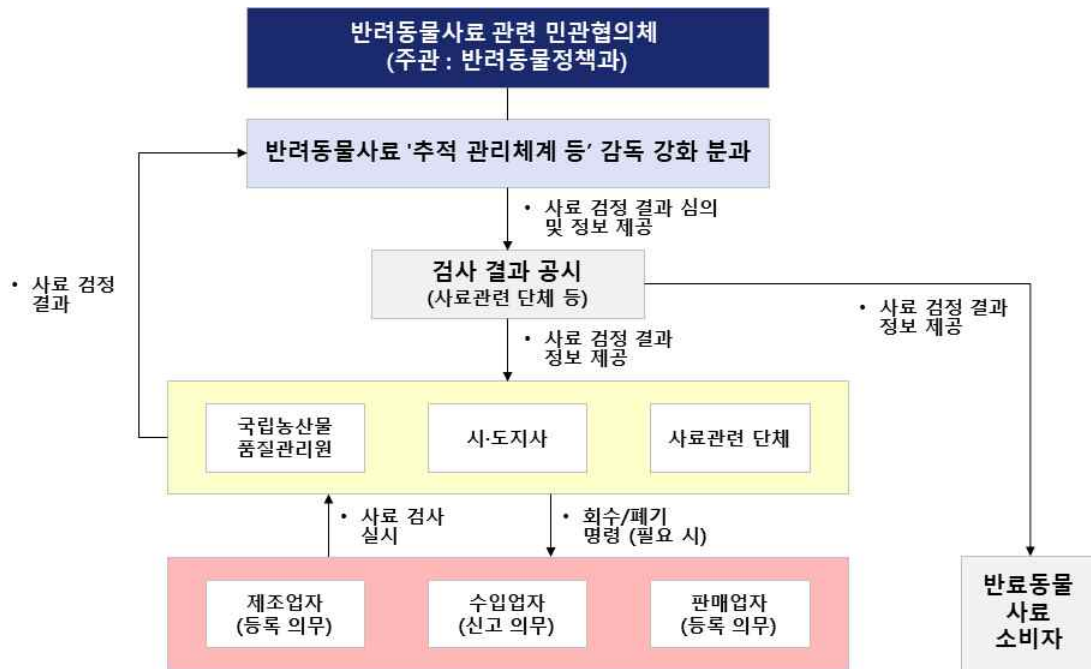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개선 검토 필요
 - : 관련 규정 제정 및 위생·안전 교육 프로세스 개선(안) 예시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관련 단체 등) 장부 비치, 검사 기준 수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부 비치, 검사 기준 검토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관련 단체 등) 장부 비치, 검사 기준 제시
 - (반려동물사료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강화 분과) 장부 비치, 검사 기준 심의 및 정보 제공
 - (사료관련 단체 등) 검사 기준 공시. 장부 비치, 검사 기준 정보 제공 및 위생/안전 교육

[그림 2-34]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개선(안) 예시 : 관련 규정 제정 및 위생·안전 교육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개선 검토 필요
 - : 사료 이상 시 폐기·회수 프로세스 개선(안) 예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사료관련 단체) 사료 검사 실시 등
 - (반려동물사료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강화 분과) 사료 검정 결과 심의 및 정보 제공
 - (사료관련 단체 등) 검사 결과 공시. 사료 검정 결과 정보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사료관련 단체) 회수/폐기 명령 (필요 시)

[그림 2-35]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개선(안) 예시 : 사료 문제 발생 시 폐기·회수



□ 기대 효과

- 사업주체별 구체적 사료 장부 기재사항 마련 및 전자문서화 통한 반려동물사료의 안전 문제 발생에 사전 대비 강화

㉑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관리 전담 민간지원조직 설립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정책 제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규제 현황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 민간지원조직 설립 추진 필요
 - 신산업 육성 및 지원 목적의 ‘진흥원’ 형태 기관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 시키는 사례 다수 존재*
 - *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관련 법령

- 공공기관 지정 및 신설 관련 주요 내용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육성 전담 민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전담 민간지원조직 신설 계획서는 ①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②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③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④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 ⑤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⑥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6.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구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구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 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 2.-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구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구성

○ 공공기관 지정 및 신설 관련 주요 사례

-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술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5. 삭제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⑦ 정부는 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⑧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산업진흥법, 재구성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①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전시·홍보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4. 지능형 로봇윤리현장의 실행·홍보에 관한 사업
 5. 지능형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확산에 관한 사업
 6.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8.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9.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10. 삭제
 1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12.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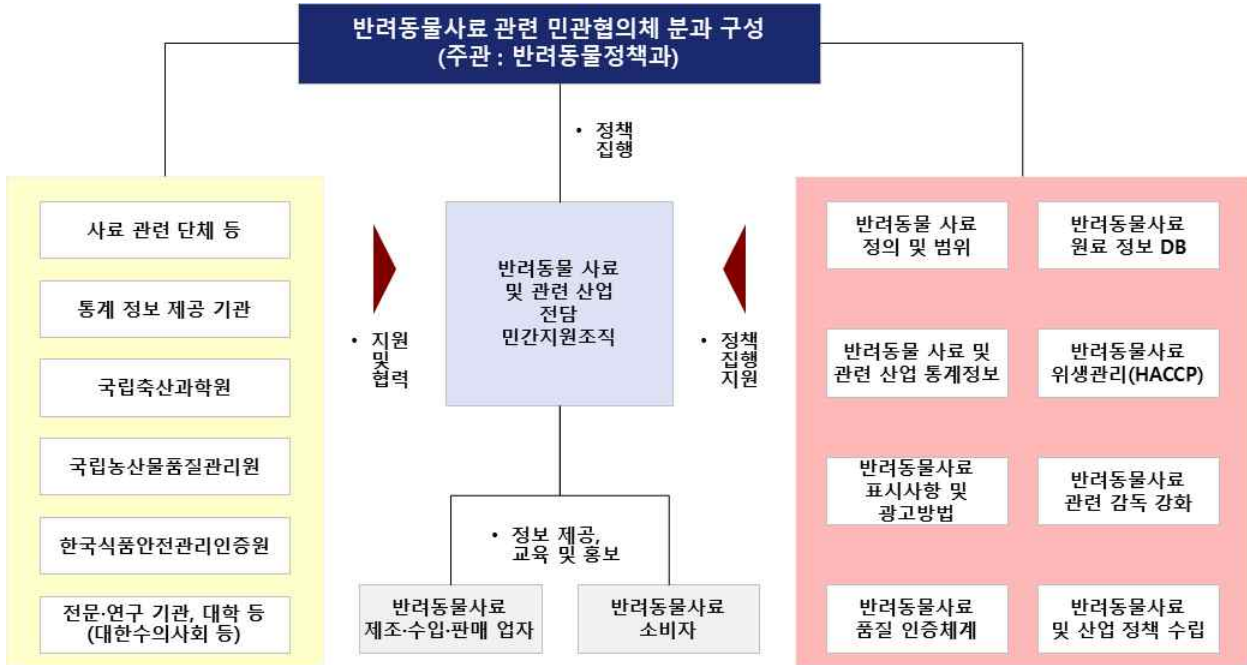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재구성

□ 개선 방안

- 반려동물사료 산업 진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 민간지원조직(‘진흥원’ 형태) 설립 검토 필요
 -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식수준 향상,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자들의 인식 개선 등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관리 전담 민간지원조직 사업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개발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시장 조사·분석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제공 기반 마련
 - 반려동물사료 범위 확대 따른 표시사항 및 광고방법 변경
 -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 품질 인증체계 구축
 - 반려동물사료 원료 정보 DB 구축 체계 마련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위생관리(HACCP) 강화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강화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의 창업·성장 등 지원사업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그림 2-36]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전담 민간지원조직 설립 개선(안) 예시



□ 기대 효과

- 전담 민간지원조직(‘진흥원’ 형태) 설립 통한 반려동물사료 산업 진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㉒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 위한 정책 수립·개발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신법 제정
비고	• (가칭)「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규제 현황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 수립·개발 필요
 - 신산업 육성 및 지원 목적의 중장기(5년 주기) 정책 수립·개발 법제화 사례 다수 존재*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관련 법령

- 신산업 육성 및 지원 목적의 중장기 정책 수립·개발 관련 주요 사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방안
6.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현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재구성

□ 개선 방안

- 반려동물사료 산업 진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개발 검토 필요

[그림 2-37] 반려동물사료 및 관련 산업 등 지원 목적 중장기 정책 수립·개발 관련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반려동물사료 산업 진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개발 통한 반려동물 복지 증대 및 신산업 활성화

13 곤충 등 대체 동물성 단백질 활용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개발

신산업 분야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시행규칙 고사·훈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공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용곤충 9종 ('20년 7월)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제4조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 제1호 나목1]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 규제 현황

- 반려동물 사료 제조 원료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제품의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다양한 원재료를 개발할 필요
 - 식용 곤충 등 대체 동물성 단백질을 반려동물 사료의 원재료로 활용하여 기능성,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식용 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
 - * 사료용 곤충의 사육기준을 추가한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
 - 사료용 곤충도 식용 곤충과 같은 수준으로 사육 시설·관리기준과 사육일지 기록 근거 마련
 - 환경정화용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를 먹이로 할 수 없도록 제한
-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20년 9월)
 - (곤충) 산업화 가능성이 큰 곤충을 「축산법」 상 가축으로 추가하여 곤충시장 확대 (' 21, 농식품부)*
 - * (현재)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등 14종 → (추가) 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관련 법령

- (식품공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용곤충 9종 ('20년 7월)
 - 1.메뚜기, 2.백강잠, 3.식용누에(유충·번데기), 4.갈색거저리(유충), 5.쌍별귀뚜라미(성충), 6.흰점박이꽃무지(유충), 7.장수풍뎅이(유충), 8.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탈지 분말)*, 9.수벌 (번데기)*
 - * 한시인정원료

[표 2-63] (식품공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용곤충 9종

연번	품목명		학명 또는 특징	비고
1	메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xya japonica</i> Thunbe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래적 식용곤거로 원료 인정
2	백강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에(<i>Bombyx mori</i> L.)의 유충이 백강병균 <i>eauveria bassiana</i> (Bals.) Vuill.의 감염에 의한 백강병으로 경직사한 몸체 	
3	식용누에 (유충번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Bombyx mori</i> L. 	
4	갈색거저리 (유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enebrio molitor</i> 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인정 원료 → 일반원료로 전환 (' 16.03)
5	쌍별귀뚜라미 (성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Gryllus bimaculatus</i> 	
6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rotaetia brevitarsi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인정 원료 → 일반원료로 전환 (' 16.12)
7	장수풍뎅이 (유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llomyrina dichotoma</i> 	
8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유충, 탈지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Zophobas atratu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인정 원료 (' 20.1.16)
9	수벌 (번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pis mellifera</i> 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인정 원료 (' 20.7.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국립농업과학원 (2020) ‘수벌 번데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재구성

○ 단미사료의 범위 중 동물성 종류

- (동물성)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 곤충류*, 플랑크톤류, 낙농가공부산물류*

* 1.거저리유충(밀웜·슈퍼밀웜), 2.건조귀뚜라미, 3.건조메뚜기, 4.동애등에유충, 5.번데기[번데기박을 포함], 6.장구벌레, 7.파리유충, 8.혼합곤충

[표 2-64] 단미사료의 범위 [별표 1] (제4조 관련)

구분	사용가능 물질
식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곡물), 강피류(곡물부산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조류,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동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 곤충류*, 플랑크톤류, 낙농가공부산물류 * 1.거저리유충(밀웜·슈퍼밀웜), 2.건조귀뚜라미, 3.건조메뚜기, 4.동애등에유충, 5.번데기[번데기박을 포함], 6.장구벌레, 7.파리유충, 8.혼합곤충
광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염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 미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류, 단세포단백질, 남은음식물, 반려동물음용수, 기타
혼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성 단미사료[둘 이상의 단미사료를 혼합한 것으로 각각의 단미사료는 혼합 전에 개별 단미사료의 기준 및 규격 등(열처리, 수분 등)을 충족하여야 함] ※ 반려동물의 간식용, 영양보충용은 소량의 보조사료(보존제와 향미제에 한함)를 첨가 가능 ※ 1. 식물성 ~ 4. 기타의 합제류 및 혼합류 사료를 제외한 것을 말함 ※ 보조사료 중 규산염제와 완충제는 광물성사료에 혼합시 단미사료로 인정하여 혼합광물질로 분류 가능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종류

- (동물성)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

[표 2-6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별표 1] (제1호 나목1)

구분	사용가능 물질
식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류, 곡물 부산물(강피류), 제약 부산물, 유지류, 박류(단백질류), 근피류, 식품 가공 부산물, 해조류, 섬유질류
동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
광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염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광물질 첨가물, 혼합 광물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재구성

□ 개선 방안

- 단미사료의 범위 중 동물성 종류에 반려동물용 곤충류 추가 검토 필요
 -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용곤충 9종 (식품공전, ‘20년 7월 기준) 추가*
 - * 1.메뚜기, 2.백강잠, 3.식용누에(유충·번데기), 4.갈색거저리(유충), 5.쌍별귀뚜라미 (성충), 6.흰점박이꽃무지(유충), 7.장수풍뎅이(유충), 8.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탈지 분말), 9.수벌 (번데기)

[표 2-66] 단미사료의 범위 [별표 1] (제4조 관련) 중 동물성 내 곤충류 개선(안) 예시

구분	사용가능 물질	
라. 곤충류	곤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저리유충(밀웍·슈퍼밀웍), 건조귀뚜라미, 건조메뚜기, 동애등에유충, 번데기[번데기박을 포함], 장구벌레, 파리유충, 혼합곤충
	<u>반려동물용 곤충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유충·번데기),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성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탈지 분말), 수벌 (번데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재구성

-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의 동물성 종류에 곤충류 추가 검토 필요
 -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용곤충 9종 (식품공전, ‘20년 7월 기준) 추가

[표 2-67]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별표 1] (제1호 나목1) 내 동물성 개선(안) 예시

구분	사용가능 물질
동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 <u>곤충류</u>* * 1.메뚜기, 2.백강잠, 3.식용누에(유충·번데기), 4.갈색거저리(유충), 5.쌍별귀뚜라미 (성충), 6.흰점박이꽃무지(유충), 7.장수풍뎅이(유충), 8.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탈지 분말), 9.수벌 (번데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재구성

□ 기대 효과

- 식용 곤충류 활용 다양한 고부가가치 반려동물사료 원료 개발 및 수입 대체 효과

6.5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방향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입법 제정 필요성
 - 반려동물 양육 규모 확대 따른 반려동물사료 수요 증가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특성을 반영한 관리 규제 부족
 - 반려동물용 고급 사료 시장 형성 따른 안전도, 성분 기준 및 규격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증가 등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 (제도정비 및 기반조성) 반려동물사료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및 고품질 사료를 중심으로 생산·유통기반 확충 추진*
 - * 반려동물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에 필요한 “소비자 지향적 품질 및 안전” 관련 정책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입법 제정을 위한 구성 요소
 - 반려동물사료 관리법에 대한 입법 방향은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의 안전과 일반 국민의 보건(위생) 및 경제적 유익성을 고려
 - 반려동물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과 안전이 인간의 식품과 유사한 수준과 방식으로 설정될 필요성 제기
 -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전문성 있는 민관협의체 주도하에 일반적인 표준화, 인증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
 -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방향은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규제
 -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입법 시 담겨야 할 사항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별도 관리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영업 범위 별도 관리
 - 정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 역량 강화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전문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산업 통계정보 제공 기반 마련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확대 따른 표시사항 및 광고방법 변경
- 민간 참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원료 정보 DB 구축 체계 마련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위생관리(HACCP) 강화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추적 관리체계 등' 감독 강화
-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 위한 정책 수립·개발
- 곤충 등 대체 동물성 단백질 활용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개발 등

7.1 산업 환경 분석

□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정의

○ 농약 법적 정의⁴⁴⁾

-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 동물 : 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법적 정의

-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농약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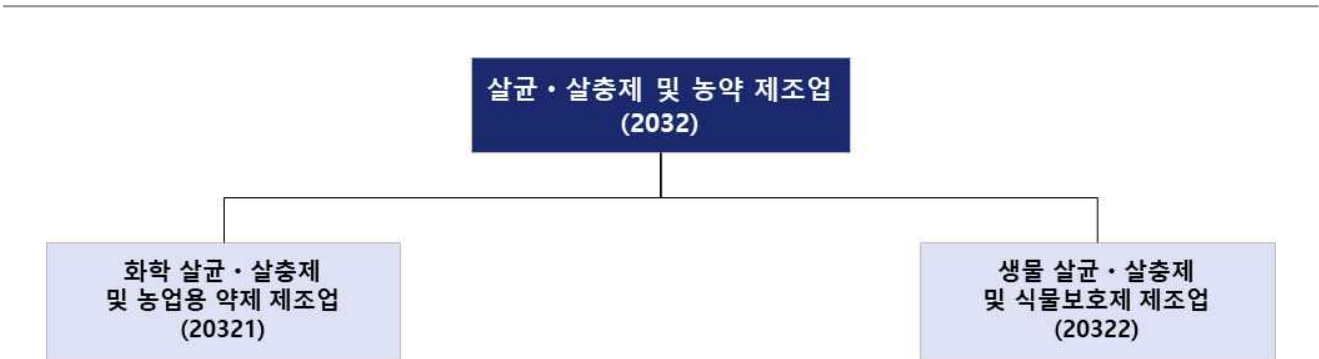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약관리법, 재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약 분류 체계

-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은 ①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과 ②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으로 분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동·식물 및 약제의 범위)

[그림 2-38]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약 분류 체계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재구성

[표 2-68]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약 분류 체계

분류코드	주요 내용
2032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용, 공중위생용 또는 농업용의 살충제, 살서제(취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 억제제, 식물 성장 조절제, 소독제 및 기타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제 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2031)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용, 공중위생용,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식물 성장 조절용 화학 약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 <예 시> 화학 살충제, 살균제, 방충제, 소독제 제조 화학 성장 촉진제, 성장 조절제, 발아 억제제 제조 살서제(취약) 제조 가정용, 공중위생용 화학 살균 및 소독제 제조 <제 외> 생물학적 농약, 미생물 농약, 바이러스 농약 제조(20322) 가정용 세정 및 광택제, 방취제 및 유사 위생제품 제조(2042)
2031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 미생물, 식물 또는 천연 유기·무기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제조한 가정용, 공중위생용, 농업용 천연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식물 성장 조절용 천연 약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 <예 시> 생물학적 살충제,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성분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 식물성 살충살균제 제조 생화학성 농약 제조 천연 식물 보호제 제조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재료 농약 천연으로 생성된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 성분 살균, 살충제 및 식물 보호제 <제 외> 화학적으로 조성된 농약 제조(20321)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재구성

7.2 법제 환경 분석

□ 농약관리법 주요 내용

○ 농약관리법 목적 및 법령체계

- (목적)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표 2-69] 농약관리법 목적 및 법령체계

구분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법령 체계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약관리법, 재구성

7.3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①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활성화 애로사항 및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 품질인증 강화 필요

신산업 분야	생물농약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정책 제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법 제2조(정의) • 친환경농업법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 친환경농업법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46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대상) •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4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기준) •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 규제 현황

○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대비 친환경유기농자재 선호*

- * 천연식물보호제 경우 등록비용이 약 2~3억원 정도이고, 시험기간도 약 2~3년 정도 소요되는 단점 보유. 2007년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가 시행된 이후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비용 약 3천만원 정도에 시험기간도 약 3~6개월 정도 소요되어,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더 선호하고 생물농약 등록을 기피 (자료 : 농사로 이달의 농업기술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실제')

○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 등록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이에 대한 선별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생물제에 대한 공시뿐만 아니라 품질인증이 더 확대되어 농업인의 선별 사용 용이 필요*

- *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 선호에 따라 병해충 방제 제품이 약 100여 종으로 증가되었으나 농업인은 이에 대한 선별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앞으로 미생물제에 대한 공시뿐만 아니라 품질인증이 더 확대되어 농업인의 선별 사용 용이 필요 (자료 : 농사로 이달의 농업기술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실제')

-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는 포장지에 적용작물, 사용량, 사용방법이 표기되나 적용 병해충명은 기재가 불가능한 상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

□ 관련 법령

○ 유기농업자재 정의

-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유기농업자재 공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공시 기준을 준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2. 제43조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대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대상)**

제46조(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해서는 ① 현장기준, ②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③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적성서, ④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⑤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⑥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⑦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등 7가지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① 현장기준, ②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③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적성서, ④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4가지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기준)**

제47조(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 (제47조제1항 관련)**

① 현장기준	가. 경영관리, 나. 작업장, 다. 제조설비, 라. 공정 및 품질관리, 마. 기록 및 이력관리, 바. 그 밖의 사항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 (제47조제1항 관련)

②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가. 원료, 나. 원료의 특성 및 유래, 다. 제조조성비
③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적성서	가. 주성분 검사, 나. 유해성분 검사
④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등에 대한 농약피해[藥害]·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 나. 비료효과[肥效]·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예외사항
⑤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공통조건, 나. 독성
⑥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가. 제조공정, 나. 품질관리
⑦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가. 포장지 표기방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데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의 종류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용물질)

제3조(허용물질)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1.-30. 생략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1.-35. 생략 36.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37.-45.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 유기농업자재 표시

- (공시 표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함)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포장등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시등의 번호, 유기농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공시의 표시 등)

제42조(공시의 표시 등)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제37조제4항의 공시기준에 따라 해당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공시 표기사항) 공시사업자는 유기농업자재의 포장등에 다음의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 도형, 글자 및 공시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제56조(유기농업자재의 표시)

공시사업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포장등에 별표 17의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 도형, 글자 및 공시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제56조 관련)

표시 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 도형)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공시품만 사용할 수 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공시 기관명</p>
표시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업자재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내용	<p>가. 공시품의 표기사항</p> <p>-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제49조에 따라 발급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체명·주소·전화번호, 2) 유기농업자재 공시 번호, 3) 자재의 명칭 및 구분과 상표명 4) 제조장 소재지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5)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6) 유통기간 7) 주성분(원료)명·함량, 실중량, 사용방법,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 9)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10)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문구(「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 11) 농약피해[藥害] 또는 비료피해[肥害]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 <p>나.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의 표기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효능·효과와 관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목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과 “효능·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p>가)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농약효과[藥效], 비료효과[肥效] 등) 관련 사항*</p> <p>*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비료효과[肥效]·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 2) 1)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또는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p>다.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의 세부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p>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환경농산물인증, 재구성

□ 개선 방안

- 병해충 방제용 미생물제 등록 제품이 증가하였으나 농업인은 이에 대한 선별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생물제에 대한 공시뿐만 아니라 품질인증이 더 확대되어 농업인의 선별 사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필요
 - (시사점)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는 포장지에 적용작물, 사용량, 사용방법이 표기되거나 적용 병해충명은 기재가 불가능한 상황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포장지에 적용작물, 사용량, 사용방법이 표기되거나 적용 병해충명은 기재가 불가능하며 병해 관리용, 해충관리용, 병해충관리용으로 구분*</u> *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
------------------	---

자료 : 농사로 이달의 농업기술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실제’, 재구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
 - (광고 표시 불가능한 경우) 공시제품(효능·효과 미표시)이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제품(농약, 비료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범위

<p>- 광고 표시 불가능한 경우 -</p> <p>공시제품(효능·효과 미표시)이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제품(농약, 비료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범위</p>
--

- ‘제품 명칭 및 효과에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광고 표시 불가능
 - (예시) 00농약,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지베렐린 등과 같이 농약명칭을 직접 표기하는 행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구성

- (개선방향)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에 대한 품질인증을 의무화하여 농업인의 선별 사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 의무화 검토 필요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 기대 효과

-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 미생물제의 품질인증 의무화 통한 농업인의 선별 사용 용이 기대

8.1 산업 환경 분석

□ 미생물비료 시장 획정

○ 비료 법적 정의

-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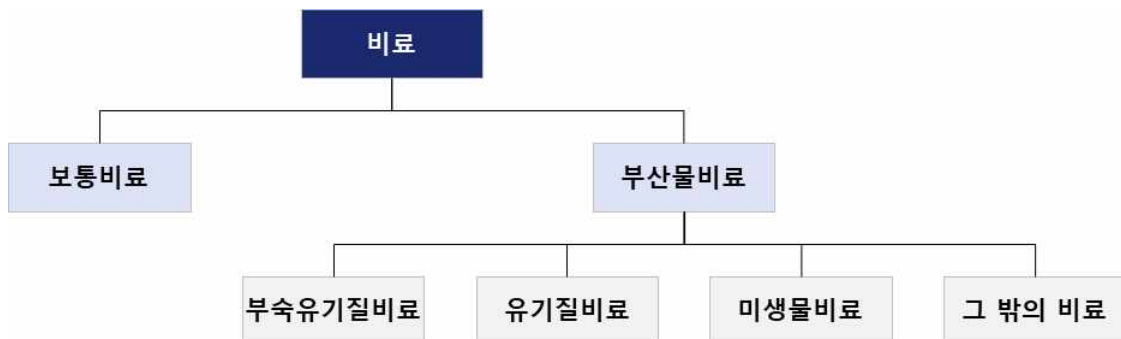
비료관리법 제2조 (정의)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료관리법, 재구성

-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되며, 부산물비료에는 부속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그 밖의 비료 등이 있음

[그림 2-39] 비료 분류 체계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료관리법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재구성

8.2 법제 환경 분석

□ 비료관리법 주요 내용

○ 비료관리법 목적 및 법령체계

- (목적)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

[표 2-70] 비료관리법 목적 및 법령체계

구분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
법령 체계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관리법 •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계정 운영규정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관리법 시행령 •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 우량비료 인정기준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료관리법, 재구성

8.3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① 미생물비료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성 평가 간소화

신산업 분야	생물비료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정책 제언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관리법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2조(비료공정규격심의회 구성)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호) 				

□ 규제 현황

- 안전성평가 간소화 등 통한 미생물비료의 조기 산업화 지원 필요
 - 정부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을 고성장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미생물비료의 조기 산업화를 지원할 필요

[표 2-71]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안전성평가 지원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항생제 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피실린 저항성, 클로람페니콜 저항성, 클린다마이신 저항성, 에리트로마이신 저항성, 겐타마이신 저항성, 카나마이신 저항성, 스트렙토마이신 저항성, 테트라사이클린 저항성, 반코마이신 저항성
바이오제닉 아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스타민, 푸트레신, 스퍼미딘, 스퍼민, 카다베린
유해미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monella spp. 정량/정성, Escherichia coil spp. 정량/정성
곰팡이 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오크라톡신 A,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푸모니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추가 분석 요청사항

자료 :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안전성평가 신청서, 재구성

□ 관련 법령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호)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시 제출자료*

*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 경우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 가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표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시 제출자료			
자료의 종류	설정신청	사용기준 개정신청	성분규격 개정신청
1.-5. 생략 6.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라.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에 관한 자료	△		△
7. 생략		생략	

자료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호), 재구성

※ ○: 제출, △: 필요시 제출

-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에 관한 자료*

*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경우 ‘인체 또는 동식물에 병원성 발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략 가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에 관한 자료”

라.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에 관한 자료

1) 효소제 등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은 생산균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생산균주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최종산물에 균주의 사멸 또는 잔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식품으로서의 섭취 경험에 관한 자료

라) 식품 등의 제조에 이용된 사례에 관한 자료

마) 인체 또는 동식물에 병원성 발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 2]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위 1)의 다)부터 마)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호), 재구성

-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 하기 미생물 이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및 [별표 2] 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미생물(표 하단 단서조항 제외) 또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QPS(Qualified Presumption of Safety) 목록에 등재된 미생물도 포함

[표 2]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연번	미생물명	연번	미생물명
1	<i>Actinoplanes missouriensis</i>	32	<i>Leuconostoc mesenteroides</i>
2	<i>Alcaligenes faecalis</i>	33	<i>Microbacterium arborescens</i>
3	<i>Aspergillus aculeatus</i>	34	<i>Microbacterium imperiale</i>
4	<i>Aspergillus awamori</i>	35	<i>Micrococcus lysodeikticus</i>
5	<i>Aspergillus kawachii</i>	36	<i>Monascus pilosus</i>
6	<i>Aspergillus melleus</i>	37	<i>Monascus purpureus</i>
7	<i>Aspergillus niger</i>	38	<i>Moniliella pollinis</i>
8	<i>Aspergillus oryzae</i>	39	<i>Penicillium chrysogenum</i>
9	<i>Aspergillus shirousamii</i>	40	<i>Penicillium citrinum</i>
10	<i>Aspergillus usamii</i>	41	<i>Penicillium funiculosum</i>
11	<i>Aureobasidium pullulans</i>	42	<i>Penicillium multicolor</i>
12	<i>Bacillus acidopullulyticus</i>	43	<i>Pseudomonas elodea</i>
13	<i>Bacillus amyloliquefaciens</i>	44	<i>Pseudomonas stutzeri</i>
14	<i>Bacillus circulans</i>	45	<i>Pullulanibacillus naganensis</i>
15	<i>Bacillus coagulans</i>	46	<i>Rhizomucor miehei</i>
16	<i>Bacillus licheniformis</i>	47	<i>Rhizomucor pusillus</i>
17	<i>Bacillus pumilus</i>	48	<i>Rhizopus oryzae</i>
18	<i>Bacillus stearothermophilus</i>	49	<i>Saccharomyces cerevisiae</i>
19	<i>Bacillus subtilis</i>	50	<i>Streptococcus bovis ORLA-JENSEN</i>
20	<i>Candida lipolytica</i>	51	<i>Streptomyces albulus</i>
21	<i>Candida rugosa</i>	52	<i>Streptomyces griseus</i>
22	<i>Candida utilis</i>	53	<i>Streptomyces murinus</i>
23	<i>Chaetomium gracile</i>	54	<i>Streptomyces olivaceus</i>
24	<i>Escherichia coli K-12</i>	55	<i>Streptomyces olivochromogenes</i>
25	<i>Gibberella fujikuroi</i>	56	<i>Streptomyces rubiginosus</i>
26	<i>Humicola insolens</i>	57	<i>Streptoverticillium mobaraense</i>
27	<i>Klebsiella aerogenes</i>	58	<i>Talaromyces emersonii</i>
28	<i>Kluyveromyces fragilis</i>	59	<i>Trichoderma reesei</i>
29	<i>Kluyveromyces lactis</i>	60	<i>Trichoderma viride</i>
30	<i>Lactobacillus fermentum</i>	61	<i>Trichosporonoides megachilensis</i>
31	<i>Lactococcus lactis</i>	62	<i>Xanthomonas campestris</i>

자료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호), 재구성

□ 해외 유사 사례

- 미국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규제 개선 성공 사례
 - 미국 FDA는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규제 요건에 반영하여 신약개발시간 단축

미국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 성공 사례 : Evelo Biosciences社

- 기존에 유산균제제로 사용되었던 균주 또는 상재균을 경구 투여하는 경우 독성시험을 면제하여 독성시험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
- 실제로 Evelo Biosciences社의 경우 IR을 위해 진행된 Webcast에서 독성시험을 면제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8)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방안 연구, 재구성

□ 개선 방안

- (개선방안) 미생물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경우 ‘인체 또는 동식물에 병원성 발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생략하여 설정 및 지정 절차 중 안전성 평가 간소화 추진을 검토 할 필요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 기대 효과

-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미생물비료의 조기 산업화를 지원 기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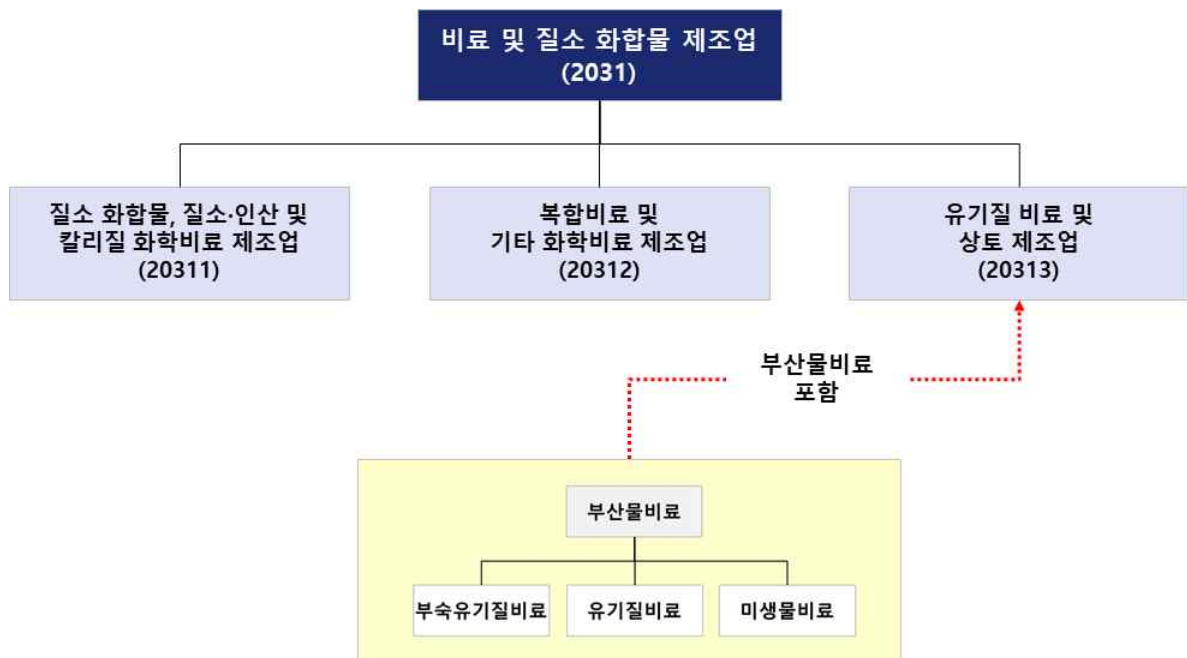
신산업 분야	생물비료	소관 부처	통계청	법령 단위	정책 제언
비고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 규제 현황

○ 미생물비료 관련 통계자료 정비 필요

- 미생물비료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에 포함
- 미생물비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해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에서 미생물비료를 별도 분리하여 생산, 유통 및 소비까지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

[그림 2-40]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재구성

□ 관련 법령

○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 미생물비료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4>에 포함되어 있음

[표 2-7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분류코드	주요 내용
2031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혼합·화합·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 <제외> 구아노 채취(07210),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2032)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질 질소 비료 및 질소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비료용 광물 및 기초화합물을 화학 처리하여 인산질 또는 칼리질을 함유한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예시> 질소질 비료 제조(무기질), 질소 화합물 제조, 인산질 비료 제조, 칼리질 비료 제조, 질산·암모니아·요소·황산암모늄·질산칼륨(초석) 제조 • <제외> 유기질 질소비료 제조(20313)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의 3대 요소인 질소, 인, 칼륨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비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서로 다른 무기질 비료 성분을 구입·배합하여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 그 외 기타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 <예시> 복합비료 제조(무기질) • <제외> 유기질 질소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혼합비료 제조(20313)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상토 등 토질 개량용 토사석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미량 요소 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성분을 조정·배합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한 경우 및 부산물,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 미생물 제제, 토양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도 포함 • <예시> 유기질 비료 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 조제품 제조, 상토 제조, 음식 폐기물·톱밥·돈분 등을 혼합·발효한 퇴비 제조, 혐기성 제강 슬래그 가공품 제조 • <제외>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38)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재구성

□ 개선 방안

- (한국표준산업분류) 미생물비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해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에서 <미생물비료 20314>를 별도 업종으로 분리하여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 추진을 검토 할 필요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그림 2-4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개선(안) 예시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재구성

[표 2-7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분류 체계 개선(안) 예시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31)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20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20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미생물 제제, 토양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외 • <u>미생물비료 제조업(20314)*</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미생물 제제, 토양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 포함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재구성

□ 기대 효과

- <미생물비료> 별도 생산량 집계 통한 정확한 미생물비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관리 지원

9.1 산업 환경 분석

① 그린바이오

□ 바이오기술 분류 및 정의

- 사용 목적과 소재에 따라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로 분류
 - 고령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 추세에 따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기술 활성화 필요

바이 오	레드	• 질병극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연구하는 생명과학기술 분야
	그린	•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고부가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기반의 과학기술 분야
	화이트	•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련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바이오 분야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9) 그린바이오 국내 동향 및 시사점, 재구성

- 그린바이오 역할
 -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식량자원 및 농림·축수산 생명자원의 안정적인 생산
 - 고부가가치 농생명 신소재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국민건강·웰빙 실현 등

□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 종자개발을 위한 육종기술
 - 유전자교정(Genome Editing)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변형생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개발을 진행 중
- 고부가가치 의약소재 생산을 위한 바이오농업(Bio-Pharming) 기술
 - 고부가가치 유용물질 대량생산에 위해 유전자변형 식물체를 생산공장(식물공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식물분자농업(Plant Molecular Farming)이라 함
 - 식물분자농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섭취를 통해 질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식물 경구백신의 개발

- 최근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주)바이오앱에서 돼지에 치명적 전염병인 돼지열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식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

[표 2-74]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산업화 성공 사례 : (주)바이오앱

회사명	바이오앱	BIO APP		www.bioapp.co.kr	
 기업 개요					
대표자	손은주	전화	054-223-2094	팩스 054-223-2088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단지 내			이메일 kevinhwjeon@bioapp.co.kr	
회사 기본 정보		기업 형태	중소기업	업종 코드 21210	업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매출액	4.8 억원	임직원 29 명	설립연도 2011년 08월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ECH 기반 식물고발현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단백질을 생산 - 다양한 종류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생산 플랫폼을 구축 		
주요 기술 제품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그린백신 (식물생산백신)*을 개발중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식물체에서 백신을 생산해 만든 식물기반 동물 의약품 • 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의 한 품종인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라는 식물 플랫폼에서 생산해 품목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 -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식물 유래 유전자 재조합 서브유닛 백신이며, 야외 주와 백신 주의 감별이 가능한 DIVA백신(감염 동물과 백신 동물이 서로 구분 가능함) 			

자료 : (주)바이오앱 홈페이지, 통계청, 사람인, 재구성

- 그린바이오 기대주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술(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도입으로 다양한 환경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예) 천연식물보호제, 미생물비료
-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 스마트팜
 - 인공지능 기반 고효율 농작물 재배 시스템으로 생체 계측과 인공지능을 통해 농작물의 생산환경이 자동관리는 지능형 스마트 농업혁명

□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20년 9월)45)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관련 주요 내용 : 동물용의약품 중 동물백신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 동물용의약품						
육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복제약 중심의 화학제제 시장에서 백신, 줄기세포 치료제 등 생물학적 제제 중심의 새로운 동물약품 시장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산업규모를 1,414억원('19)에서 3,297억원('30)으로(연평균 8.0%↑), 고용규모를 0.6천명('19)에서 1.3천명('30)으로(연평균 8.0%↑) 확대* *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이용한 각종 백신, 혈액제제 및 항독소 등 					
핵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백신시장 확대, 동물분야 줄기세포 등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필요 					
	원료	제품과정			생산	
		소재탐색	제품설계	시험평가	제형화	
	균주, 줄기세포	소재분리·추출, 유효물질 분석	유전자 분석, 세포 배양, 백신주 개발	약동력학 평가, 발현조절	제형기술, 투여기술	백신, 줄기세포 치료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재구성

- (동물백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유망 동물백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단백질 재조합 기술 등을 활용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
 - * 반려동물 백신 신규 균주 및 변이형 바이러스(닭 마이코 등) 백신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단계의 임상·비임상실험을 지원하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시제품생산시설(식물백신 지원시설**) 등 구축
 - *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전북 익산, '20~'22, 농식품부)
 - ** 식물백신지원시설 구축 사업: (경북 포항, '18~'20, 농식품부)

45)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②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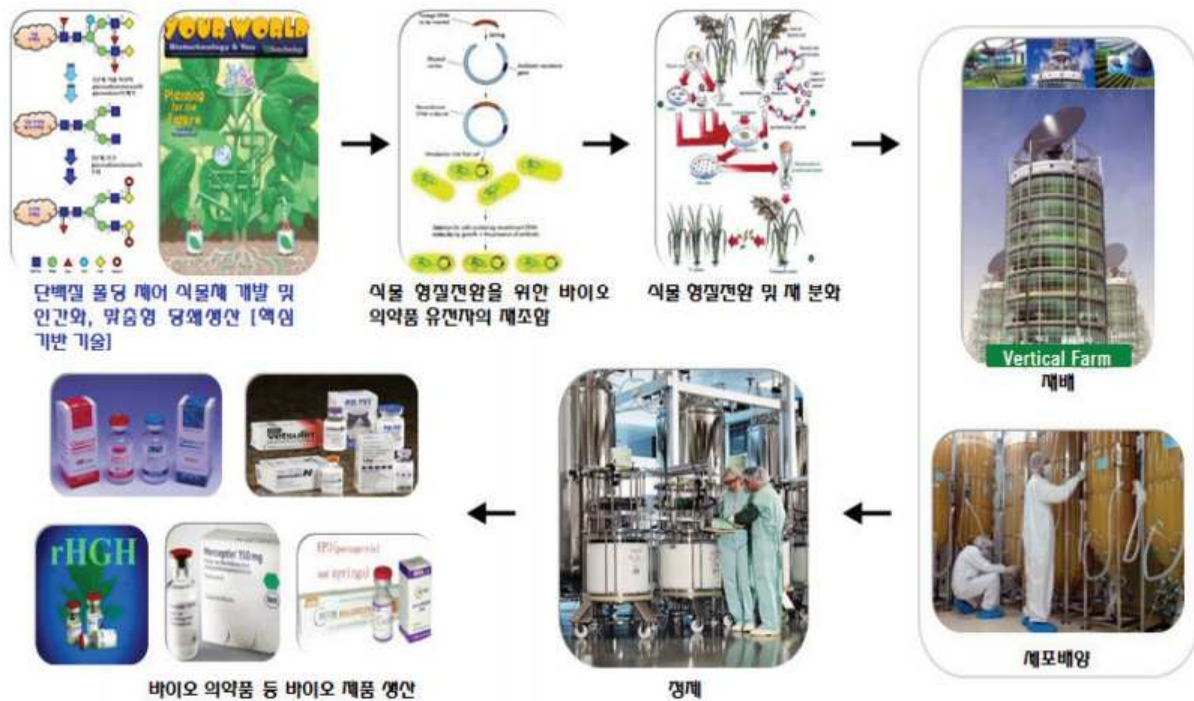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시장 확정⁴⁶⁾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정의

- 식물분자농업이란 식물을 생산수단으로 삼아 유전자조작을 통하여 의학적으로 유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과 백신, 산업적 가치가 있는 효소 등의 재조합 단백질 및 이차대사산물을 대량생산하는 산업*

* 과거 식물을 주로 식량확보 차원에서 농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을 제1세대 유전자변형 작물이라고 한다면, 정밀화학제품·유용단백질 생산 등 고부가가치 의학·산업적 용도를 목적으로 개발된 작물을 제2세대 유전자변형 작물이라고 함

[그림 2-42] 식물분자농업 통한 바이오 제품 생산 과정



자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5) 국내외 분자농업 연구 및 산업화 현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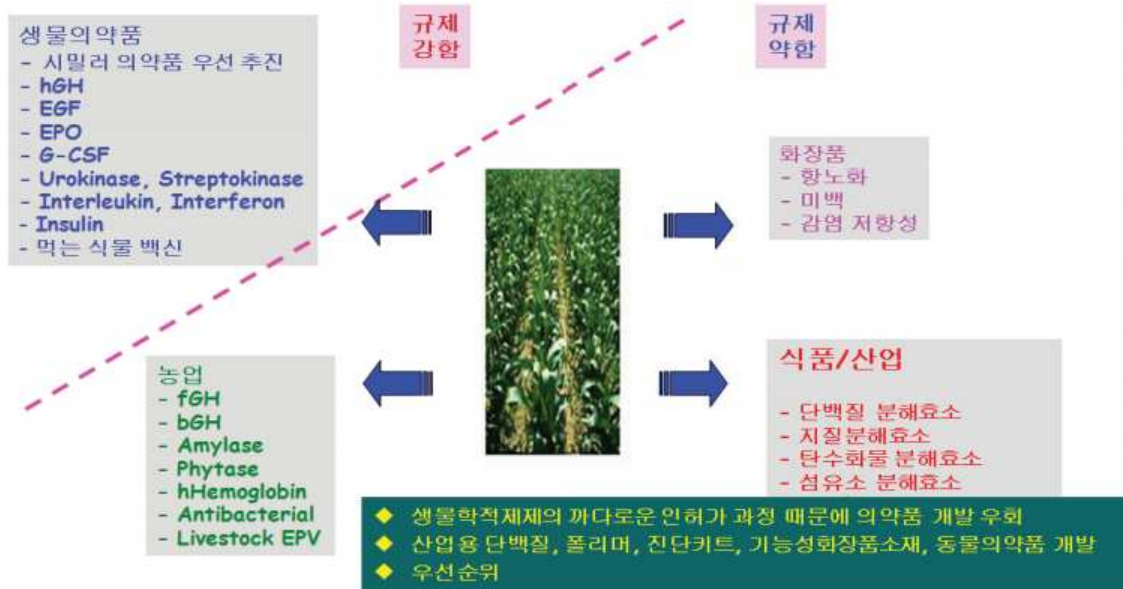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특징 및 필요성

- (특징) 농업생산을 제조업과 결합한 식물분자농업시스템은 고부가가치형 고위기술 제품 생산 시스템으로 생산성이 높고, 의약품 단백질 등 유용 단백질 생산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 동물세포 배양법 보다 경제성이 높음

4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5) 국내외 분자농업 연구 및 산업화 현황

- (필요성) 미생물이나 동물세포는 의약품 등 생산과정에서 병원균 및 독성물질 오염 문제가 있는 반면, 식물은 사람과 진화계통상 거리가 멀어 식물을 이용한 생산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므로 동물유래 질병 전파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분자농업을 통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필요성 증가

[그림 2-43] 식물분자농업 통한 생물의약품 생산 특징



자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5) 국내외 분자농업 연구 및 산업화 현황, 재구성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국내 연구 및 산업화 현황⁴⁷⁾

- 유전자변형 식물체(GMO) 상업화를 위해 환경과 인체 유해성 평가를 거친 후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승인을 받아 국립종자원에 품종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야외재배 어려움으로 실제 국내에는 품종등록이 된 유전자변형 식물체(GMO)는 없는 실정
- 우리나라 식물분자농업 관련 기술적 수준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일부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산업화 부분에서 식물분자농업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을 재배할 방안이 없어 우수한 식물분자농업 관련 연구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식물분자농업 상용화 식물공장 운영기술 및 산업화기술 확립이 시급하며 식물공장을 활용할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면 식물분자농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47) 농림축산식품부 (2018) 분자농업의 산업기반 모델 구축 및 실증

- 글로벌 주요국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분야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현황⁴⁸⁾
-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관련 활발히 연구 및 생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벤처기업으로 1) Sembiosys, 2) Medicago, 3) Biolex 및 4) Prodigene 등이 있음
 - 현재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공인된 생물 의약품 제조 방법으로 동물세포배양 제조(Mammalian Cell Culture Manufacturing)와 미생물 발효(Microbial Fermentation)를 들 수 있음
 - 기존의 생물 의약품 제조 공정에 동반되는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형질전환 동물 및 식물(Transgenic Animals and Plants) 활용과 같은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생물 의약품 제조 대안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 식물분자농업 관련해 시행된 세계 전체 실험들 중 약 8%만이 유럽에서 시행됐으며, 세계 전체 식물 분자농업 특허권 중 약 19%를 유럽이 보유하고 있음*
 - * 하지만 기술 플랫폼과 억제 설비에 관한 공공부문 연구 활동은 미국 수준과 동등하며,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식물 분자농업 공공부문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분자농업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1) 발현계와 작물 선택과 타당성 분석 시행 등을 포함한 특허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제공업체와 2) 자체 PMP를 개발하여 상업화시키는 업체,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인 Bayer(독일)는 Icon Genetics(독일)를, BASF(독일)는 CropDesign(벨기에)를 각각 인수하여 유럽 시장 주요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일본 경제 산업성 지원으로 식물분자농업 관련 GMO 작물 전용 재배가 가능한 GMP 수준 밀폐형 식물공장을 건설하고 산업적 규모에서의 GMO 작물 재배와 분리정제까지 일관된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애완건 구내염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식물분자농업 산업화는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차원에서 기술개발이 절실하게 필요

48) 농림축산식품부 (2018) 분자농업의 산업기반 모델 구축 및 실증

9.2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①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을 단기적으로 도시농업에 포함, 장기적으로 산업 활성화 목적 별도 법 제정 추진

신산업 분야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단위	법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 규제 현황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활성화를 위해 식물분자농업을 도시농업의 정의 및 범위에 포함할 필요
 - 유전자변형생물(GMO) 관련 법령에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유전자변형생물을 재배하도록 규정
 - 밀폐된 식물공장에서 기존에 확보한 고부가가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형질전환 작물을 재배한다면 식물분자농업의 빠른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식물분자농업 전용 식물공장은 제약/바이오 특화 전문인력 유치 등 필요에 의해 도심의 건축물 내에 위치하는 경향
 -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식물공장은 도시농업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

□ 관련 법령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정의 법적 검토
 - 현행 법령에서 식물공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의 규정이 유일
 - 동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식물공장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로 정의⁴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 너. <생략>

더.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의 도시농업 포함 관련 법적 검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활용한 농작물·화초 재배를 도시농업으로 인정하면서도 공간형태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
- (시사점) 식물공장 형태는 그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아 배제함으로써, 도시농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49)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도시농업의 유형 등)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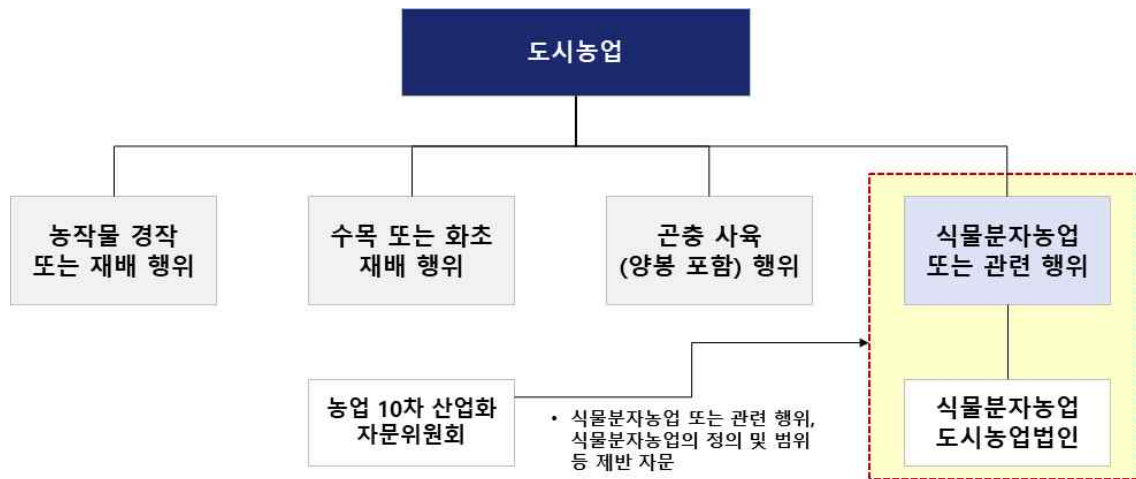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시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시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 ② <생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단기 개선 방안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도시농업 정의 및 범위, 유형’으로 추가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 검토 필요

[그림 2-44] “도시농업” 정의 및 범위 개선(안) 예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변경 검토 필요
 - ‘식물분자농업 행위 또는 관련 행위’를 추가하여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장
 - ‘식물분자농업 도시농업법인’ 추가*

* ‘식물분자농업 도시농업법인’은 ‘융복합형 신기술 농업 관련 농업회사법인’의 한 종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변경 검토 필요
 - 도시농업의 유형에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형 도시농업” 추가

[그림 2-45] “도시농업의 유형 등“ 개선(안) 예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 장기 개선 방안

- 장기적으로 식물분자농업 활성화 관련 별도 법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식물분자농업이 도시농업의 유형에 포함될 경우, 도시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만 도시농업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지역적 확장성에 한계 존재
 - 또한 식물분자농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유전자변형생물(GMO)이 도시농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식물분자농업 활성화 관련 별도 법을 제정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

□ 기대 효과

- 단기적으로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의 도시농업 포함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세계적인 기술 우위 확보 지원
- 장기적으로 식물분자농업 활성화 관련 별도 법을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 向 농식품 신산업 육성 추진

②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기자재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산업 분야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법령 단위	법률 시행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 규제 현황

- 식물분자농업 활성화를 위해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기자재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
 - 제약/바이오 특화 R&D 및 제조 가능 시설물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등 관련 기준 준수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커,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의 산업화에 어려움으로 작용
 - 농업용 기자재(비료·농약·농업용 기계, 유기농 자재 등)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기자재의 경우 농업용 기자재로 열거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식물 실험실 관련 안전환경 가이드라인 사례

[식물 실험실]

- 식물 실험실의 경우 온실바닥은 흡수성 혹은 다공성의 바닥이어야 한다
- 식물 실험실은 배출수 집수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 식물 실험실은 표준 온실유리나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해야 한다
-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폐쇄형의 식물재배장치(예: 병,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격리 재배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실험실에 생물안전표지(식물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해야 한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6조 제5항)

자료 : 교육부 (2015) 대학 생물/생명 분야 실험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재구성

□ 관련 법령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기자재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법적 검토
 - 농업용 기자재(비료·농약·농업용 기계, 유기농 자재 등)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음
 - (시사점) 식물공장 기자재의 경우 농업용 기자재로 열거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재구성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대통령령 제30398호), 재구성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스피드스프레이, 콤바인, 곡물건조기, 동력중경제초기, 동력수확기, 농산물 건조기, 동력상토조제기, 동력이식기, 농업용 난방기,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동력탈곡기, 동력휴집기, 동력시비기,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농산물 결속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 세척기, 동력심경기, 동력구굴기,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육묘상자, 파종기, 농업용 스프링클러,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대통령령 제30398호), 재구성

□ 개선 방안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관련 기자재도 다른 농산물 기자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유연하게 분류 검토 필요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 기대 효과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기자재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세계적인 기술 우위 확보 지원

Ⅲ. 결론

1. 규제 개혁과 사회적 갈등관리
2. 제언

1.1 신기술·신산업 도입 관련 사회적 갈등관리 모델 고찰

①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갈등관리 모델

□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 개혁 필요성⁵⁰⁾

-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전개되어, 신산업 환경은 기존 법률에서 발전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제도와 체계를 요구하는 경향
 - 신산업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의 당사자들은 미래의 시장경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노출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규제와 제도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민간은 경직된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 및 산업 창출에 어려움이 발생
 - 규제는 공공목적을 위한 문제해결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여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4차 산업혁명기술과 같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나 사회적인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히 규제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관료나 이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포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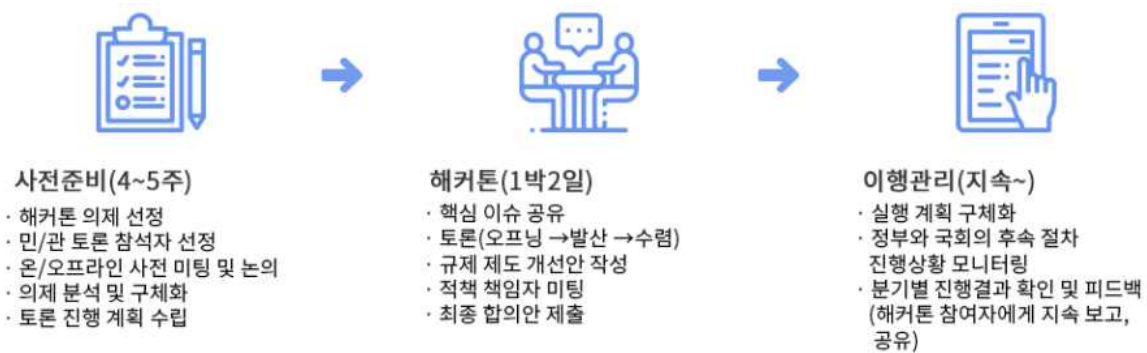
50) 조광제 (2020)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공갈등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갈등관리 모델 :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hackathon)⁵¹⁾

-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토론과 프로세스를 사회적 합의에 맞추어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행
- 일반적인 해커톤이 1박2일간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1박2일동안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쳐 규제혁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림 3-1]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진행방식 및 과정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http://www.4th-ir.go.kr>)

○ 규제샌드박스 제도⁵²⁾

- (정의)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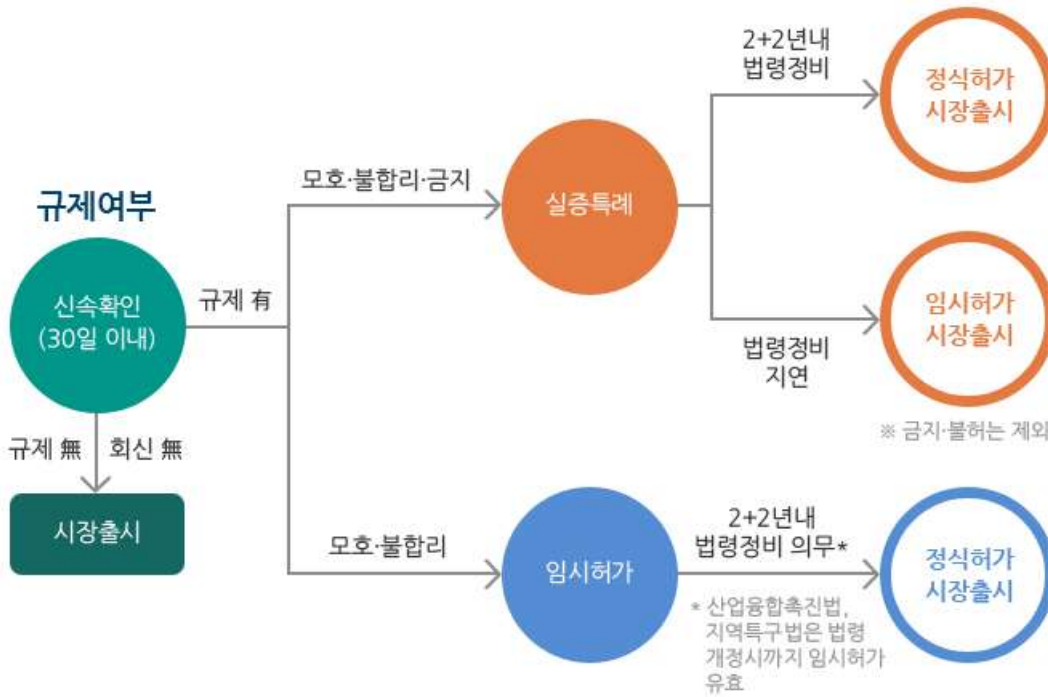
* (어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주요 내용)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새롭게 도입

51) 4차산업혁명위원회(<http://www.4th-ir.go.kr>)

5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그림 3-2] 규제샌드박스 제도 주요 내용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표 3-1] 규제샌드박스 제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규제 신속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문의·회신 → 30일 이내에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시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대 2+2년 허용) ※ 유효 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
실증을 위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대 2+2년 허용) ※ 관련 법령 정비 추진, 지연 시 임시허가 활용 가능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②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 갈등관리 모델 : 협력적 거버넌스⁵³⁾

□ 공공 갈등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개요

○ 공공 갈등관리 개념 및 범위

- (개념) 공공기관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

[표 3-2] 갈등관리 개념 선행연구

구분	주요 내용
Bercovich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는 갈등이 악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리한 조건이나 상황을 만드는 것
Ross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당사자들이나 갈등관리자인 제3자가 갈등을 다루기 위해 거치는 단계
권영일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거나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

자료 : 이형중 (2016) 갈등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활용방안 연구

- (범위) 공공갈등에 있어 ① 갈등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범위는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정책에 의해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쟁점과 관련된 갈등을 의미하며, ② 갈등의 쟁점을 기준으로 보는 측면에서 볼 때 범위는 민간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갈등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쟁점의 성격에 따라 공공갈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⁵⁴⁾

○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

- 정책 및 계획에 있어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Consensus-Oriented)이며, 집합적인 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Making) 과정에 공공기관, 비정부기관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직 혹은 체계
- 경쟁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협력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시되고 이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경쟁적인 전략 보다는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

53) 이형중 (2016) 갈등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활용방안 연구

54)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 논형, 2005, 38쪽

[표 3-3]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 선행연구

구분	주요 내용
Ansell & Gash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적 관리, 상호작용적 정책결정,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그리고 협력적 관리
Emerson et a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상·하위 정부, 공적·사적·민간 영역이 건설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공공정책의 결정의 과정과 구조로 그 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것
채종현·김재근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을 갖춘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 및 관리노력을 수단으로 합의추구를 지향하는 숙의적인 의사결정체계
이명석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조직과 행위자 사이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으로 계층제도, 네트워크 및 시장 등의 3가지 사회적 조정방식의 최적 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협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해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

자료 : 이형중 (2016) 갈등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활용방안 연구

□ 공공 갈등관리방안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 Ansell & Gash(2007)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기존문헌을 메타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도출
 - ① 초기 조건(Starting Conditions), ② 협력적 과정(Collaborative Process), ③ 제도적 설계(Institutional Design), ④ 촉진적 리더십 (Facilitative Leadership) 그리고 ⑤ 결과(Outcome)로 구성
- 초기 조건(Starting Conditions)
 - 힘·자원·지식의 비대칭, 협조·갈등의 역사 그리고 참여의 유인 또는 제약으로 구성
 - 참여의 유인 또는 제약은 힘·자원·지식의 비대칭과 협조·갈등의 역사에 영향을 받음
- 협력적 과정(Collaborative Process)
 - 신뢰구축(Trust Building), 과정에의 충실(Commitment to Process),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 중간성과(Intermediate Outcomes), 면대면 대화(Face-to-Face Dialogue)로 구성
 - 협력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촉진적 리더십과 제도적 설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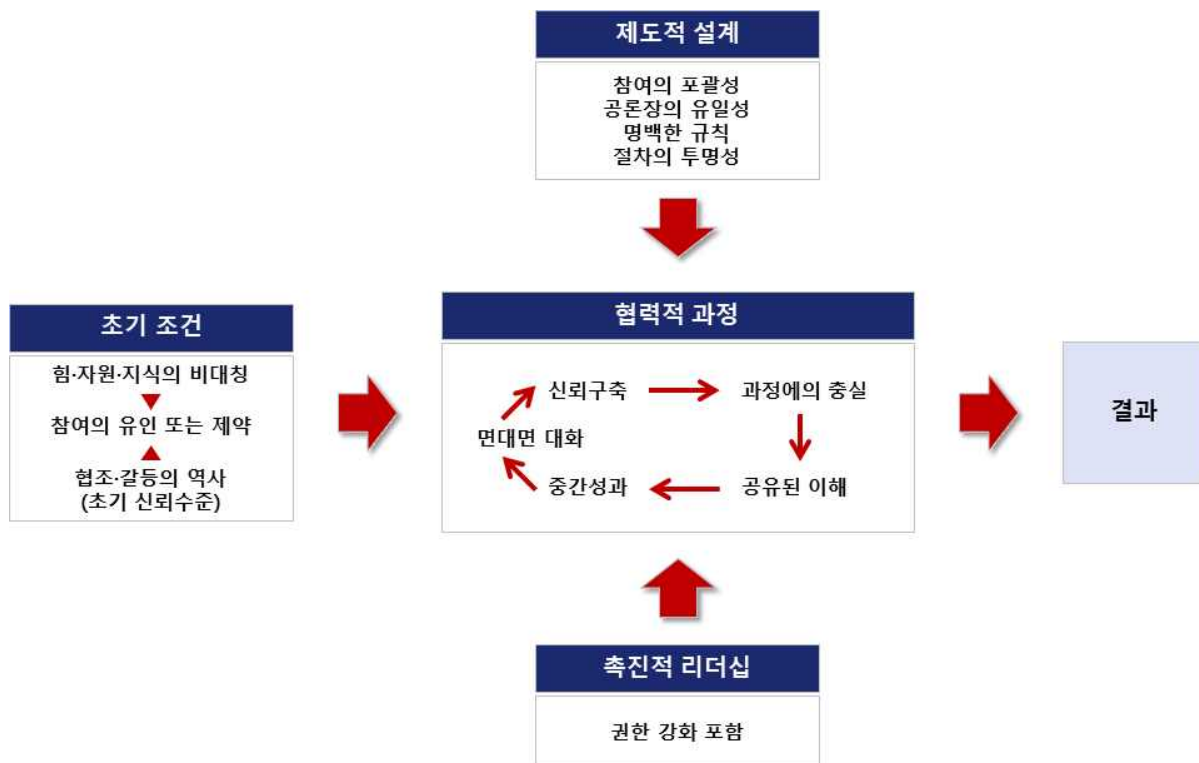
○ 제도적 설계(Institutional Design)

- 협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 참여의 범위의 확대, 공론장의 유일성, 과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
- 특히 참여 범위의 확대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정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들과 숙의(Deliberate)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나타난 정책의 성과가 광범위한 동의에 근거하였다는 정당화 근거를 마련

○ 촉진적 리더십 (Facilitative Leadership)

- 합의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어느 개인의 리더십의 발휘가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력할 수 없을 때 중요
- 리더십은 규칙을 제정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대화를 유도하고 상호 이익을 탐색할 때 특히 필수적 요건

[그림 3-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Ansell & Gash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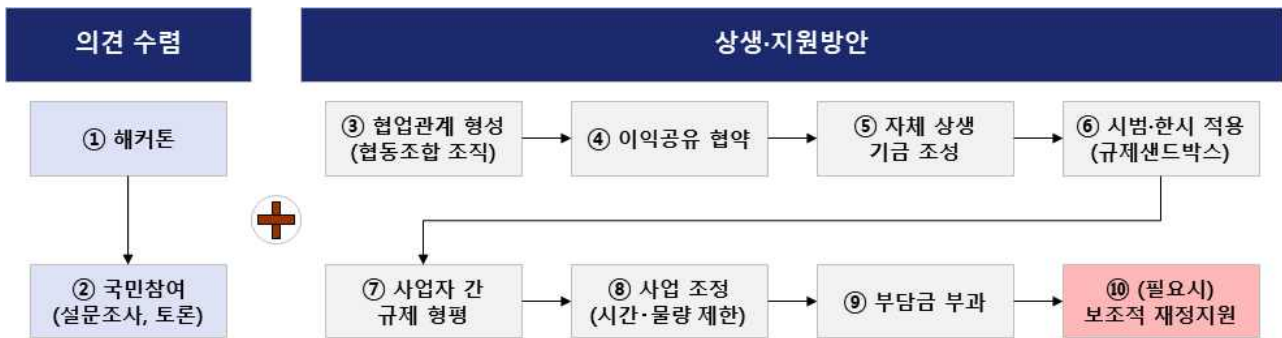
자료 : 이형중 (2016) 갈등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활용방안 연구

1.2 신산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⁵⁵⁾

□ 정부 한걸음 모델 도입 취지 및 특징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사업 출현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나,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
 - (정부) 규제개선의 가장 큰 제약요인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타협 메커니즘으로서 ‘한걸음 모델’ 을 도입
- (한걸음 모델) 당사자 간 이해관계 명확화 → 갈등조정 → 상생유도·규제혁신까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관리
 - 사안별 특성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이익공유 협약체결 등 10여개의 상생메뉴를 조합하여 합의 도출을 유도
 - 당사자간 분담의 大원칙 하에 필요시 합의 촉진을 위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그림 3-4] 정부 한걸음 모델 상생메뉴판



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09.21.)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5)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09.21.)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정부 한걸음 모델 추진 현황

○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혁신성장전략회의, '20.06.04.) 발표후 3대 우선 적용과제*에 대하여 상생조정기구를 통한 논의진행

*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등), 농어촌 빈집숙박

-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新사업 진입규제 개선과제 중 ①신사업 출현으로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고 ②갈등구조가 명확한 사안을 대상으로 선정

○ 과제별 갈등상황이 상이한 만큼, 논의속도에 차이

→ ‘속도’ 보다는 ‘합의의 질’ 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진행

- 중립적·객관적 논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중립적 회의진행자를 선정

- 각 이해관계자별로 사안에 대한 관심사를 확인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갈등영향평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병행

[표 3-4] 정부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적용과제 추진 현황

구분	농어촌 빈집숙박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등)
간사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주요 쟁점 및 합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숙박 모델을 시도 하였으나,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사업 중단 (' 19.7월) · 신규업자와 기존업계 모두 한걸음씩 양보하여 합의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일수 등 도심 공유숙박 영업범위, 불법단속 등 공정경쟁 기반 마련 방안, 신규사업자의 상생 기여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관광 논의 필요성, 하동 프로젝트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검증, 친환경·지속가능 관광 대안 등
상생조정기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다자요, 민박협회, 농촌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역개발,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관계부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숙박업계, 온라인 숙박 중개업계 등 이해관계자, 유관기관·한국소비자원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하동군) 및 사업자,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광·환경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등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실증특례 실시 ·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및 서비스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숙박·온라인 숙박 중개업계)별 분과회의를 통해 쟁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단체·전문가·지자체 개별 논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한 쟁점별 대안 논의 추진

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09.21.)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정부 한걸음 모델 향후 계획

- ‘상생을 통한 혁신’ 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한걸음 모델의 적용 범위 및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
 - (우선 적용과제 논의)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 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 다양화
- (신규과제 발굴) 관계부처·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와 기재부의 자체 발굴을 병행하여 후보과제 발굴
 - 디지털·그린 뉴딜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한국판 뉴딜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갈등해소 과제를 발굴할 계획
 - 취합된 과제들을 실무 검토하여 1차 후보과제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
 - * 新사업 진입규제 여부, 한걸음모델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 * 필요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걸음 모델 과제선정위」를 구성하여 사전검토
- (제도적 기반 강화) 3대 우선 추진과제의 논의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한걸음 모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논의절차 보완 및 법적근거 정비방안 검토
 - 그간 논의과정에서 원활한 과제발굴 및 갈등조정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걸음 모델의 추진근거를 보완하고 합의안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제기

[표 3-5] 정부 한걸음 모델 논의 프로세스(예시)

단계	세부 활동	일정
[0단계] 과제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지자체·이해관계자 등 신청 •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과제선정 	과제 확정일 (D-day)
[1단계] 논의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협의체 및 상생조정기구 구성 (관계부처 협의체) 기재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참석 → 간사부처 선정 및 상생조정기구 구성·운영 계획 마련 (상생조정기구) 중립적 전문가, 이해관계자, 학계 및 연구원, 유관부처 등 • 부처별 쟁점 사전정리 (필요시 간이 갈등영향평가) 	D+2주 이내
[2단계]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조정기구 Kick-off 회의 개최 • 갈등영향평가 실시 -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견해 및 쟁점 확인 • 필요시 해커톤,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추진 	D+1달 이내

단계	세부 활동	일정
[3단계] 상생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조정기구를 통한 쟁점별 협의 지속 • 주요 이해관계자 개별면담 등을 통해 상생메뉴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관계 형성, 이익공유협약, 자체상생기금 조성, 시범·한시적용, 사업자간 규제형평, 사업조정, 부담금, 보조적 재정지원 등 다각적 검토 • 필요시 현장조사, 쟁점별 전문가 간담회, 상생조정안 마련 연구용역 등 실시 	D+6달 이내
[4단계] 합의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합의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합의안 발표(보도자료 배포) • 합의안에 따라 규제개선, 재정지원 등 후속조치 추진(반기별 이행점검 예정) 	합의후

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09.21.)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신산업 체제와 기존 산업계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
 - 이해당사자 간 극단적 선택과 대결의 모습 출현 전망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개혁 논의도 사회적 공론화와 갈등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미래 융복합형 농업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이 농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이 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농업인, 농업 단체의 입장도 고려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함

[그림 3-5] 대기업의 스마트팜(식물농장) 참여 반대 사례



자료 : 언론 종합, 재구성

- 성공적인 농식품 신산업 규제 개혁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한걸음 모델 등 사회적 갈등관리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
 - 기존 농업 산출물과 유사성 또는 대체성 정도에 따라 사회적 수용 및 저항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저항 강도) ① 스마트 팜 > ② 식물성 대체육/배양육 > ③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 사회적 갈등관리 모델을 도입 시 사회적 수용 및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

[그림 3-6] 농식품 신산업 사회적 수용 및 저항 정도



□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규제 개혁 로드맵 필요

○ 스마트팜 정의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격으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으로 정의⁵⁶⁾*

* (스마트팜 분야별 적용 사례) 스마트 온실,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사

[표 3-6] 스마트팜 분야별 적용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스마트 온실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CO ²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 및 관리
스마트 과수원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기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자동으로 관수 및 병해충 관리 등
스마트 축사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등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재구성

5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스마트팜(지능형농장)

○ 식물공장 법적 정의

- 식물공장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 로 정의⁵⁷⁾
- 현행 법령 체계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식물공장의 법적 정의가 스마트팜의 스마트 온실 또는 스마트 과수원 정의와 유사한 상황

(농민신문) 스마트팜 육성 위한 법 제정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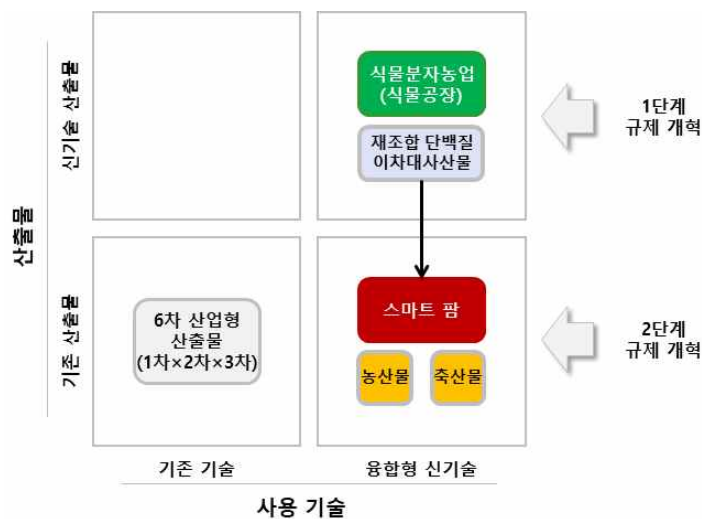
-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스마트팜 확산·보급사업 현황과 과제’에서 “스마트팜과 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법률적 추진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적 근거 미비로 인해 생산기술과 농업 생산·유통 체계의 변화를 유인할 추진전략이 수립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스마트팜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 농민신문 (2020.01.10.) 스마트팜 육성 위한 법 제정 시급하다, 재구성

○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기존 농업 외 인적·물적 자원이 스마트팜 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농업인·농업단체의 수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식물분자농업 활성화 관련 별도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식물농장에 대한 법적 정의 및 범위를 마련하고, 이를 다시 스마트팜의 법적 정의 및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

[그림 3-7]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규제 개혁 로드맵



57)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관리법」 입법 제정 필요성

○ 現 「동물보호법」의 한계 존재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동물보호”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영업(관련 산업) 규제”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까지 「동물보호법」이 포섭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현 상황에서는 별개의 법체계가 필요
-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도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을 권고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관리법」의 입법 방향

-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관리법」이 제정되는 경우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개념 정의와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보호 대상인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입법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식수준 향상,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자들의 인식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함

IV. 부록

1. 참고문헌
2.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10차 산업화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19)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6차산업.com) 농업의 6차 산업화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8) 농업 투자 특수성 유지방안 연구
- 농촌경제연구원 (2018)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 1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농업 정의 및 범위
- 한국벤처투자 (2020) 벤처투자촉진법 설명회 발표자료
- 한국은행 (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건강기능식품

- IBK투자증권 (2017) 건강기능식품 - 불로장생의 꿈
- 감사원 (2019)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개선 건의 등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 고령친화식품

- e나라표준인증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H 4897) (2019.12.05.)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고령친화식품 시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고령자 건강증진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 고령친화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20.06.29)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 감사원 (2019)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개선 건의 등
-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6.29)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시장

□ 대체식품

-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 농촌경제연구원 (2019) 세계 대체육류 개발 동향
- 농촌경제연구원 (2020)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조선일보 (2019.03.14.)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肉食의 새 길을 열다”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 관계부처합동 (2019)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반려동물 유기사료 Q&A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 농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 농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립농업과학원 (2020) ‘수별 번데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 오픈서베이 (2020)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0
- 일본애완동물사료(펫푸드)공정거래협의회(Pet Food Fair Trade Association, <http://petfood.or.jp>)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1080)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 국내 반려동물 간식시장 조사 보고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일본 펫푸드 시장 현황 및 한국산 펫푸드 진출안 조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중국 반려동물 식품시장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 한국사료협회 (2016)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한국가축사양표준의 활용 방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 농사로(www.nongsaro.go.k) 이달의 농업기술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실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친환경농산물인증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 생물비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8)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방안 연구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 관계부처합동 (2020)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 교육부 (2015) 대학 생물/생명 분야 실험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5) 국내외 분자농업 연구 및 산업화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2018) 분자농업의 산업기반 모델 구축 및 실증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9) 그린바이오 국내 동향 및 시사점

□ 규제 개혁과 사회적 갈등관리

- 4차산업혁명위원회(<http://www.4th-ir.go.kr>)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09.21.)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샌드박스 제도
- 농민신문 (2020.01.10.) 스마트팜 육성 위한 법 제정 시급하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스마트팜(지능형농장)
- 이형중 (2016) 갈등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활용방안 연구
- 조광제 (2020)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공갈등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규제샌드박스 제도

2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표 3-7] 식품공전 식품유형별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1.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
2.빙과류	2-1.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2-2.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2-3.빙과	빙과
	2-4.얼음류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3.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3-2.초콜릿류		초콜릿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4.당류	4-1.설탕류	설탕
		기타설탕
	4-2.당시럽류	당시럽류
	4-3.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4-4.포도당	포도당
	4-5.과당류	과당
		기타과당
	4-6.엿류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4-7.당류가공품류	기타당류가공품류
	5.잼류	
		기타잼
6.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7.식용유지류	7-1.식물성유지류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또는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7-2.동물성유지류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기타동물성유지		
7-3.식용유지가공품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8.면류		생면
		숙면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건면
		유당면
9.음료류	9-1.다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9-2.커피	커피
	9-3.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9-4.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9-5.두유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9-6.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9-7.인삼·홍삼음료	인삼·홍삼음료	
9-8.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10.특수용도식품	10-1.조제유류	영아용조제유
		성장기용조제유
	10-2.영아용조제식	영아용조제식
	10-3.성장기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10-4.영·유아용이유식	영·유아용이유식
10-5.특수의료용도등식품	환자용식품 - 환자용균형영양식 - 당뇨환자용식품 - 신장질환자용식품 -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식품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10-7.체중조절용조제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10-8.임산·수유부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11.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12.조미식품	12-1.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
		기타식초
	12-2.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12-3.카레(커리)	카레(커리)분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카레(커리)
	12-4.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실고추
	12-5.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12-6.식염	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음·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3.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김치류	김치
		김치속
	13-2.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13-3.조림류	조림식품
14.주류	14-1.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14-2.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14-3.기타주류	기타주류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14-4.주정	주정
15.농산가공식품류	15-1.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15-2.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15-3.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15-4.시리얼류	시리얼류
	15-5.찜쌀	찜쌀
	15-6.효소식품	효소식품
	15-7.기타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16.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6-1.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16-2.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16-3.베이컨류	베이컨류
	16-4.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16-5.양념육류	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
		천연케이싱
	16-6.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16-7.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16-8.포장육	포장육
17.알가공품류	17-1.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17-2.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18.유가공품	18-1.우유류	우유 환원유
	18-2.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18-3.산양유	산양유
	18-4.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18-5.버터유	버터유
	18-6.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가공연유
	18-7.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18-8.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18-9.치즈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18-10.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18-11.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18-12.유당	유당
	18-13.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9.수산가공식품류	19-1.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어육가공품
	19-2.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19-3.기타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건포류
	19-4.조미김	조미김
	19-5.한천	한천
	19-6.기타수산물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20.동물성가공식품류	20-1.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가공식품
	20-2.곤충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20-3.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20-4.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21.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벌꿀류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21-2.로얄젤리류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21-3.화분가공식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22.즉석식품류	22-1.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22-2.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22-3.만두류	만두
만두피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23.기타식품류	23-1.효모식품	효모식품
	23-2.기타가공품	기타가공식품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재구성